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3999호
2024. 8. 12.(월)



목 차

◆ 공 고

제2024-2338호 서울특별시의회 제출안건 공고	2
-----------------------------------	---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338호

서울특별시의회 제출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55조(제출안건의 공고)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2일
서울특별시장

구분	연번	제출 안건명	소관 실·본부·국
조례안 (9건)	1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2	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어 투 표현 등의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3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국 (자치행정과)
	4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국 (재산관리과)
	5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생교육국 (교육지원정책과)
	6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건축과)
	7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실 (장애인복지과)

구분	연번	제출 안건명	소관 실·본부·국
	8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9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공간본부 (도시계획과)
동의안 (64건)	1	서울특별시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무국 (재산관리과)
	2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출연 동의안	기획조정실 (창의행정담당관)
	3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기획조정실 (창의행정담당관)
	4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5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
	6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출연 동의안	경제실 (경제정책과)
	7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경제실 (창업정책과)
	8	서울특별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경제실 (첨단산업과)
	9	서울특별시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민생노동국 (소상공인정책과)
	10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	행정국 (시민협력과)

구분	연번	제출 안건명	소관 실·본부·국
	11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재무국 (세제과)
	12	서울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평생교육국 (교육지원정책과)
	13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출연 동의안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14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15	서울시 기후테크 펀드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출자 동의안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16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출자 동의안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17	시청자미디어재단 서울센터 출연 동의안	홍보기획관 (홍보담당관)
	18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출연 동의안	홍보기획관 (민원담당관)
	19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20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 동의안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21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22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구분	연번	제출 안건명	소관 실·본부·국
	23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복지실 (복지정책과)
	24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여성가족실 (저출생담당관)
	25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	주택실 (주택정책과)
	26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동의안	디지털도시국 (디지털정책과)
	27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	디자인정책관 (디자인정책담당관)
	28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출자 동의안	교통실 (도시철도과)
	29	서울특별시 제2서울핀테크랩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경제실 (금융투자과)
	30	서울특별시 전자상거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민생노동국 (공정경제과)
	31	서울특별시 서울글로벌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글로벌도시정책관 (외국인이민담당관)
	32	서울특별시 성북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글로벌도시정책관 (다문화담당관)
	33	서울시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글로벌도시정책관 (다문화담당관)
	34	서울특별시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글로벌도시정책관 (다문화담당관)

구분	연번	제출 안건명	소관 실·본부·국
	35	시립노원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36	시립수서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37	시립은평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38	시립서울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39	시립청소년이동쉼터(서북) 민간위탁 동의안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40	시립청소년이동쉼터(서남) 민간위탁 동의안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41	시립청소년이동쉼터(동북) 민간위탁 동의안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42	시립청소년이동쉼터(동남) 민간위탁 동의안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43	시립용산청소년일시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44	시립신림청소년단기쉼터(남) 민간위탁 동의안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45	시립금천청소년단기쉼터(여) 민간위탁 동의안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46	시립신림청소년중장기쉼터(남) 민간위탁 동의안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구분	연번	제출 안건명	소관 실 · 본부 · 국
	47	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 민간위탁 동의안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48	한강생태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미래한강본부 (공원여과과)
	49	서울예술영재 음악교육(서부권)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50	장애청소년 미술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51	서울 남산국악당 및 돈화문국악당 관리 ·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52	운현궁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문화본부 (문화유산활용과)
	53	서울특별시 남산골한옥마을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문화본부 (문화유산활용과)
	54	서울특별시 서울책보고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문화본부 (서울도서관)
	55	서울특별시 서울아트책보고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문화본부 (서울도서관)
	56	서울수어전문교육원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복지실 (장애인자립지원과)
	57	서울특별시 대사증후군관리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58	서울특별시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구분	연번	제출 안건명	소관 실·본부·국
	59	서울특별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60	시립 강북늘푸른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여성가족실 (양성평등담당관)
	61	시립 관악늘푸른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여성가족실 (양성평등담당관)
	62	시립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여성가족실 (양성평등담당관)
	63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보라매점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여성가족실 (아이돌봄담당관)
	64	서울특별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	글로벌도시정책관 (도시외교담당관)
의견 청취안 (1건)	1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 세 종대학교 -	도시공간본부 (시설계획과)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24년 8월 12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의 개정 및 부서 간 업무이관 등을 사무위임 조례에 반영하여 위임 대상사무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야생동물 전시 신고시설 관리·감독 사무(변경신고 수리, 과태료 부과·징수) 자치구 위임
- 나. 종합병원 개설 허가 사무 환수
- 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자치구 위임 종료 사무 정비
 - 잡지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무, 대중골프장 병설에 대한 사무 삭제
- 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의 근거법령 및 사무명 변경
- 마. 조직개편에 따른 위임사무의 주관부서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평가제외
-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협의완료

라. 기타

- (1) 입법예고 (2024. 6. 7. ~ 6. 27.) 결과: 의견없음
-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길상은 (☎ 2133-6744)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여성가족정책실”을 “여성가족실”로 한다.

별표의 민생노동국 표 주관부서란 중 “공정경제담당관”을 “공정경제과”로 하고, “농수산유통담당관”을 “농수산유통과”로 하며, 민생노동국 표를 시민건강국 표 다음으로 이동한다.

별표의 기획조정실 표 주관부서란 중 “창의행정담당관”을 “조직담당관”으로 한다.

별표의 경제실 표 주관부서란 중 “전략산업기반과”를 “산업입지과”로 한다.

별표의 교통실 표 중 주차계획과란에 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자치구 관할구역 내 버스전용차로 구간 통행 위반차에 대한 인력에 의한 도보단속 및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 「도로교통법」 제143조, 제161조	구청장
	3. 주차 및 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의 임명	○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제2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별표의 교통실 표 중 교통지도과란을 삭제한다.

별표의 기후환경본부 표 중 기후환경정책과대기정책과자원순환과물순환안전국(물재생계획과)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녹색에너지과란 다음으로 이동한다.

대기정책과 자원순환과 자원회수시설과 물재생계획과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물순환안전국)	1. 환경기술인 교육대상자 선발과 등록에 관한 사무	○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7조, 「물환경보전법」 제67조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6조, 「하수도법」 제67조 및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 제39조, 「폐기물관리법」 제35조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 제53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구청장
---	------------------------------	--	-----

별표의 기후환경본부 표 중 대기정책과란의 제5호를 삭제한다.

별표의 기후환경본부 표 대기정책과란 다음에 자원순환과자원회수시설과란 및 자원순환과생활환경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의 기후환경본부 표 자원순환과 제1호가목의 사무명란 중 “변경신고”를 “변경신고”로 한다.

자원순환과 자원회수시설과	1.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대상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시 입지선정에 관한 다음의 사무(다만, 서울특별시 전역을 처리권역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는 제외) 가.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입지 선정 나. 폐기물처리시설 입지후보에 대한 타당성 조사의 전문연구기관의 의뢰 다. 입지타당성조사과정 및 결과에 대한 해당지역 주민에의 공개 및 공개에 필요한 지원 라. 입지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조사결과와 입지 선정 사유에 대한 인접하는 당해 지방자치 단체장과의 협의 및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 「폐기물관리법」 제5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구청장
자원순환과 생활환경과	1. 폐기물처리업 및 폐기물처리업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수집·운반업, 재활용업에 한함) 가. 허가 및 변경허가 나. 허가취소·영업정지·시정지시 및 경고 등 행정처분과 과징금 처분 및 이에 따르는 청문 다. 휴업·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수리 라. 보고·검사 등 마.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수리 바. 과태료 부과·징수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8조, 제60조, 제61조 ○ 「폐기물관리법」 제37조 ○ 「폐기물관리법」 제39조 ○ 「폐기물관리법」 제33조 ○ 「폐기물관리법」 제68조	구청장

별표의 기후환경본부 표 중 자원순환과란의 제4호를 삭제한다.

별표의 기후환경본부 표 중 생활환경과란의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교통소음·진동의 규제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운행차의 수시점검(시장은 광역적인 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검할 수 있다) 나. 운행차의 개선명령·사용정지명령 및 개선 결과의 보고 수리	○ 「소음·진동관리법」 제36조 ○ 「소음·진동관리법」 제38조	구청장
--	--	---	-----

별표의 문화본부 표 중 문화예술과관을 삭제한다.

별표의 관광체육국 표 중 체육정책과란의 제1호나목을 삭제하고 다목부터 자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아목까지로 한다.

별표의 시민건강국 표 보건의료정책과 제1호가목의 사무명란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을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의 사무명란 중 “병원”을 “종합병원·병원”으로 한다.

별표의 시민건강국 표 보건의료정책과 제6호다목의 근거법령란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제4항”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제6항”으로 한다.

별표의 시민건강국 표 주관부서란 중 “스마트건강과”를 “건강관리과”로 한다.

별표의 행정국 표 다음에 건설기술정책관 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건설기술정책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건설혁신담당관	1. 건설기계의 등록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신규등록 등 나.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 수리 다. 등록의 경정 라. 등록의 말소 등 마.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보관 등 바. 건설기계 저장단 설정등록 및 변경·이전·말소등록 등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8조 ○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 「건설기계관리법」 제7조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장법」 제5조,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장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3항, 제4조부터 제6조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사. 등록증의 재교부 2. 건설기계등록번호표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등록번호표제작등의 통지 나. 등록번호표의 재부착 등 다. 등록번호표의 반납 수리 라. 건설기계등록번호의 새김명령 3.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등록번호표 제작자의 지정 나. 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사항의 변경신고 수리 4. 건설기계조종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기관의 지정 5. 건설기계검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건설기계 수시검사 명령과 건설기계검사증의 발급 나. 검사의 명령 다. 검사에 불합격된 건설기계에 대한 정비명령 라. 기간연장 6. 보칙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건설기계 강제처리 등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 「건설기계관리법」 제9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 「건설기계관리법」 제11조 ○ 「건설기계관리법」 제8조의2제1항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 「건설기계관리법」 제8조의2제3항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4항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4항 및 제6항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5항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7항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8항 ○ 「건설기계관리법」 제34조의2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

별표의 재난안전실 표 중 건설혁신과란을 삭제한다.

별표의 재난안전실 표 주관부서란 중 “도로관리과”를 “보행환경개선과”로 한다.

별표의 주택실 표 중 주택정책과란의 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별표의 주택실 표 주택정책과란 다음에 임대주택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임대주택과	1.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공익사업자 지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구청장
-------	-------------------------	---	-----

별표의 주택실 표 주관부서란 중 “공동주택지원과”를 “공동주택과”로 하고, 공동주택과란(중전의 공동주택지원과란)을 건축기획과란 다음으로 이동한다.

별표의 주택실 표 중 건축기획과란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건축사무소에 관한 다음의 각 목의 사무 가. 건축사무소개설신고 수리·신고사항의 변경 신고 또는 휴업·폐업의 신고수리 나. 건축사무소개설신고 등의 효력상실처분·업무 정지명령 및 시정명령, 효력상실처분에 따른 청문 다. 건축사무소개설신고부의 정리 라. 보고 및 검사 마. 과태료 부과·징수(「건축사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외) 바. 처분내용의 통지	○ 「건축사법」 제23조 및 제27조 ○ 「건축사법」 제28조 및 제28조의2, 「건축사법 시행령」 제29조의2 ○ 「건축사법」 제29조 ○ 「건축사법」 제30조 ○ 「건축사법」 제41조 ○ 「건축사법」 제22조의2제1항	구청장
--	--	--	-----

별표의 정원도시국 표 중 자연생태과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야생동물 전시 신고 시설의 관리·감독 사무 가. 변경신고 수리 나. 과태료 부과·징수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9088호) 부칙 제3조제1항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9088호) 부칙 제3조제2항	구청장
--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그 처리절차가 진행 중인 위임사무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	---	---	---

☐ 여성가족정책실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생략)	1. (생략)	○ (생략)	(생략)

☐ 여성가족실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민생노동국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공정 경제 담당관	1. (생략)		구청장
농수산 유통 담당관	1. (생략)	○ (생략)	구청장

☐ 민생노동국(→시민건강국 다음으로 이동)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공정 경제과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농수산 유통과	1.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기획조정실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창의 행정 담당관	1. 서울시립대학교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의 임용 (다만, 정직, 해임, 파면은 제외)	○ (생략)	(생략)

☐ 기획조정실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조직 담당관	1.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경제실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전략 산업 기반과	1. (생략)		(생략)

☐ 경제실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산업 입지과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교통실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주차 계획과	(신설)	(신설)	(신설)

☐ 교통실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주차 계획과	2. 자치구 관할구역 내 버스전용차로 구간 통행 위반차에 대한 인력에 의한 도보단속 및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 「도로교통법」 제143조, 제161조	구청장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신설)	(신설)	(신설)		3. 주차 및 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의 임명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제2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직속기관 관의장 사업소 장
교통 지도과	1. 자치구 관할구역내 버스전용차로 구간 통행 위반차에 대한 인력에 의한 도보단속 및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징수에 관한 사무	○「도로교통법」 제143조, 제161조	구청장	(삭제)	(삭제)	(삭제)	(삭제)
	2. 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의 임명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제2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직속기관 관의장 사업소 장	(삭제)	(삭제)	(삭제)	(삭제)

□ 기후환경본부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기후 환경 정책과 대기 정책과 자원 순환과 물순환 안전국 (물재생 계획과)	1. 환경기술인 교육대상자 선발과 등록에 관한 사무	○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7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6조, 「하수도법」 제67조 및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 제39조, 「폐기물관리법」 제35조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및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7조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48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구청장
대기 정책과	5. 교통소음·진동의 규제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운행차의 수시점검(시장은 광역적인 자동차 소음 관리	○ 「소음·진동관리법」 제36조	구청장

□ 기후환경본부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대기 정책과 자원 순환과 자원 회수 시설과 물재생 계획과 (물순환 안전국) 물재생 시설과 (물순환 안전국) (→녹색 에너지과 이동)	1. (현행과 같음)	○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7조, 「물환경보전법」 제67조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6조, 「하수도법」 제67조 및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 제39조, 「폐기물관리법」 제35조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 제53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를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경우에 는 점검할 수 있다) 나. 운행차의 개선명령 · 사용 정지명령 및 개선 결과의 보 고 수리	○「소음·진동관리법」 제 38조			(삭제)	(삭제)	(삭제)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자원 순환과 자원 회수 시설과	1. 입지선정계획 결정· 공고대상 폐기물 처 리시설 설치 시 입지 선정에 관한 다음의 사무(다만, 서울특별시 전역을 처리권역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의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는 제외) 가. 주민대표가 참여하 는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입지선정 나. 폐기물처리시설 입 지후보에 대한 타 당성 조사의 전문 연구기관에의 의뢰 다. 입지타당성조사과정 및 결과에 대한 해 당지역 주민에의 공 개 및 공개에 필요 한 지원 라. 입지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조사결과와 입지 선정 사유에 대한 인접하는 당 해 지방자치 단체 장과의 협의 및 중 양환경분쟁조정위원 회에 조정 신청	○「폐기물관리법」 제5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구청장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자원 순환과 생활 환경과	1. 폐기물처리업 및 폐기물 처리업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수집·운반업, 재활 용업에 한함) 가. 허가 및 변경허가 나. 허가취소·영업정지 ·시정지시 및 경고 등 행정처분과 과징 금 처분 및 이에 따 르는 청문 다. 휴업·폐업 및 재개 업의 신고수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8조, 제60조, 제61조 ○「폐기물관리법」 제37조	구청장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신설)	(신설)			라. 보고·검사 등	○ 「폐기물관리법」 제39조	
	(신설)	(신설)			마. 권리의무의 승계 고 수리	○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신설)	(신설)			바. 과태료 부과·징수	○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자원 순환과	1. 폐기물처리 신고와 관 련한 다음의 사무 가. 폐기물처리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 시 설폐쇄 또는 폐기물 처리 금지 명령 4. 입지선정계획 결정· 공고대상 폐기물 처 리시설 설치시 입지선 정에 관한 다음의 사 무(다만, 서울특별시 전역을 처리권역으로 하는 폐기물 처리시설 의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는 제외) 가. 주민대표가 참여하 는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입지선정 나. 폐기물처리시설 입 지후보에 대한 타 당성 조사의 전문 연구관예의 의뢰 다. 입지타당성조사과정 및 결과에 대한 해 당지역 주민예의 공 개 및 공개에 필요 한 지원 라. 입지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조사결과와 입지 선정 사유예 대한 인접하는 당 해 지방자치 단체 장과의 협의 및 중 앙환경분쟁조정위원 회에 조정 신청	○ (생략) ○ 「폐기물관리법」 제5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생략) 구청장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 폐기물처리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 시 설폐쇄 또는 폐기물 처리 금지 명령 (삭제) (삭제) (삭제) (삭제)	○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생활 환경과	2. 폐기물 처리업 및 폐기 물 처리업자에 관한 다 음의 사무(수집·운반 법, 재활용업에 한함) 가. 허가 및 변경허가 나. 허가취소·영업정지 ·시정지시 및 경고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 「폐기물관리법」 제27 조, 제28조, 제60조	구청장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등 행정처분과 과징금처분 및 이에 따르는 청문	제61조					
	다. 휴업·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수리	○ 「폐기물관리법」 제37조			(삭제)	(삭제)	
	라. 보고·검사 등	○ 「폐기물관리법」 제39조			(삭제)	(삭제)	
	마.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수리	○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삭제)	(삭제)	
	바. 과태료 부과·징수	○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삭제)	(삭제)	
3. (생략)		○ (생략)	(생략)	2. (현행 제3호와 같음)		○ (현행 제3호와 같음)	(현행 제3호와 같음)
4. (생략)				3. (현행 제4호와 같음)			(현행 제4호와 같음)
가. (생략)		○ (생략)		가.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나. (생략)		○ (생략)		나.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신설)			(신설)	4. 교통소음·진동의 규제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신설)		(신설)		가. 운행차의 수시점검(시장은 광역적인 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검할 수 있다)		○ 「소음·진동관리법」 제36조	
(신설)		(신설)		나. 운행차의 개선명령·사용정지명령 및 개선 결과의 보고수리		○ 「소음·진동관리법」 제38조	

□ 문화본부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문화 예술과	1. 정기간행물 중 잡지 등록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잡지의 등록 및 변경 등록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카목까지 ‘정기간행물법’이라 한다) 제15조	
	나. 폐업 및 직권 말소	○ 정기간행물법 제17조	
	다. 등록 및 폐업신고	○ 정기간행물법 제18조	

□ 문화본부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u>내용의 보고</u>		
	라. 외국자금의 출자 서류제출	○ 정기간행물법 제21조	
	마. 영입의 승계신고	○ 정기간행물법 제22조	
	바. 최초 간행물의 제출	○ 정기간행물법 제23조	
	사. 정기간행물의 발행 정지 명령 등	○ 정기간행물법 제24조	
	아. 직권취소	○ 정기간행물법 제25조	
	자.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정기간행물법 제26조	
	차. 청문의 실시	○ 정기간행물법 제27조	
	카.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정기간행물법 제33조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 관광체육국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체육 정책과	1. 체육시설업에 관한 다 음의 사무		(생략)
	나. 대중골프장의 병설	○ (생략)	
	다. (생략)	○ (생략)	
	라. (생략)	○ (생략)	
	마. (생략)	○ (생략)	
	바. (생략)	○ (생략)	
	사. (생략)	○ (생략)	
	아. (생략)	○ (생략)	
	자. (생략)	○ (생략)	

☐ 관광체육국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나. (현행 다목과 같음)	○ (현행 다목과 같음)	
	다. (현행 라목과 같음)	○ (현행 라목과 같음)	
	라. (현행 마목과 같음)	○ (현행 마목과 같음)	
	마. (현행 바목과 같음)	○ (현행 바목과 같음)	
	바. (현행 사목과 같음)	○ (현행 사목과 같음)	
	사. (현행 아목과 같음)	○ (현행 아목과 같음)	
	아. (현행 자목과 같음)	○ (현행 자목과 같음)	

☐ 시민건강국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보건의료 정책과	1. 의료기관에 관한 다 음의 사무		(생략)
	가. 종합병원·병원·치 과병원·한방병원· 요양병원 또는 정신 병원(이하 "병원 등	○ (생략)	

☐ 시민건강국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가. 병원·치과병원·한 방병원·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이하 "병원 등"이라 함)	○ (현행과 같음)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이라 함)의 개설 허가 나. 병원 등의 변경 허 가 6. (생략) 다. 응급환자 이송업 변경 신고	○ (생략)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제4항	(생략)		의 개설 허가 나. 종합병원·병원 등 의 변경 허가 6.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제6항	(현행과 같음)
스마트 건강과	1. 서울시 지정 금연구역의 과태료 부과·징수(「서울 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보조기관 및 사업소장에게 관리가 위임된 도시공원은 제외함)	○ (생략)	(생략)	건강 관리과	1.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신설)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 건설기술정책관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건설 혁신 담당관	1. 건설기계의 등록에 관 한 다음의 사무 가. 신규등록 등 나.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 수리 다. 등록의 경정 라. 등록의 말소 등 마.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보관 등 바. 건설기계 저장권 설 정등록 및 변경·이 전·말소등록 등 사. 등록증의 재교부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 령, 제8조 ○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 「건설기계관리법」 제7조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 당법」 제5조,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장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3항, 제4조부터 제6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 칙 제5조	구청장
	2. 건설기계등록번호표 관 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등록번호표제작등의 통지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 칙 제17조	구청장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신설)	(신설)	(신설)		나. 등록번호표의 재부 착 등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 칙, 제18조	구청장
	(신설)	(신설)			다. 등록번호표의 반납 수리	○ 「건설기계관리법」 제9 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신설)	(신설)			라. 건설기계등록번호의 새김명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 11조	
	(신설)	(신설)			3.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 작자에 관한 다음의 사 무		
	(신설)	(신설)			가. 등록번호표 제작자 의 지정	○ 「건설기계관리법」 제8 조의2제1항 및 「건설 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신설)	(신설)	(신설)		나. 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사항의 변경신 고 수리	○ 「건설기계관리법」 제8 조의2제3항 및 「건설 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구청장
	(신설)	(신설)			4. 건설기계조종사에 관한 다음의 사무		
	(신설)	(신설)			가. 소형건설기계 조종 교육기관의 지정	○ 「건설기계관리법」 제 26조제4항 및 「건설기 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신설)	(신설)			5. 건설기계검사에 관한 다음의 사무		
	(신설)	(신설)			가. 건설기계 수시검사 명령과 건설기계검 사증의 발급	○ 「건설기계관리법」 제 13조제4항 및 제6항	
	(신설)	(신설)	(신설)		나. 검사의 명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 13조제5항	구청장
	(신설)	(신설)			다. 검사에 불합격된 건 설기계에 대한 정비 명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 13조제7항	
	(신설)	(신설)			라. 기간연장	○ 「건설기계관리법」 제 13조제8항	
	(신설)	(신설)			6. 보칙에 관한 다음의 사무		
	(신설)	(신설)			가. 건설기계 강제처리 등	○ 「건설기계관리법」 제 34조의2	

☐ 제 난안전실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건설	1. 건설기계의 등록에 관		구청장

☐ 제 난안전실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삭제)	(삭제)		(삭제)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혁신과	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신규등록 등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삭제)	(삭제)	
	나. 등록사항 변경 신고 등 수리	○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삭제)	(삭제)	
	다. 등록의 갱정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8조			(삭제)	(삭제)	
	라. 등록의 말소 등	○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삭제)	(삭제)	
	마. 건설기계등록 원부의 보관 등	○ 「건설기계관리법」 제7조			(삭제)	(삭제)	
	바.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등록 및 변경·이전·말소등록 등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6조제1호,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3항			(삭제)	(삭제)	
	사. 등록증의 재교부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삭제)	(삭제)	
	2. 건설기계등록번호표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삭제)		
	가. 등록번호표 제작 등의 통지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삭제)	(삭제)	
	나. 등록번호표의 재부착 등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삭제)	(삭제)	
	다. 등록번호표의 반납 수리	○ 「건설기계관리법」 제9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삭제)	(삭제)	
	라. 건설기계등록번호의 새김명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11조			(삭제)	(삭제)	
	3.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삭제)		
	가. 등록번호표 제작자의 지정	○ 「건설기계관리법」 제8조의2제1항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삭제)	(삭제)	
	나. 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사항의 변경신고 수리	○ 「건설기계관리법」 제8조의2제3항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삭제)	(삭제)	
	4. 건설기계조종사에 관한 다음의 사무				(삭제)		
	가.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기관의 지정	○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4항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삭제)	(삭제)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5. <u>건설기계검사에 관한 다음의 사무</u> 가. <u>건설기계 수시 검사 명령과 건설기계검사증의 교부</u> 나. <u>검사의 최고</u> 다. <u>검사에 불합격된 건설기계에 대한 정비명령</u> 라. <u>기간연장</u> 6. <u>보칙에 관한 다음의 사무</u> 가. <u>건설기계 강제처리 등</u>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4항 및 제6항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5항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7항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8항 ○ 「건설기계관리법」 제34조의2	구청장 구청장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u>도로관리과</u>	1. <u>도로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고속국도 및 시정 앞 광장 제외)</u> 가. <u>도로의 점용허가</u> 나. <u>점용료의 부과·징수</u> 다. <u>변상금의 부과·징수</u> 라. <u>과태료의 부과·징수</u>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u>보행환경개선과</u>	1.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주택실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주택 정책과	1.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공익사업자 지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민 간임대주택에 관한 특 별법 시행령」 제16조	구청장
	2. (생략)	○ (생략)	(생략)
	3. (생략)	○ (생략)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주택실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1. (현행 제2호와 같음)	○ (현행 제2호와 같음)	(현행과 같음)
	2. (현행 제3호와 같음)	○ (현행 제3호와 같음)	(현행과 같음)
임대 주택과	1.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공익사업자 지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구청장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공동 주택 지원과	1. (생략)		(생략)	공동 주택과 (→건설 혁신과 다음으로 이동)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건축 기획과	2. 건축사사무소에 관한 다음의 각 목의 사무 가. 건축사업 신고수리 · 신고사항의 변경 신고 또는 휴업· 폐업의 신고 수리 나. 건축사업무신고 등 의 효력상실 처분 · 업무 정지명령 및 시정명령, 효력 상실 처분에 따른 청문 다. 건축사업무신고부의 정리 라. 보고 및 검사 마. 과태료 부과·징수 (「건축사법」 제11조제3 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외) 바. 처분내용의 통지	○ 「건축사법」 제23조, 제 27조(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 「건축사법」 제28조 및 제28조의2(같은 법 시 행령 제35조제1항제5 호 및 제6호) ○ 「건축사법」 제29조(같 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제7호) ○ 「건축사법」 제30조(같 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제8호) ○ 「건축사법」 제41조(같 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제10호) ○ 「건축사법」 제22조의2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2호)	(생략)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건축사사무소개설신 고 수리·신고사항 의 변경 신고 또는 휴업·폐업의 신고 수리 나. 건축사사무소개설신 고 등의 효력상실처 분·업무 정지명령 및 시정명령, 효력 상실처분에 따른 청 문 다. 건축사사무소개설신 고부의 정리 라. (현행과 같음) 마. (현행과 같음) 바. (현행과 같음)	○ 「건축사법」 제23조 및 제27조 ○ 「건축사법」 제28조 및 제28조의2, 「건축사법 시행령」 제29조의2 ○ 「건축사법」 제29조 ○ 「건축사법」 제30조 ○ 「건축사법」 제41조 ○ 「건축사법」 제22조의2 제1항	(현행과 같음)

□ 경원도시국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자연 생태과	(신설)	(신설)	(신설)

□ 경원도시국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현행과 같음)	4.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야생동물 전시 신고 시설의 관리·감독 사무 가. 변경신고 수리 나. 과태료 부과·징수	○ 「야생생물 보호 및 관 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9088호) 부칙 제3 조제1항 ○ 「야생생물 보호 및 관 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9088호) 부칙 제3 조제2항	구청장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의 개정 내용은 상위법령 개정 및 조직개편을 반영하여 위임 사무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별도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

4. 작성자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김상은 (☎ 2133-6744)

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어 투 표현 등의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4년 8월 12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우리시 조례 내 일본어 투 표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사항을 일괄로 정비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법령 및 조례 개정에 따른 제명, 인용조문 현행화
- 나. 조직개편(조직명 및 사무기관)에 따른 부서명 정비
- 다. 그외 경미한 오기 정정
- 라. 일본어 투 표현 “요하는” 등 정비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평가제외
 -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관련 규정): 해당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사항: 협의완료
- 라. 기타
 - (1) 입법예고 생략
 - (2) 신·구조문 대비표: 불임

※ 작성자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박준하 (☎2133-6691)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어 투 표현 등의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조례의 일본어 투 표현을 올바른 우리말로 순화하고, 법령 및 다른 조례의 제명이나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사용 공공사용”을 “공공사용”으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공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3조 중 “정보공개담당관”을 “정보시스템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정보공개담당관”을 “정보시스템과장”으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의 제목 “설치 및 관리·운영의 위탁”을 “설치 및 관리·운영의 대행”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관리·운영의 관리대행)”을 “(관리·운영의 대행)”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수탁기관을”을 “관리대행업자를”로 한다.

제6조(「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소방특별조사”를 “화재안전조사”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0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조”로 하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7조(「서울특별시 안전감사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안전감사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8조(「서울특별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를 “제3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3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재정 투·융자 심사”란 시에서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을 ““투자심사”란 시에서 「서울특별시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재정 투·융자 심사”를 “투자심사”로 한다.

제9조(「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37조의2”를 “「지방재정법」 제37조의3”으로 한다.

제10조(「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시민협력과장”을 “평가담당관”으로 한다.

제11조(「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남북협력과장”을 “평화기반조성과장”으로 한다.

제12조(「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사업시행 및 유지관리부서란 중 “교통정보과”를 모두 “미래첨단교통과”로 한다.

제13조(「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을 요하는”을 “이 필요한”으로 한다.

제14조(「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제2호 중 “치료를 요하는”을 “치료가 필요한”으로 한다.

제15조(「서울특별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단서 중 “긴급을 요하는” 을 “긴급한” 으로 한다.

제16조(「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치료를 요하는” 을 “치료가 필요한” 으로 한다.

제17조(「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요양을 요하는” 을 “요양이 필요한” 으로 한다.

제18조(「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상시출장을 요하는” 을 “상시출장이 필요한” 으로 한다.

제19조(「서울특별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을 요하는” 을 “이 필요한” 으로 한다.

제20조(「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익 사업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는” 을 “긴급한 경우” 로 한다.

제21조(「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 중 “치료를 요하는” 을 “치료가 필요한” 으로 한다.

제22조(「서울특별시 교육·복지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교육·복지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장기치료를 요하는” 을 “장기 치료가 필요한” 으로 한다.

제23조(「서울특별시 국제 정책고문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국제 정책고문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2호 중 “장기치료를 요하는” 을 “장기 치료가 필요한” 으로 한다.

제24조(「서울특별시 도로보수 건설기계 운영·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로보수 건설기계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중 “분해를 요하는” 을 “분해가 필요한” 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도로교통사업소장” 을 “도로사업소장” 으로 한다.

제25조(「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4호 중 “치료를 요하는”을 “치료가 필요한”으로 한다.

제26조(「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호 중 “정리를 요하는”을 “정리가 필요한”으로 한다.

제86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공급기획관”을 “건축기획관”으로 한다.

제27조(「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제1호 중 “장기치료를 요하는”을 “장기 치료가 필요한”으로 한다.

제28조(「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거나”를 “긴급한 경우이거나”로 한다.

제29조(「서울특별시 민간보건의료기관 이용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민간보건의료기관 이용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 중 “치료를 요하는”을 “치료가 필요한”으로 한다.

제30조(「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단서 중 “긴급을 요하는”을 “긴급한”으로 한다.

제31조(「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 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전단 중 “안전총괄관”을 “도로기획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5호다목 단서 중 “보온을 요하는”을 “보온이 필요한”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 중 “보온을 요하는”을 각각 “보온이 필요한”으로 한다.

제32조(「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 중 “정리를 요하는”을 “정리가 필요한”으로 한다.

제27조제1호 중 “정리를 요하는”을 “정리가 필요한”으로 한다.

제33조(「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4제2호 중 “치료를 요하는”을 “치료가 필요한”으로 한다.

제34조(「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치료를 요하는”을 “치료가 필요한”으로 한다.

제35조(「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단서 중 “전문성을 요하는”을 “전문성이 필요한”으로 한다.

제36조(「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전문성을 요하는”을 “전문성이 필요한”으로 한다.

제37조(「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는”을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으로 한다.

제8조의3제2호 중 “치료를 요하는”을 “치료가 필요한”으로 한다.

제38조(「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요양을 요하는”을 “요양이 필요한”으로 한다.

제39조(「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 중 “전문지식을 요하는”을 “전문지식이 필요한”으로 한다.

제40조(「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는”을 “긴급한”으로 한다.

제41조(「서울특별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치료를 요하는”을 “치료가 필요한”으로 한다.

제42조(「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라목 중 “긴급을 요하는”을 “긴급한”으로 한다.

제43조(「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호 중 “장기치료를 요하는” 을 “장기 치료가 필요한” 으로 한다.

제44조(「서울특별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치료를 요하는” 을 “치료가 필요한” 으로 한다.

제45조(「서울특별시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난 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는” 을 “긴급한” 으로 한다.

제46조(「서울특별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는” 을 “긴급한” 으로 한다.

제47조(「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치료를 요하는” 을 “치료가 필요한” 으로 한다.

제48조(「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 중 “치료를 요하는” 을 “치료가 필요한” 으로 한다.

제49조(「서울특별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회복을 요하는” 을 “회복이 필요한” 으로 한다.

제50조(「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 중 “치료를 요하는” 을 “치료가 필요한” 으로 한다.

제51조(「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기술을 요하는” 을 “기술이 필요한” 으로 한다.

제52조(「서울특별시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 중 “치료를 요하는” 을 “치료가 필요한” 으로 한다.

제53조(「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4호 중 “설치를 요하지”를 “설치가 필요하지”로 한다.

제54조(「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허가를 요하지”를 “허가가 필요하지”로,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을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55조(「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 전단 중 “긴급을 요하거나”를 “긴급한 경우이거나”로 한다.
제12조의1제2항제2호 중 “긴급을 요하거나”를 “긴급한 경우이거나”로 한다.

제56조(「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건강진단을 요하거나”를 “건강진단이 필요하거나”로 한다.

제57조(「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거나”를 “긴급하거나”로 한다.

제58조(「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거나”를 “긴급하거나”로 한다.
제4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정책실장”을 “여성가족실장”으로 한다.

제59조(「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거나”를 “긴급하거나”로 한다.

제60조(「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8제4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거나”를 “긴급한 경우이거나”로 한다.

제61조(「서울특별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감사담당관”을 “청렴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거나”를 “긴급하거나”로 한다.

제62조(「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거나”를 “긴급하거나”로 한다.

제63조(「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긴급을 요하거나”를 “긴급하거나”로 한다.

제64조(「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자원순환과”를 “자원회수시설과”로 한다.

제65조(「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주관국(과)란 중 “여성가족정책실(권익보호담당관)”을 “여성가족실(양성평등담당관)”로 한다.

제66조(「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과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과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여성가족정책실장”을 “여성가족실장”으로 한다.

제67조(「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여성가족정책실장”을 “여성가족실장”으로 한다.

제68조(「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 중 “여성가족정책실장”을 “여성가족실장”으로 한다.

제69조(「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여성가족정책실장과 출산육아담당관”을 “여성가족실장과 아이돌봄담당관”으로 한다.

제70조(「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여성가족정책실장”을 “여성가족실장”으로 한다.

제71조(「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아동

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여성가족정책실장” 을 “여성가족실장” 으로 한다.

제72조(「서울특별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중 “노동정책담당관” 을 “노동정책과장” 으로 한다.

제73조(「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3항 중 “소상공인담당관” 을 “소상공인정책과장” 으로 한다.

제74조(「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가목 중 “소상공인담당관” 을 “소상공인정책과장” 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공정경제담당관” 을 “공정경제과장” 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소상공인담당관” 을 “소상공인정책과장” 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공정경제담당관” 을 “공정경제과장” 으로 한다.

제75조(「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 중 “공정경제담당관” 을 “공정경제과장” 으로 한다.

제76조(「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다목 중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을 “장애인복지과장” 으로 한다.

제77조(「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 중 “빅데이터담당관” 을 “데이터전략과장” 으로 한다.

제78조(「서울특별시 물류정책위원회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주택공급기획관, 교통기획관” 을 “건축기획관, 교통운영관” 으로 한다.

제79조(「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6조” 를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7조” 로, “성평등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를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로 한다.

제80조(「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14조”를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2조”로 한다.

제81조(「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 중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17조”를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5조”로 한다.

제82조(「서울특별시 산업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산업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를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한다.

제83조(「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를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성평등위원회(이하 “성평등위원회”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양성평등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8조 중 “성평등위원회”를 “양성평등위원회”로 한다.

제84조(「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29조”를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43조”로 한다.

제85조(「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14조”를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2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제2조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 -----.
1. "학생"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1. ----- ----- -----.
가. ~ 다. (생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 <u>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u> 」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로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평가 인정한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직업전문학교	라. 「 <u>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u> 」----- ----- ----- -----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제3조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u>사용</u> <u>공공사용</u> 제한에 관한 시책 등 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 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생략)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 ----- <u>공공</u> <u>사용</u> ----- ----- -----. ②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제4조 서울특별시 공인 조례)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u>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u> 」 제4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및 그 소속행정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비치 및 보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u> 」 ----- ----- ----- ----- -----.
제3조(공인의 비치 및 보관자) 서울특별시시장의 공인은 <u>정보공개담당관</u> 에,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의 공인은 문서취급부서에 각각 비치하고 해당 비치부서의 장이 이를 보관한다.	제3조(공인의 비치 및 보관자) ----- <u>정보시스템과장</u> ----- ----- ----- -----.
제10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이미지공인을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서울특별시시장에게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하고, 특별한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은 <u>정보공개담당관</u> 이 관리하고, 전자이미지공인은 컴퓨터 파일로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이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 ----- ----- ----- ----- <u>정보시스템과장</u> ----- ----- -----.

신 · 구조문대비표

(제5조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2장 <u>설치 및 관리·운영의 위탁</u> 제7조(관리·운영의 관리대행) ① ~ ③ (생략) 제10조(관리대행업자 선정) ① (생략)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u>수탁기관</u> 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의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생략)	제2장 <u>설치 및 관리·운영의 대행</u> 제7조(관리·운영의 대행)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관리대행업자 선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u>관리대행업자</u> 를 ----- ----- -----. ③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제6조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신고포상금 등 지급 심사위원회) ①·② (생략)	제10조(신고포상금 등 지급 심사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u>소방 특별조사</u>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 되고, 간사는 같은 부서의 팀장이 된다.	③ ----- <u>화재 안전조사</u> -----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주 소		연락처	
	거래은행	계좌번호		
	적발일시			
신 고 사	대상건물	건물명(상호명)		
		주소 또는 위치		
항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0조 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 사실을 기술			
	위와 같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을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 등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소방서장 귀하			
※ 불임자료		※ 불임자료		
○ 사진, 영상 자료, 그 밖에 증빙자료 등		○ 사진, 영상 자료, 그 밖에 증빙자료 등		

신 · 구조문대비표

(제7조 서울특별시 안전감사 읍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4조(위촉) 안전감사 읍부즈만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4조(위촉) ----- ----- ----- ---
1.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u>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u> 의 위원	1. ----- ----- <u>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u> ----- -----
2. <u>한국시설안전공단</u>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관련 전문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자	2. <u>국토안전관리원</u> ----- ----- -----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제8조 서울특별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타당성조사"란 시가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건설기술진흥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시행하는 학술용역 및 기술용역 또는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3. "재정 투·융자 심사"란 시에서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심사를 말한다. 4. (생략)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 ----- 제3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3과 ----- ----- ----- -----. 3. "투자심사"란 시에서 「서울특별시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 4. (현행과 같음)
제4조(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전문적·객관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서울연구원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1. (생략) 2. 재정 투·융자 심사 대상사업의 사전 검토 3. ~ 5. (생략) ②·③ (생략)	제4조(업무) ① ----- ----- ----- ----- ----- -----. 1. (현행과 같음) 2. 투자심사 ----- ----- 3. ~ 5.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제9조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재정법」 제37조의3----- ----- ----- -----.

신 · 구조문대비표

(제10조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7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 ④ (생략)	제7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u>시민협력과</u> 장으로 한다.	⑤ ----- ----- <u>평</u> <u>가담당관</u> -----.
⑥ ~ ⑩ (생략)	⑥ ~ ⑩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제11조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6조(기금의 회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회계공무원) ----- ----- ----- ----. ----- ----- -----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분임기금운용관 : <u>남북협력과장</u>	2. ----- <u>평화기반조성과장</u>
3. (생략)	3.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제12조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별표 2]				[별표 2]			
사업시행 및 유지관리부서				사업시행 및 유지관리부서			
연 번	통합대상	주관 부서	사업시행 및 유지관리부서	연 번	통합대상	주관 부서	사업시행 및 유지관리부서
1	차량신호등 + 가로등	교통 운영과	도로사업소, 구청	1	차량신호등 + 가로등	교통 운영과	도로사업소, 구청
2	차량신호등 + 보행신 호등 + 가로등	교통 운영과	도로사업소, 구청	2	차량신호등 + 보행신 호등 + 가로등	교통 운영과	도로사업소, 구청
3	차량신호등 + CCTV	교통 운영과	도로사업소, 구청, <u>교통정보과</u>	3	차량신호등 + CCTV	교통 운영과	도로사업소, 구청, <u>미래첨단교통과</u>
4	차량신호등 + 보행신호 등 + 가로등 + CCTV	교통 운영과	도로사업소, 구청, <u>교통정보과</u>	4	차량신호등 + 보행신호 등 + 가로등 + CCTV	교통 운영과	도로사업소, 구청, <u>미래첨단교통과</u>
5	보행신호등 + 가로등	교통 운영과	도로사업소, 구청	5	보행신호등 + 가로등	교통 운영과	도로사업소, 구청
※ 상기의 통합대상별 통합지주의 최초설치는 도로사업소가 하되, 최초설치 후 기타 부가시설에 대해서는 교통운영과와 협의하여 해당 부가시설 관리자가 설치하고, 유지관리의 경우 신호등과 지주는 도로사업소가, 가로등은 구청이, CCTV는 미래첨단교통과가, 기타 부가시설은 해당 설치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상기의 통합대상별 통합지주의 최초설치는 도로사업소가 하되, 최초설치 후 기타 부가시설에 대해서는 교통운영과와 협의하여 해당 부가시설 관리자가 설치하고, 유지관리의 경우 신호등과 지주는 도로사업소가, 가로등은 구청이, CCTV는 미래첨단교통과가, 기타 부가시설은 해당 설치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제13조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현행	개정안
[별표 3] 원인자부담금(제20조제3항 관련)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 1. 별체, 수간절단 등으로 조정수 가치가 없는 경우 : 부담금 = 도급공사 설계비 2. 상당한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 및 강도의 가지치기의 경우 : 부담금 = 수목비의 20% + 보호시설 재료비 및 작업비 ※ 강도의 가지치기 : 수관의 1/3 이상 ※ 작업비 : 관리청 자체인력 활용시 세외수입 조치 3. 약도의 가지치기의 경우 : 부담금 = 수목비의 10% + 작업비 4. 이식을 원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이식하는 경우 : 부담금 = 도급공사 설계비 ※ 도급공사 설계비 : 세입세출의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 나. 관리청에서 이식하는 경우 : 부담금 = 도급공사 설계비 + 이식비 ※ 이식비 : 관리청 자체인력 활용시 세외수입 조치 5. 제거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제거하는 경우 : 부담금 = 도급공사 설계비 ※ 도급공사 설계비 : 세외수입 조치 나. 관리청에서 제거하는 경우 : 부담금 = 도급공사설계비 + 제거비 ※ 제거비 : 관리청 자체인력 활용시 세외수입 조치 도급공사설계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 적용(수목 등 재료비 포함)하여 산정 수 목 비 : 가격정보(조달청)지 가격작용,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시중 시가 적용 예치금납부방법 : 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 가능 예치금예치기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하자책임 담보기간 동안 예치 예치금 환불 등 : 예치기간 경과 후 이식목에 대한 조정수로서의 가치여부 를 판단하여 환불 또는 세외수입 조치	[별표 3] 원인자부담금(제20조제3항 관련)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 1. 별체, 수간절단 등으로 조정수 가치가 없는 경우 : 부담금 = 도급공사 설계비 2. 상당한 보호시설이 필요한 피해 및 강도의 가지치기의 경우 : 부담금 = 수목비의 20% + 보호시설 재료비 및 작업비 ※ 강도의 가지치기 : 수관의 1/3 이상 ※ 작업비 : 관리청 자체인력 활용시 세외수입 조치 3. 약도의 가지치기의 경우 : 부담금 = 수목비의 10% + 작업비 4. 이식을 원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이식하는 경우 : 부담금 = 도급공사 설계비 ※ 도급공사 설계비 : 세입세출의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 나. 관리청에서 이식하는 경우 : 부담금 = 도급공사 설계비 + 이식비 ※ 이식비 : 관리청 자체인력 활용시 세외수입 조치 5. 제거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제거하는 경우 : 부담금 = 도급공사 설계비 ※ 도급공사 설계비 : 세외수입 조치 나. 관리청에서 제거하는 경우 : 부담금 = 도급공사설계비 + 제거비 ※ 제거비 : 관리청 자체인력 활용시 세외수입 조치 도급공사설계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 적용(수목 등 재료비 포함)하여 산정 수 목 비 : 가격정보(조달청)지 가격작용,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시중 시가 적용 예치금납부방법 : 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 가능 예치금예치기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하자책임 담보기간 동안 예치 예치금 환불 등 : 예치기간 경과 후 이식목에 대한 조정수로서의 가치여부 를 판단하여 환불 또는 세외수입 조치

신 · 구조문대비표

(제14조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8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① 시장 등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 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8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① - -----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장기 <u>치료를</u> 요하는 질병 또 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 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 <u>치료가 필요한</u> ----- ----- ----- ---
3. ~ 7. (생략)	3. ~ 7.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제15조 서울특별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6조(의무사용량 등) ① (생략)	제6조(의무사용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순환골재 등 사용용도 및 의무 사용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관로공사: 채움용 골재소요량의 40퍼센트 이상. 다만, 누수 등으로 인한 복구공사 및 <u>긴급을 요하는</u> 공사는 제외	2. ----- -----, ----- ----- <u>긴급한</u>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제16조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장기 <u>치료를 요하는</u> 질병 또 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 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 <u>치료가 필요한</u> ----- ----- ----- ---
3. ~ 6. (생략)	3. ~ 6.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제17조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현행	개정안
제22조(병가) ① (생략)	제22조(병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u>요양을 요하는</u>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② ----- ----- ----- <u>요양</u> <u>이 필요한</u>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제18조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 조례)

현행	개정안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u>상시출장을 요하는</u> 서울특별 시 공무원(이하 "시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 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u>상시출장이 필요한</u> ----- -----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제19조 서울특별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 운영에 관한 조례)

현			개			정			안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증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증					
대 표 자	근무부서		대 표 자	근무부서		대 표 자	근무부서		대 표 자	근무부서	
	직 급			직 급			직 급				
	성 명			성 명			성 명				
보완을 요하는 사항						보완이 필요한 사항					
보 완 이 유						보 완 이 유					
보 완 기 한						보 완 기 한					
공무원직장협의회설 립 · 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4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 원직장협의회 설립통보사항에 대하여 위와같이 보완을 요구 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인)						공무원직장협의회설 립 · 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4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 원직장협의회 설립통보사항에 대하여 위와같이 보완을 요구 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인)					

신 · 구조문대비표

(제20조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6조(회의) ①·② (생략)	제6조(회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15일 전까지 회의일시 · 회의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u>긴</u> <u>급을 요하는</u> 등 부득이한 사정 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③ ----- ----- ----- -----, ---- <u>긴</u> <u>급한 경우</u> ----- -----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제21조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생략) 2. 장기 <u>치료를 요하는</u> 질병 또 는 장기해외거주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 6. (생략)	제13조(위원의 해촉) ----- ----- ----- -----. 1. (현행과 같음) 2. --- <u>치료가 필요한</u> ----- ----- ----- 3. ~ 6.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제22조 서울특별시 교육·복지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5조(위원의 임기 등) ① (생략) ② 시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 <u>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u>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생략)	제5조(위원의 임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u>장기 치료가 필요한</u> ----- ----- 2.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제23조 서울특별시 국제 정책고문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3조(자격 및 해촉) ①·② (생략)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정책고문을 해촉할 수 있다. 1. (생략) 2. <u>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u> 등으로 제3조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4. (생략)	제3조(자격 및 해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현행과 같음) 2. <u>장기 치료가 필요한</u> ----- ----- ----- 3. 4. (현행과 같음)

[illegible]

신 · 구조문대비표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현행	개정안
제21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시 장은 위촉직위원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 3. (생략) 4. 장기 <u>치료를</u> 요하는 질병 또 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 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5. (생략)	제21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u>치료가 필요한</u> ----- ----- ----- -- 5.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제26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현행	개정안
제21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영 제31조제9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1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 ----- ----- -----.
1.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서 따라 단순한 정리를 요하는 사항	1. ----- ----- 정리가 필요한 -----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제86조의2(정비사업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② (생략)	제86조의2(정비사업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주택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택공급기획관이 되며, 위원은 정비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 ----- ----- ----- <u>건축기획관</u> -----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④ ~ ⑩ (생략)	④ ~ ⑩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제27조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12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 ④ (생략) ⑤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 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이 위 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 <u>장기치료를 요하</u> <u>는</u>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으 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생략)	제12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1. ----- <u>장기 치료가 필요</u> <u>한</u> ----- ----- ----- 2.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제28조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21조(시정명령 등) ① ~ ③ (생략)	제21조(시정명령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한다. 다만, <u>긴급을 요하거나</u> 점검목적에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 ----- ----- -----, ----- <u>긴급한 경우이거나</u> ----- ----- -----.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제29조 서울특별시 민간보건의료기관 이용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지원 조례)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만성질환"이란 장기간 발병해 지속되는 질환으로 가정 및 지역사회에서 상시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환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	1. ----- ----- ----- ----- --.
가. ~ 라. (생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그 외 복합질환 등으로 인해 장기적인 <u>치료를 요하는</u> 질병	마. ----- ----- <u>치료가 필요한</u> -----
2. · 3. (생략)	2. · 3.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제30조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현행	개정안
제8조(실시협약예고 대상) 시장은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을 최초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u>긴급을 요하는</u>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실시협약예고 대상) ----- ----- ----- -----, ----- <u>긴급한</u> ----- -----.

신 · 구조문대비표

(제31조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4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① (생략)	제4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회의 개최 시 위촉 또는 임명하고, 해당 회 의 종료와 함께 위촉 해제 또는 해임된다.	②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안전 실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u>안</u> <u>전총괄관</u> 으로 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 ----- -- <u>도로기획관</u> ---. ----- -----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9조(행위의 금지) ①·② (생 략)	제9조(행위의 금지) ①·② (현행 과 같음)
③ 운영자는 시설물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③ ----- -----

현행	개정안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시장은 운영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가로판매대에서 금지되는 행위	5. ----- --
가.·나. (생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행위. 다만, 전기조리기구를 이용하여 <u>보온을 요하는</u> 핫도그, 햄버거, 샌드위치, 건포(乾脯)류 및 김밥의 판매행위에 한정하여 시장의 사전 승인이 있는 경우 판매를 허용함.	다. ----- -----. ----- <u>보온이</u> <u>필요한</u> ----- ----- ----- -----.
라. (생략)	라. (현행과 같음)
6. (생략)	6.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2호서식]

도로점용 허가증			
제 주 성	호 : 소 :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도로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다음과 같은 내용과 조건을 부여하고 허 가합니다.			
구 청 장 (인)			
허가내용			
1.점용장소	2.점용면적		
3.취급품목			
4.점용목적	5. 도로의 종류 (시도·구·도)		
6.점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1년이내)		
7.점용료			
허가조건			
1. 허가기간이 만료된 시설물은 상품 및 그 밖의 물건 등을 제거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지정한 기한까지 설치자가 철거하고 도로원상 회복점사를 받아야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점용허가기간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허가받은 자는 구청장이 도로·시설물관리에 관하여 명하는 제한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허가기간 중이라도 구청장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3. 허가받은 자는 허가한 취급품목 이외의 품목을 취급하거나 아래의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가로판매대 운영자는 다음의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1) 의약품류 및 화공약품류 등의 판매 2) 음란·퇴폐를 조장하는 서적 등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 3) 「식품위생법」상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음식조리·판매(단, 가로판매대의 운영자는 전기조리기구를 이용하여 보온을 요하는 핫도그·햄버거·샌드위치·건포(乾脯)류 및 김밥은 구청장의 사전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판매허용) 4) 그 밖에 법령으로 취급이 금지된 품목의 판매 나. 구두수선대 운영자는 구두를 닦거나 수선하는 행위 또는 열쇠를 수리·가공하는 행위 이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허가받은 자는 도로점용허가 기간중 도로를 손깨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 하거나 이에 상당한 복구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도로점용 허가증			
제 주 성	호 : 소 :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도로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다음과 같은 내용과 조건을 부여하고 허 가합니다.			
구 청 장 (인)			
허가내용			
1.점용장소	2.점용면적		
3.취급품목			
4.점용목적	5. 도로의 종류 (시도·구·도)		
6.점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1년이내)		
7.점용료			
허가조건			
1. 허가기간이 만료된 시설물은 상품 및 그 밖의 물건 등을 제거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지정한 기한까지 설치자가 철거하고 도로원상 회복점사를 받아야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점용허가기간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허가받은 자는 구청장이 도로·시설물관리에 관하여 명하는 제한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허가기간 중이라도 구청장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3. 허가받은 자는 허가한 취급품목 이외의 품목을 취급하거나 아래의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가로판매대 운영자는 다음의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1) 의약품류 및 화공약품류 등의 판매 2) 음란·퇴폐를 조장하는 서적 등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 3) 「식품위생법」상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음식조리·판매(단, 가로판매대의 운영자는 전기조리기구를 이용하여 보온이 필요한 핫도그·햄버거·샌드위치·건포(乾脯)류 및 김밥은 구청장의 사전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판매허용) 4) 그 밖에 법령으로 취급이 금지된 품목의 판매 나. 구두수선대 운영자는 구두를 닦거나 수선하는 행위 또는 열쇠를 수리·가공하는 행위 이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허가받은 자는 도로점용허가 기간중 도로를 손깨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 하거나 이에 상당한 복구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현행

[별지 제3호서식]

보도상영업시설물 대부계약서

○○○구청장(이하 "대부자"라 한다)과 ○○○(이하 "임차자"라 한다)는 가로판매대 등 보도상영업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대부자"가 시설물을 "임차자"에게 대부하고 "임차자"가 이를 사용·운영함에 있어 "대부자"와 "임차자"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부 목적물) "대부자"가 "임차자"에게 대부하는 목적물은 다음과 같다.

시설물 종류 ()	관리 번호	○○○○년 - ○○구 - ○○○		
	설치 장소	서울특별시	구 (도로명)	(건물번호)
		앞 (주요건물명 기재)		
	시 설 물 규 격	가로 (m)×세로 (m)×높이 (m)		
	취급 품목			

제3조(대부기간) 대부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4조(대부료 등) ① 대부료는 연간 원으로 한다.
② 대부료의 납기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되, 납부기한 경과후의 연체료를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5조(손해보험가입 등) ① "임차자"는 시설물을 운영함에 있어 화재·파손 및 훼손 등 손실이 발생한 경우 "임차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비용부담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차자"는 "대부자"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시설물 가액의 상당액에 해당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대부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자 준수사항) "임차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보존 책임과 부담을 지며 시설물을 운영·관리함에 있어서 다음과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2조에서 정한 취급품목 등 대부목적 이외의 행위 금지
- 시설물의 전매·전대·질권설정 및 연고권의 주장 금지
- 시설물의 변경행위 금지
- "임차자" 이외의 자가 시설물을 운영하는 행위 금지. 다만, 시설물 대부계약자 배우자 및 직계가족 중 1명을 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자 증명서에 등재한 후 대부계약자와 교대로 운영 가능
- 시설물 외부(지붕포함)에 상품이나 그 밖에 물건의

개정안

[별지 제3호서식]]

보도상영업시설물 대부계약서

○○○구청장(이하 "대부자"라 한다)과 ○○○(이하 "임차자"라 한다)는 가로판매대 등 보도상영업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대부자"가 시설물을 "임차자"에게 대부하고 "임차자"가 이를 사용·운영함에 있어 "대부자"와 "임차자"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부 목적물) "대부자"가 "임차자"에게 대부하는 목적물은 다음과 같다.

시설물 종류 ()	관리 번호	○○○○년 - ○○구 - ○○○		
	설치 장소	서울특별시	구 (도로명)	(건물번호)
		앞 (주요건물명 기재)		
	시 설 물 규 격	가로 (m)×세로 (m)×높이 (m)		
	취급 품목			

제3조(대부기간) 대부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4조(대부료 등) ① 대부료는 연간 원으로 한다.
② 대부료의 납기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되, 납부기한 경과후의 연체료를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5조(손해보험가입 등) ① "임차자"는 시설물을 운영함에 있어 화재·파손 및 훼손 등 손실이 발생한 경우 "임차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비용부담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차자"는 "대부자"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시설물 가액의 상당액에 해당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대부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자 준수사항) "임차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보존 책임과 부담을 지며 시설물을 운영·관리함에 있어서 다음과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2조에서 정한 취급품목 등 대부목적 이외의 행위 금지
- 시설물의 전매·전대·질권설정 및 연고권의 주장 금지
- 시설물의 변경행위 금지
- "임차자" 이외의 자가 시설물을 운영하는 행위 금지. 다만, 시설물 대부계약자 배우자 및 직계가족 중 1명을 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자 증명서에 등재한 후 대부계약자와 교대로 운영 가능
- 시설물 외부(지붕포함)에 상품이나 그 밖에 물건의

현행	개정안
진열·적치 금지 6. 시설물 외부 수시 세척 등 주변 청결유지 7. 도로점용허가증, 대부계약서, 운영자증명서, 사업자 등록증을 시설물내에 상시 비치하고 관계공무원 확인시 제시 8. 그 밖에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법령 등에서 금지하는 행위 제7조(취급 금지품목) "임차자"는 시설물에서 다음 각 호의 품목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의약품 및 화공약품 등을 취급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2. 음란·퇴폐를 조장하는 서적 등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 3.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행위. 다만, 가로판매대의 운영자는 전기조리기구를 이용하여 <u>보온을 요하는</u> 핫도그, 햄버거, 샌드위치, 건포(乾脯)류 및 김밥의 판매행위에 한정하여 "대부자"의 사전 승인이 있는 경우 판매를 허용함. 4. 그 밖에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 제8조(공과금) "임차자"는 시설물 운영으로 인한 전기요금 등 공과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민·형사상의 책임) "임차자"는 시설물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임차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대부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아 이를 배상하였을 경우 "임차자"는 "대부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계약의 갱신) 조례 제6조에 따른 대부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부만료 30일전까지 계약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① "대부자"는 관계공무원이 시설물 운영상태를 점검하여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임차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의 해제·해지) "대부자"는 "임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차자"와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자"는 "대부자"에게 손해배상청구나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없다. 1. "임차자"가 납부기한내에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아 "대부자"가 3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토록 최고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료를 내지 않은 경우 2. 허위증빙서류의 제출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을 대부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3. 「도로법」 제63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어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4. 조례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12조의2(대부료의 환불)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차자"가 시설물을 반납하거나 제12조에 따라 대부	진열·적치 금지 6. 시설물 외부 수시 세척 등 주변 청결유지 7. 도로점용허가증, 대부계약서, 운영자증명서, 사업자 등록증을 시설물내에 상시 비치하고 관계공무원 확인시 제시 8. 그 밖에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법령 등에서 금지하는 행위 제7조(취급 금지품목) "임차자"는 시설물에서 다음 각 호의 품목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의약품 및 화공약품 등을 취급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2. 음란·퇴폐를 조장하는 서적 등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 3.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행위. 다만, 가로판매대의 운영자는 전기조리기구를 이용하여 <u>보온이 필요한</u> 핫도그, 햄버거, 샌드위치, 건포(乾脯)류 및 김밥의 판매행위에 한정하여 "대부자"의 사전 승인이 있는 경우 판매를 허용함. 4. 그 밖에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 제8조(공과금) "임차자"는 시설물 운영으로 인한 전기요금 등 공과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민·형사상의 책임) "임차자"는 시설물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임차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대부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아 이를 배상하였을 경우 "임차자"는 "대부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계약의 갱신) 조례 제6조에 따른 대부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부만료 30일전까지 계약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① "대부자"는 관계공무원이 시설물 운영상태를 점검하여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임차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의 해제·해지) "대부자"는 "임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차자"와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자"는 "대부자"에게 손해배상청구나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없다. 1. "임차자"가 납부기한내에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아 "대부자"가 3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토록 최고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료를 내지 않은 경우 2. 허위증빙서류의 제출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을 대부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3. 「도로법」 제63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어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4. 조례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12조의2(대부료의 환불)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차자"가 시설물을 반납하거나 제12조에 따라 대부

현행	개정안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대부자"는 "임차자"가 해당 계약에 의해 납부한 연간 대부료 중 잔여기간의 대부료를 "임차자"에게 일할로 계산하여 환불하여야 한다. 제13조(대부시설물 반환)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 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도로점용허가 갱신기한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자"는 대부재산을 원상회복하여 "대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제소전 화해조서) ① "대부자"와 "임차자"는 대부계약 내용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 부터 4개월 이내에 "대부자"와 "임차자"의 화해사항을 "대부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확인 후 화해조서 정본을 각각 보관한다. ② 화해비용은 "대부자"와 "임차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 제15조(계약내용의 해석) 이 계약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상호 이견이 있거나 이 계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로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조례 등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16조(계약의 효력 등) ① 이 계약의 효력은 체결일부 터 발생하고 계약사항의 이행 완료시까지 효력이 있다. ②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대부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대부자"와 "임차자"가 서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임대인(대부자) : 서울특별시 〇〇〇구 청 장 〇〇 〇 (인) 임차인(임차자) : 서울특별시 구 (도로명) (건물번호) 앞 생년월일 : 성명: (인)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대부자"는 "임차자"가 해당 계약에 의해 납부한 연간 대부료 중 잔여기간의 대부료를 "임차자"에게 일할로 계산하여 환불하여야 한다. 제13조(대부시설물 반환)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 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도로점용허가 갱신기한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자"는 대부재산을 원상회복하여 "대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제소전 화해조서) ① "대부자"와 "임차자"는 대부계약 내용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 부터 4개월 이내에 "대부자"와 "임차자"의 화해사항을 "대부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확인 후 화해조서 정본을 각각 보관한다. ② 화해비용은 "대부자"와 "임차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 제15조(계약내용의 해석) 이 계약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상호 이견이 있거나 이 계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로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조례 등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16조(계약의 효력 등) ① 이 계약의 효력은 체결일부 터 발생하고 계약사항의 이행 완료시까지 효력이 있다. ②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대부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대부자"와 "임차자"가 서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임대인(대부자) : 서울특별시 〇〇〇구 청 장 〇〇 〇 (인) 임차인(임차자) : 서울특별시 구 (도로명) (건물번호) 앞 생년월일 : 성명: (인)

신 · 구조문대비표

(제32조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16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영 제11조제11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생략) 2.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서 따라 단순한 정리를 요하는 사항 3. 4. (생략)	제16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 ----- ----- ----. 1. (현행과 같음) 2. ----- ----- 정리가 필요한 -- -- 3. 4. (현행과 같음)
제27조(조합설립인가 내용의 경미한 변경) 영 제21조제8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서 따라 단순한 정리를 요하는 사항 2. ~ 4. (생략)	제27조(조합설립인가 내용의 경미한 변경) ----- ----- ----- ----. 1. ----- ----- 정리가 필요한 -- -- 2. ~ 4.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제33조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9조의4(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의4(위원의 해촉)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장기 <u>치료를</u>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 <u>치료가 필요한</u> ----- ----- ----- --
3. ~ 6. (생략)	3. ~ 6.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제34조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19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 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생략) 2. 장기 <u>치료를 요하는</u> 질병 또 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 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 7. (생략) ② (생략)	제19조(위원의 해촉) ① ----- ----- ----- -----. 1. (현행과 같음) 2. --- <u>치료가 필요한</u> ----- ----- ----- --- 3.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제35조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현행	개정안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생략) ④ 시장은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거주지, 성(性), 연령, 직업 등을 고려하여 각계각층의 시민참여 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만, 특별히 <u>전문성을 요하는 경</u> 우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u>전문성이 필요한</u> --- -----.

신 · 구조문대비표

(제36조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현행	개정안
제6조(외국인투자 유치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대규모 투자사업 및 사회기반시설 등의 <u>전문성을 요하는</u> 분야에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 유치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가·단체 또는 법인 등(이하 "투자유치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6조(외국인투자 유치사무의 위탁) ① ----- ----- <u>전문성이 필요한</u> ----- ----- ----- ----- -----. ②·③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제37조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생략)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u>긴급을 요하는</u>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 ----- -----, --- <u>긴급한 조치가 필요한</u> ----- ----- -----.
③ ~ ⑥ (생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8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8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장기 <u>치료를</u>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 <u>치료가 필요한</u> ----- ----- ----- ---
3. ~ 7. (생략)	3. ~ 7.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제38조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현행	개정안
제27조(병가) ① (생략)	제27조(병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u>요양을 요하는</u>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② ----- ----- ----- <u>요양이 필요한</u>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제39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현행	개정안
제47조(전문가의 활용) ① 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전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전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안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이하 "전문가"라 한다)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7조(전문가의 활용) ① ----- ----- <u>전문지식이 필요한</u> ----- ----- ----- -----.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제40조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현행	개정안
제25조(회의)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의장으로부터 서면으로 자문 요청을 받은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부터 7일전 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및 장소, 회의 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u>긴급을 요하는</u>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5조(회의) ① ----- ----- ----- ----- ----- -----, ----- <u>긴급한</u>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제41조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8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 -----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장기 <u>치료를</u> 요하는 질병 또 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 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 <u>치료가 필요한</u> ----- ----- ----- ---
4. ~ 7. (생략)	4. ~ 7.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제42조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현행	개정안
제5조(용도) ① (생략)	제5조(용도) ① (현행과 같음)
② 재난계정의 자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② ----- ----- ----- -----.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관리활동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1. ----- ----- -----
가. ~ 다. (생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 등 방재목적 시설의 <u>긴급을 요하는</u> 설치 및 보수·보강	라. ----- ----- ----- <u>긴급한</u> ----- -----
마. ~ 자. (생략)	마. ~ 자. (현행과 같음)
2. · 3. (생략)	2. · 3.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제43조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현행	개정안
제33조(자문단원의 임기) 자문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시장이 자문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33조(자문단원의 임기)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장기치료를 요하는</u>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u>장기 치료가 필요한</u> ----- ----- -----

신 · 구조문대비표

(제44조 서울특별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현행	개정안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장기 <u>치료를 요하는</u> 질병 또 는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 <u>치료가 필요한</u> ----- ----- -----
3. ~ 6. (생략)	3. ~ 6.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제45조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8조(수탁 교육·훈련 실시) ① (생략) ② 수탁 교육·훈련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센터의 교육·훈련 기본 일정계획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다만, 본부장이 <u>긴급을 요하는</u> 수탁 교육·훈련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생략)	제8조(수탁 교육·훈련 실시)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u>긴급한</u> ----- ----- -----, ③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제46조 서울특별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생략)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 소집일 1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다만, <u>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u>	② ----- ----- ----- -----, ----- <u>긴급한</u>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제47조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

현행	개정안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u>치료를 요하는</u> 질병 또 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 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 4. (생략)	제5조(위원의 해촉) ----- ----- ----- -----. 1. --- <u>치료가 필요한</u> ----- ----- ----- -- 2. ~ 4.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제48조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

현행	개정안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 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장기 <u>치료를 요하는</u> 질병 또 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 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 <u>치료가 필요한</u> ----- ----- ----- --
3. ~ 6. (생략)	3. ~ 6.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제49조 서울특별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지원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심리적 외상"이란 개인, 가족, 학교, 지역사회 등에서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사건, 심한 부상, 성폭력, 재난 등의 사건을 직접 경험하거나 타인에게 일어난 사건을 목격하여 극심한 공포, 무력감, 두려움을 경험하는 심각한 심리적 충격 또는 개인, 가족, 사회의 심리적 <u>회복을</u> 요하는 총체적 외상을 말한다.	2. ----- ----- ----- ----- ----- ----- ----- <u>회복이 필요한</u> -----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제50조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11조(해촉) 시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해촉)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장기 <u>치료를</u>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 <u>치료가 필요한</u> ----- ----- ----- --
3. ~ 5. (생략)	3. ~ 5.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제5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 ·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 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 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2. (생략)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u>기술을</u> <u>요하는</u> 사무 4. (생략)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 ----- ----- ----- -----, 1.·2. (현행과 같음) 3. ----- <u>기술이</u> <u>필요한</u> -- 4.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제52조 서울특별시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10조(조정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 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법 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0조(조정위원의 해촉) ----- ----- ----- -----,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장기 <u>치료를</u> 요하는 질병 또 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 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 <u>치료가 필요한</u> ----- ----- ----- ---
4. ~ 7. (생략)	4. ~ 7.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제53조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현행	개정안
제17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 3. (생략) 4.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u>설치를 요하지</u> 아니할 것 5.·6. (생략) ② ~ ⑤ (생략)	제17조(가설건축물) ①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 <u>설치가 필요하지</u> ----- 5.·6.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제54조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3조(재정비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 ① 영 제4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2. (생략)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중 허가구역 지정기간의 변경 및 토지거래계약의 <u>허가를 요하지</u>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 변경에 <u>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u> 4. (생략) ② (생략)	제3조(재정비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 ① ----- ----- ----- -----, 1. 2. (현행과 같음) 3. ----- ----- ----- ----- ----- <u>허가가 필요하지</u> ----- <u>관한 사항</u>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제55조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④ (생략)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심의 안건이 <u>긴급을 요하거나</u> 유사·반복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하거나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서면 심의의 경우 전자적 처리방법에 따라 심의할 수 있다.	⑤ ----- <u>긴급한 경우이거나</u> ----- ----- ----- ----- -----.
⑥ ~ ⑩ (생략)	⑥ ~ ⑩ (현행과 같음)
제12조의1(소위원회) ① (생략)	제12조의1(소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②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중 <u>긴급을 요하거나</u> 유사·반복되는 사항	2. ----- -- <u>긴급한 경우이거나</u> -----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제56조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8조(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산정된 진료수가등에서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	제8조(감면) ①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병원의 전염병동, 정신병동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u>건강진단</u> 을 요하거나 감염 또는 상해를 입은 사람	2. ----- <u>건강진단</u> 이 필요하거나----- -----
3. 4. (생략)	3. 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제57조 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현행	개정안
제7조(회의의 소집 등) ①·② (생략)	제7조(회의의 소집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u>긴급을 요하거나</u>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 ----- ----- -----, --- -- <u>긴급하거나</u> ----- -----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제58조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현행	개정안
제12조(회의) ① · ② (생략)	제12조(회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u>긴급을 요하거나</u>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 ----- ----- -----, ----- <u>긴급하거나</u> ----- ----- ----- -----.
④ ~ ⑦ (생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42조(기금의 관리 · 운용) ① · ② (생략)	제42조(기금의 관리 · 운용)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u>여성가족정책실장</u> 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 <u>여성가족실장</u>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 ⑧ (생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제59조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7조(회의) ① ~ ③ (생략)	제7조(회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u>긴급을 요하거나</u>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 ----- ----- -----, --- -- <u>긴급하거나</u> ----- ----- ---
⑤·⑥ (생략)	⑤·⑥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제60조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현행	개정안
제4조의8(시정명령) ① ~ ③ (생략)	제4조의8(시정명령)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점검을 하려는 때에는 센터에 미리 점검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u>긴급을 요하거나</u> 점검목적	④ ----- ----- -----, --- -- <u>긴급한 경우이거나</u> ----- ----- -----.
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제61조 서울특별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11조(위원회 운영) ①·② (생략)	제11조(위원회 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u>감사담당관</u> 이 된다.	③ ----- ----- <u>청렴담당관</u> -----.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1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u>긴급을 요하거나</u>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 ----- ----- -----, ----- <u>긴급하거나</u> ----- ----- -.
⑦ (생략)	⑦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제62조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현행	개정안
제6조(회의) ① (생략)	제6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회의개최 1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u>긴급을 요하거나</u>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 ----- -----, --- <u>긴급하거나</u>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제63조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현행	개정안
제10조(회의) ①·② (생략)	제10조(회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u>긴급을</u>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③ ----- <u>긴급하거나</u> ----- ----- ----- --.

신 · 구조문대비표

(제64조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현행	개정안
제8조(협의회 구성) ① (생략)	제8조(협의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서울특별시 <u>자원순환과</u> 협의회 사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② ----- ----- ----- <u>자원회수시설과</u>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제65조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

현행				개정안			
[별표]				[별표]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지원시설(제5조제3항 관련)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지원시설(제5조제3항 관련)			
주관국(과)	시 설 명	위 치	주요기능	주관국(과)	시 설 명	위 치	주요기능
여성가족 정책실 (권익보호 담당관)	◦십대여성일 시지원센터	동작구 상도로 152-1(상도동) (야간전용 일시침터 비공개)	위기 십대여성 상담 및 일시보호	여성가족실 (양성평등 담당관)	◦십대여성일 시지원센터	동작구 상도로 152-1(상도동) (야간전용 일시침터 비공개)	위기 십대여성 상담 및 일시보호
	◦십대여성건 강센터	마포구 어울마당로5길 34(서교동)	위기 십대여성 건강지원		◦십대여성건 강센터	마포구 어울마당로5길 34(서교동)	위기 십대여성 건강지원
	◦관악늘푸른 교육센터	관악구 관천로113(신림동)	위기 십대여성 교육 및 자립지원		◦관악늘푸른 교육센터	관악구 관천로113(신림동)	위기 십대여성 교육 및 자립지원
	◦강북늘푸른 교육센터	강북구 도봉로98길 33(번동)	위기 십대여성 교육 및 자립지원		◦강북늘푸른 교육센터	강북구 도봉로98길 33(번동)	위기 십대여성 교육 및 자립지원

신 · 구조문대비표

(제66조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행정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u>여성가족정책실장</u> 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 ----- -----, ----- ----- <u>여성</u> <u>가족실장</u> ----- --, ----- ----- ---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제67조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현행	개정안
제18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u>여성가족정책실장</u> 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18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등) ① ----- ----- <u>여성가족실장</u>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제68조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현행	개정안
제5조(국공립어린이집확충심의위원회 설치·구성) ①·② (생략)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생략) 2. <u>여성가족정책실장</u> , 재무국장, 재정기획관 3. (생략) ④·⑤ (생략)	제5조(국공립어린이집확충심의위원회 설치·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1. (현행과 같음) 2. <u>여성가족실장</u> ----- ----- 3.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제69조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22조(서울상상나라운영위원회 의 설치 및 운영) ① (생략)	제22조(서울상상나라운영위원회 의 설치 및 운영) ① (현행과 같 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 되, <u>여성가족정책실장과 출산육 아담당관</u> 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 다.	② ----- ----- -- <u>여성가족실장과 아이돌봄담 당관</u> ----- --.
③ ~ ⑥ (생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제70조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9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 ② (생략) ③ 협의회는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 행정1부시장, <u>여성가족정 책실장</u> , 평생교육국장 2. ~ 5. (생략) ④ · ⑤ (생략)	제9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u>여성가족실 장</u> ----- 2. ~ 5. (현행과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제71조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u>여성가족정책실장</u> 이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② ----- ----- ----- <u>여성가족실장</u> ----- ----- ----- -----.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제72조 서울특별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④ (생략)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u>노동정책담당관</u> 으로 한다.	⑤ ----- ----- <u>노동정책과장</u> -----.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제73조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현행	개정안
제6조의3(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② (생략)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u>소상공인 담당관</u> 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 ⑦ (생략)	제6조의3(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u>소상공인 정책과장</u> ----- --. ④ ~ ⑦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제74조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7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관리공무원) ① ----- ----- ----- ---, ----- -----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분임기금운용관	2. -----
가. 융자계정 : <u>소상공인담당관</u>	가. ----- <u>소상공인정책과장</u>
나. (생략)	나. (현행과 같음)
다. 사회적경제계정 : <u>공정경제담당관</u>	다. ----- <u>공정경제과장</u>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9조(심의회의 구성) ① (생략)	제9조(심의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② 위원장은 기금운용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용자계정 : <u>소상공인담당관</u> 2. (생략) 3. 사회적경제계정 : <u>공정경제담당관</u> 4. (생략) ③ (생략)	② ----- ----- ----- ---. 1. ----- <u>소상공인정책과장</u> 2. (현행과 같음) 3. ----- <u>공정경제과장</u>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제75조 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

현행	개정안
제13조(위원회 구성) ① ~ ④ (생략) ⑤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u>공정경제담당관</u> 으로 한다.	제13조(위원회 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u>공정경제과장</u> -----.

신 · 구조문대비표

(제76조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현행	개정안
제11조(기금관리)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및 지급명령 사무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관리) ① ----- ----- ----- -----, ----- ----- -----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분임기금운용관	2. -----
가.·나. (생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장애인복지계정 -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다. ----- 장애인복지과장
라. 삭제	
마. (생략)	마. (현행과 같음)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제77조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⑤ (생략) ⑥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u>빅데이터담당관</u> 으로 한다. ⑦ (생략)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u>데이터전략과장</u> ----- --. ⑦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제78조 서울특별시 물류정책위원회 조례)

현행	개정안
제3조(구성) ①·② (생략)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교통실장, 도시공간본부장, 주택공급기획관, 교통기획관, 경제일자리기획관 2. (생략)	제3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 <u>건축기획관, 교통운영관</u> -- ----- 2.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제79조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9조(대학교 교원 임용의 양성평등) ① (생략) ② 「교육공무원임용령」 제6조의4에 따른 양성평등조치계획 및 그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평등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9조(대학교 교원 임용의 양성평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7조----- ---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제80조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현행	개정안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14조에 따른 여성위원 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 ----- ----- -----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2조-----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제81조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10조(중소·벤처기업 등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 벤처기업,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의 입주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지정·설립할 수 있다. 1.·2. (생략) 3.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17조에 따른 여성의 취업, 창업 및 기업활동 참여와 여성인력개발 활성화를 위한 시설 4. (생략)	제10조(중소·벤처기업 등 지원) ----- ----- ----- -----. 1.·2. (현행과 같음) 3.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25조----- ----- ----- ----- 4.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제82조 서울특별시 산업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

현행	개정안
제19조(산업단지 지원) ①·② (생략)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 내·외의 시설 조성·확충 지원 시 「서울특별시 성평등기본 조례」에 따른 성평등한 도시공간 및 시설 조성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9조(산업단지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서울특별시 양성평등기본 조례」----- ----- -----.

신 · 구조문대비표

(제83조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현행	개정안
제6조(지침서 등) ① (생략)	제6조(지침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과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른 성평등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결과 등과 연계하여 성인지 예산제가 운영되도록 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 --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 -----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지침서의 활용도 및 변경된 제도·정책의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성평등위원회(이하 "성평등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 지침서를 보완할 수 있다.	④ ----- ----- -----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양성평등위원회"라 한다)----- -----.
제8조(자문) 시장은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u>성평등위원회</u> 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고, <u>성평등위원회</u> 는 이에 응한다.	제8조(자문) ----- ----- ----- <u>양성평등위원회</u> ----- ----- <u>양성평등위원회</u> ----- -----.

신 · 구조문대비표

(제84조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45조, 제47조 및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2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여성관련시설을 설치 및 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참여를 장려하여 여성의 권익을 증진하고 성평등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43조----- ----- ----- ----- ----- -----.

신 · 구조문대비표

(제85조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되,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14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 ⑦ (생략)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 ----- -----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2조-----. ② ~ ⑦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어 투 표현 등의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안은 우리시 조례 내 일본어 투 용어의 순화,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변경 등을 위한 개정안으로, 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없음

4. 작성자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박준하 주무관(2133-6691)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정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4년 8월 12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특별조정교부금 반환 및 감액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에 관한 정보공개 근거 마련(안 제11조제6항)

나. 특별조정교부금 반환 및 감액 기준 구체화(안 제13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 (1) 입법예고(2024. 6. 7. ~ 6. 27.) 결과: 의견없음
- (2) 신·구조문 대비표: 불임

※ 작성자 : 행정국 자치행정과 김마태 (☎02-2133-6343)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29조의4에 따라 전년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시 누리집에 공개한다.

1. 자치구명
2. 교부일자
3. 사업명 및 사업내용
4. 교부액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제1항 중 “자치구가 조정교부금”을 “자치구청장이 일반조정교부금”으로, “때, 교부받은 특별조정교부금을 시장의 승인없이 교부 조건 또는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였을 때에는 해당 자치구가”를 “경우에는 해당 자치구청장이”로, “부분과 교부조건 또는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한 특별조정교부금액의 반환을 명하거나 부당하게 받으려하는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를 “부분의 금액에 대하여 반환하게 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교부할 특별조정교부금을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특별조정교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 또는 반환하여야 한다.

1. 자치구청장이 특별조정교부금의 신청 및 교부 등에 필요한 자료를 과장 또는 허위로 작성하여 부당하게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
2.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사용한 경우
3. 시장의 승인없이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한 경우
4. 예산 미확보 또는 법적·행정적 절차상 하자 등 자치구청장의 귀책사유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것이 명백한 경우
5. 자치구청장이 사업기간 연장 등 정당한 사유없이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비를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 ① ~ ⑤ (생략) <u><신설></u>	제11조(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 ① ~ ⑤ (현행과 같음) <u>⑥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29조의4에 따라 전년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시 누리집에 공개한다.</u> <u>1. 자치구명</u> <u>2. 교부일자</u> <u>3. 사업명 및 사업내용</u> <u>4. 교부액</u> <u>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제13조(부당한 조정교부금의 시정 등) ① 시장은 <u>자치구가 조정교부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과장 또는 거짓 기재하여 부당하게 교부받거나 받으려 하는 때, 교부받은 특별조정교부금을 시장의 승인없이 교부 조건 또는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였을 때에는 해당 자치구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과 교부조건 또는 용도를</u>	제13조(부당한 조정교부금의 시정 등) ① ---- <u>자치구청장이 일반 조정교부금-----</u> ----- ----- <u>경우에는 해당 자치구청장이 -</u> ----- ----- ----- ----- <u>----- 부분의 금액에 대하여</u>

현행	개정안
<u>변경하여 사용한 특별조정교부금액의 반환을 명하거나 부당하게 받으려하는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u> <u><신설></u>	<u>반환하게 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u>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교부할 특별조정교부금을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특별조정교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 또는 반환하여야 한다. 1. 자치구청장이 특별조정교부금의 신청 및 교부 등에 필요한 자료를 과장 또는 허위로 작성하여 부당하게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 2.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사용한 경우 3. 시장의 승인없이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한 경우

현행	개정안
② 제1항에 따라 반환 또는 감액한 금액을 다른 자치구의 보전재원으로 충당하거나 다음 연도 조정교부금의 재원에 가산한다.	4. <u>예산 미확보 또는 법적·행정적 절차상 하자 등 자치구청장의 귀책사유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것이 명백한 경우</u> 5. <u>자치구청장이 사업기간 연장 등 정당한 사유없이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비를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u> ③ <u>시장은 제1항 및 제2항</u>----- ----- ----- -----.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특별조정교부금의 정보공개 및 반환·감액에 관한 사항으로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비용추계서 첨부 대상이 아님

4. 작성자

행정국 자치행정과 김마태 (☎2133 - 6343)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4년 8월 12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항목 중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이 의무화된 공유 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대한 내용을 삭제함 (안 제4조의2제2항제4호)
- 나. 기부채납된 공유재산의 무상사용기간 기준일을 ‘기부채납일’ 이 아닌 ‘사용허가를 받은 날’ 로 개정함 (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 (1) 입법예고(2024. 5. 30. ~ 6. 19.) 결과: 의견없음
-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 재무국 재산관리과 김명희 (☎ 2133-3280)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 호”를 “각 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용도 이외”를 “용도 외”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제4조의2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정을 요하는”을 “시정이 필요한”으로 한다.

제16조 중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를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로 한다.

제18조의2제1호 중 “서울시”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서울시”를 “시”로 한다.

제25조제5호 중 “서울특별시가”를 “시가”로 한다.

제26조제3항 본문 중 “서울특별시”를 “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4호 중 “서울특별시가”를 “시가”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서울특별시”를 “시”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서울시가”를 “시가”로, “서울특별시”를 “시”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서울특별시의”를 “시의”로 한다.

제3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감면”을 각각 “감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 중 “감면: 학생수”를 각각 “감경: 학생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위 내에서 감면”을 “범위에서 감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서울특별시의”를 “시의”로, “범위 내에서 감면”을 “범위에서 감면”으로 한다.

제31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금고은행”을 “시 금고(「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금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서울특별시”를 “시”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2호 전단 중 “시금고”를 “시 금고”로 한다.

제36조제1항제4호 및 제7호 중 “서울특별시”를 각각 “시”로 한다.

제38조제1호, 같은 조 제4호 전단 및 같은 조 제5호 중 “서울특별시”를 각각 “시”로 한다.

제39조의2제1항 중 “「서울특별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되며”를 “말고”로, “위촉하되”를 “임명 또는 위촉하되”로, “과반수이상”을 “과반수”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주사가 된다”를 “주무관이 맡는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위원과반수”를 “재적위원 과반수”로 한다.

제39조의3제2호 중 “치료를 요하는”을 “치료가 필요한”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50조 단서 중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를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제52조 중 “사용대상 공무원”을 “사용자”로 한다.

제71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긴급처분을 요하는”을 “긴급처분이 필요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수선을 요하는”을 “수선이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 “서울특별시”를 각각 “시”로 한다.

7.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제72조제1항제1호 중 “요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생략)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공유 보존용재산과 일반재산 중 재산관리과장이 관리하는 재산 및 주택사업특별회계(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에 한함) 소관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재산소재지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② ----- ----- -----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제2호를 제외한 공유재산 중 다음 <u>각 호</u>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3. ----- -- <u>각 목</u> ----- ----- --
가. 나. (생략)	가. 나. (현행과 같음)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시유재산을 위임받아 관리하는 구청장은 위임받은 목적 또는 <u>용도이외</u> 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려는 경우(자기계약으로 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 ----- ----- ----- <u>용도 외</u> ----- ----- -----.

현행	개정안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10조의3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의(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민간위원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위촉직 위원 구성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회계학, 토목공학, 건축공학 등 관련 분야의 <u>전임강사</u> 이상으로 재직 경력이 있는 자	2. ----- ----- ----- -- <u>조교수</u> -----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4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제4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삭제>

현행	개정안
물」등 다른 법률에 따라 처 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제7조(실태조사) ① ~ ③ (생략) ④ 제1항의 실태조사결과 <u>시정</u> <u>을 요하는</u> 사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된 필요 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제16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 7조에 따르며 그 기산일은 <u>기부</u> <u>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시장</u> <u>의 승인을 받은 실제 사용 시작</u> <u>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u> 제18조의2(수익의 방법에 따른 사 용허가 대상) 영 제13조제3항제 18호에 따라 수익의 방법으로 사용허가가 가능한 기구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 제13조제3항제18호가목에	제7조(실태조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u>시정이</u> <u>필요한</u> ----- ----- ----- -----. 1. ~ 3. (현행과 같음) 제16조(무상사용기간) ----- ----- ----- <u>사용</u> <u>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u> <u>다.</u> 제18조의2(수익의 방법에 따른 사 용허가 대상) ----- ----- ----- ----- -----. 1. -----

현행	개정안
따른 국제기구가 <u>서울시</u> 내의 시유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 설하는 경우	----- <u>서울특별시</u> (이하 “시”라 한다) ----- -----
2. 영 제13조제3항제18호나목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가 <u>서울</u> <u>시</u> 내의 시유 행정재산에 사 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2. ----- ----- <u>시</u> -- ----- -----
제25조(외국인투자기업등에 대부 · 매각 대상 등) 제24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등에 대부·매 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25조(외국인투자기업등에 대부 · 매각 대상 등)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u>서울특별시</u> 가 조성하는 특수 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내 의 공유재산	5. <u>시가</u> ----- ----- -----
6. (생략)	6. (현행과 같음)
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①·② (생략)	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서울특별시</u> 소유가 아닌 주 거용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 지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 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 0 이상으로 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③ <u>시</u> ----- ----- ----- -----. -----

현행	개정안
따라 지정·고시된 재개발사업 구역 내에 있는 점유토지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5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자가 점유한 토지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④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 3. (생략)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사용하거나 <u>서울특별시</u>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	----- ----- ----- ----- ----- -----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 ----- ----- ----- ----- <u>시가</u> ----- ----- -----

현행	개정안
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 -----
5. 「중소기업기본법」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중소기업 창업·육성 관련 법령에 따라 <u>서울특별시</u> 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산업 또는 중소기업 지원시설	5. ----- ----- ----- <u>시</u> ----- ----- ----- -----
6. <u>서울시가</u> 자본금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서 <u>서울특별시</u> 조례에 설치 근거가 있는 법인에게 사용토록 하는 경우	6. <u>시가</u> ----- ----- <u>시</u> ----- ----- ----- -----
7. <u>서울특별시의</u>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유지를 점유·사용하는 경우	7. <u>시의</u> ----- ----- -----
8. ~ 14. (생략)	8. ~ 14. (현행과 같음)
⑥·⑦ (생략)	⑥·⑦ (현행과 같음)
제30조(대부료 등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 기업에 사업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의 감면	제30조(대부료 등의 감면) ① --- ----- ----- ----- ----- -----

현행	개정안
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5퍼센트를 <u>감면</u>할 수 있다. 가. ~ 바.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퍼센트를 <u>감면</u>할 수 있다. 가. ~ 사. (생략) ②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외국인학교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생략) 2. 75퍼센트 <u>감면</u> : 학생수가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외국인학교 3. 50퍼센트 <u>감면</u> :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외국인학교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1. (현행과 같음) 2. ----- ----- <u>감경</u>-----. 가. ~ 바. (현행과 같음) 3. ----- ----- <u>감경</u>-----. 가. ~ 사. (현행과 같음) ② ----- ----- ----- ----- ----- ----- -----. 1. (현행과 같음) 2. ----- <u>감경</u> : 학생수----- ----- ----- 3. ----- <u>감경</u> : 학생수----- ----- ③ (현행과 같음) ④ -----

현행	개정안
해당하는 생산·연구시설에 대하여 영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라 대부료를 100분의 30 <u>범위 내에서 감면</u>할 수 있다. 1.·2. (생략) ⑤ (생략) ⑥ 재산관리관은 영 제17조제7항제3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u>서울특별시의</u> 귀책사유로 인해 그 재산의 사용 또는 대부에 제한을 받은 경우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00 <u>범위 내에서 감면</u>할 수 있다. 제31조(전세금 납부방법의 대부) ①·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세금은 <u>서울특별시금고은행</u>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영 제31조에 따른 연간 대부료에 상당하는 금액이 되도록 역산하여 계산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징수한 전세금	----- ----- ----- <u>범위</u> <u>에서 감면</u>-----. 1.·2.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⑥ ----- ----- <u>시의</u> ----- ----- ----- ----- <u>범위에서 감면</u>-----. 제31조(전세금 납부방법의 대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u>시</u> 금고(「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금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 ----- ----- ---. ④ -----

현행	개정안
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되,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보증금의 예에 따른다. 다만, 전세금의 이자수입은 <u>서울특별시</u> 수입으로 한다. ⑤ (생략) ⑥ 제5항에 따라 중도에 취소 또는 해지되어 전세금을 반환함에 있어 그 귀책사유가 대부받은 자(이하 "전세자"라 한다)에게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대부료를 정산하여야 한다. 1. (생략) 2. 전세자는 제1호에 따라 정산 금액을 전세금 반환일까지 <u>신금고</u>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 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세금에서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다. 제36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재산 매	----- ----- ----- ----- -----, ----- ----- <u>신</u> -----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 ----- ----- -----, 1. (현행과 같음) 2. ----- ----- <u>신</u> <u>금고</u>-----, ----- ----- -----, 제36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 -----

현행	개정안
8. (생략) ②·③ (생략)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u>서울특별시</u> 소유가 아닌 건물(단,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효력기간 내에 사용 승인되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은 제외한다.)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특별시·광역시의 동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 시의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광역시·시·군의 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3. (생략) 4. 일단의 토지면적이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에서 1,000제곱미터 이하, 그 밖의 지역에	8.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 ----- ----- -----. 1. ----- <u>시</u> ----- ----- ----- ----- ----- ----- ----- ----- ----- ----- ----- ----- 2.·3. (현행과 같음) 4. ----- ----- -----

현	행	개	정	안
서는 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u>서울특별시</u> 소유가 아닌 건물 (단,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효력기간 내 에 사용 승인되지 않은 무허 가 건축물은 제외한다.)이 있 는 토지의 경우에는 같은 건 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 (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 의 소규모토지 면적에 미달하 는 경우에는 같은 규모의 면 적범위 내의 토지 포함)를 같 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 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 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 호 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는 집단화된 부분에만 한정하 여 위 매각범위 내에서 분할 매각할 수 있다.				
5. <u>서울특별시</u> 지분이 제1호의		5. 시		

현행	개정안
규모에 해당되는 일단의 공유토지를 공유자에게 매각하는 때. 다만 <u>서울특별시</u>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6. ~ 10. (생략) 제39조의2(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① 영 제48조의2에서 규정한 사유 일반재산의 수탁기관선정을 위하여 「<u>서울특별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u>」(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생략)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무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u>위촉하되</u>, 제2호의 민간전문가가 <u>과반수이상</u>이 되도록 한다. 1. ~ 3. (생략) ④·⑤ (생략) ⑥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 및 서기는 재산관리과의 위탁관리 및 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및 <u>주사가</u>	----- ----- ---. --- <u>시</u> ----- ----- -----. 6. ~ 10. (현행과 같음) 제39조의2(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① ----- ----- ----- <u>서울특별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u>----- -----. ② (현행과 같음) ③ ----- ---- <u>말고</u>----- ----- <u>임명 또는 위촉하되</u>----- <u>과반수가</u> -----. 1. ~ 3.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⑥ ----- ----- ----- ----- <u>주무관</u>

현행	개정안
된다.	<u>이</u> 말한다.
⑦ 심사위원회는 <u>위원과반수</u> 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 <u>재적위원 과반수</u> ----- -----,
⑧ (생략)	⑧ (현행과 같음)
제39조의3(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39조의3(위원의 해촉)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장기 <u>치료를</u>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 <u>치료가 필요한</u> ----- ----- ----- --
3.·4. (생략)	3.·4. (현행과 같음)
제47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려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u>범위</u> 안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제47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 ----- ----- <u>범위</u>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50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시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u>허가를</u> 요	제50조(사용허가) ----- ----- -----. ----- <u>그러하지</u>

현행	개정안
<u>하지</u> 아니한다. 제52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u>사용대상 공무원의</u>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갖추어 놓고 정리한다.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축산물 또는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려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 1. ~ 6. (생략) 7. <u>수선을</u> 요하는 물품으로서 <u>수선함이</u> 비경제적인 물품 8.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아니</u>하다. 제52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 ----- ----- <u>사</u> <u>용자</u>----- ----- -----.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 ----- ----- ----- ----- ----- ----- -----. 1. ~ 6. (현행과 같음) 7. <u>수선이</u> 필요한 물품으로서 <u>수선하는 것이</u> 비경제적인 물품 8. (현행과 같음) ② ----- ----- ----- -----.

현행	개정안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물품의 성질상 <u>긴급처분을 요하는</u> 물품 2. (생략) 3. <u>수선을</u>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품이 비경제적인 물품 4.·5.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u>서울특별시</u> 소속행정기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치구 및 중앙행정기관, 광역시, 도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장부상 취득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u>서울특별시</u> 소속행정기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치구에 대하여 행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또는 <u>서울특별시</u> 물품관리시스템에 게재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⑤ (생략) 제72조(불용품의 매각) ① 제71조	----- -----. 1. ----- <u>긴급처분이</u> <u>필요한</u> ----- 2. (현행과 같음) 3. <u>수선이</u> <u>필요한</u> ----- ----- 4.·5. (현행과 같음) ③ ----- ----- <u>시</u> ----- ----- ----- -----, ----- ----- <u>시</u> ----- ----- -----. ④ ----- ----- <u>시</u> ----- ----- -----. ⑤ (현행과 같음) 제72조(불용품의 매각) ① -----

현행	개정안
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	----- ----- ----- ----- -----.
1. 매각대금이 매각에 <u>요하는</u>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경우	1. ----- <u>필요한</u> ----- ----- --
2.·3. (생략)	2.·3. (현행과 같음)
② ~ ⑧ (생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별도 비용발생 요인이 없음

4. 작성자

- 재무국 재산관리과 김명희 주무관(2133-3280)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4년 8월 12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 가. 온라인 평생교육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추가함으로써 소외되는 계층 없이 폭넓게 취약계층을 지원하고자 함
- 나. 활동비, 마일리지, 경품 등의 제공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온라인 평생교육시스템 이용자의 학습 의지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가족돌봄청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청소년, 서울시 교육청 소속 학교의 건강장애학생 등,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아동보호시설 입소 아동을 온라인 평생교육 지원 대상에 추가함 (안 제7조제1항제8호~제11호)
- 나. 온라인 평생교육시스템 이용 활성화 및 교육 프로그램 참여 독려를 위해 지원 대상의 참여 실적·횟수 등에 따른 마일리지 지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안 제1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사회보장기본법」
-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 라. 기타
 - (1) 입법예고(2024. 6. 7.~6. 27.) 결과: 의견없음
 -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 평생교육국 교육지원정책과 김진영 (☎02-2133-9278)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시민” 을 “서울시민(이하 “시민” 이라 한다)” 으로 한다.

제4조 중 “ “시장” ” 을 “ “시장” 이라 한다” 로, “서울시민” 을 “시민” 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0호 및 제11호의 경우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더라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학교밖청소년” 을 “학교 밖 청소년” 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가족돌봄청년
9.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의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청소년
1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제9호의 건강장애학생 등 학습에 제약이 있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4항에 따라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듣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학교의 학생
11.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아동복지법」 제52조의 시설에 입소한 아동

제10조제2항 중 “경품을 지급” 을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참여자의 참여실적·횟수 및 기여도 등을 고려한 활동비 또는 마일리지
2. 추첨, 심사를 통한 기념품이나 상품권, 학습 도구 등 경품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2. (생략) 3. "온라인 평생교육시스템"이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다양한 학습자원 및 지식정보 등을 통합·연계하여 <u>시민</u> 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서비스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5. (생략)	제2조(정의) ----- -----, 1. 2. (현행과 같음) 3. ----- ----- ----- ----- <u>서울시민</u> (이하 "시민"이라 한다)----- -----, 4. 5. (현행과 같음)
제4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 <u>시장</u> ")은 온라인 평생교육에 관하여 <u>서울시민</u> 의 공정하고 균등한 온라인 평생교육 및 취약계층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 --- " <u>시장</u> "이라 한다----- ----- <u>시민</u> ----- ----- ----- -----,
제7조(교육지원 사업) ① 제5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6세 이상 24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단서 신설>	제7조(교육지원 사업) ① ----- ----- ----- ----- ----- ----- ----- -----, 다만, 제10호 및 제11호의 경우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

현행	개정안
1. ~ 3. (생략)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u>학교 밖 청소년</u> 5. ~ 7. (생략) <u><신설></u> <u><신설></u> <u><신설></u> <u><신설></u>	<u>록을 두지 않더라도 지원 대상으로 한다.</u> 1. ~ 3. (현행과 같음) 4. ----- <u>학교 밖 청소년</u> 5. ~ 7. (현행과 같음) 8.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u>가족돌봄청년</u> 9.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의 시설에서 <u>보호받고 있는 아동·청소년</u> 1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제9호의 <u>건강장애학생 등 학습에 제약이 있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4항에 따라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듣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학교의 학생</u> 11.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u>「아동복지법」 제52조의 시</u>

현행	개정안
8. (생략) ②·③ (생략) 제10조(이용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 ① (생략)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홍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민참여 행사 등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참여자에게 시상하거나 경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신설>	<u>설에 입소한 아동</u> 12. (현행 제8호와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이용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u>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u>-----. 1. <u>참여자의 참여실적·횟수 및 기여도 등을 고려한 활동비 또는 마일리지</u> 2. <u>추첨, 심사를 통한 기념품이나 상품권, 학습 도구 등 경품</u>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취약계층 교육지원 사업) 제1항 제8호 내지 제11호를 신설
-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이용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 제2항 제1호 및 제2호를 신설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대상

-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가족돌봄청년을 교육지원 대상으로 추가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호의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청소년을 교육지원 대상으로 추가
- 건강장애학생 등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학생을 교육지원 대상으로 추가
-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아동복지법 제52조의 시설에 입소한 아동·청소년을 교육지원 대상으로 추가
- 마일리지 지급 대상은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평생교육시스템 가입자(제10조제2항제1호)

나. 제7조 제1항 제8호 내지 제11호 관련 전제

- 대상별 인원은 매년 변동되므로, 24년 기준 대상 인원인 1050명의 근사치인 1,000명을 대상 인원 증가분으로 산출
- 증가한 대상 인원에게 제공하는 온라인 콘텐츠, 멘토링 서비스 및 교재 제공 비용을 산출
 - 대상인원 증가분에 2024년~2028년 예상 가입률, 콘텐츠 실정산률, 멘토링 신청률 및 교재 신청률 반영하여 콘텐츠 정산인원, 멘토링 신청 인원 및 교재 신청인원을 산출
 - ※ 연도별 예상 가입률은 2024년 15%, 2025년 18%, 2026년 22%, 2027년 26%, 2028년 30%로 전제
 - ※ 콘텐츠 실정산률(60%), 멘토링 신청률(60%), 교재 신청률(50%)은 2024년 서울런 이용 현황을 반영하였으며 추계기간 동안 매년 동일 비율 전제
- 온라인 콘텐츠 제공 비용은 월별 정산인원에 따라 정산, 콘텐츠 단가는 교육업체별로 상이하므로 평균값 적용
- 멘토링 제공 비용은 온라인(18,940원) 및 오프라인 멘토링(33,000원) 비용의 평균인 25,970원으로 산정
- 비용은 2024년 10월부터 발생하며 물가상승률 미반영

다.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관련 전제

- 마일리지제 참여대상은 24년 목표가입인원 3만명에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제1항제8호 내지 제11호의 인원을 더해서 산정함
- 마일리지 지급률은 가입인원의 최대 15%
- 월별 마일리지 최대 지급 금액(한도)은 10,000원(일만원)으로, 평균 지급 금액은 4,000원으로 설계
- 비용은 2024년 10월부터 발생하며 물가상승률 미반영

라. 추계기간 : 5년(2024년~2028년)

마. 방법

- 낱맛 무지개교실 이용 현황(건강장애학생 등 학습에 제약이 있어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해 수업을 듣는 학생), 서울특별시의 관외 아동보호시설 이용 현황,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이용 현황 건강장애학생, 가족돌봄청년 통계, 서울런 이용 현황 등을 근거로 추계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 비용 ≍ 2,221,101천원 (연평균 444,22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지출	교육지원 지원대상 확대 (안 제7조제1항제8호내지11호)	57,286	232,244	283,853	335,463	387,073	1,295,919
	마일리지 지급제 신설 (안 제10조제2항제1호및제2호)	54,270	217,296	217,584	217,872	218,160	925,182
	소계(a)	111,556	449,540	501,437	553,335	605,233	2,221,101
수입	-	-	-	-	-	-	-
	소계(b)	-	-	-	-	-	-
□ 총 비용(a-b)		111,556	449,540	501,437	553,335	605,233	2,221,101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	-	-	-	-	-
시비	지방세수입	111,556	449,540	501,437	553,335	605,233	2,221,101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등	-	-	-	-	-	-
민간		-	-	-	-	-	-
기타		-	-	-	-	-	-
합계		111,556	449,540	501,437	553,335	605,233	2,221,101

5. 덧붙이는 의견 : 해당없음

6. 작성자 : 평생교육국 교육지원정책과 김진영 (☎02-2133-9278)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취약계층 교육지원 사업) 제1항 제8호 내지 제11호를 신설함에 따라 사업 추진 시 비용 발생
-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이용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 제2항 제1호 및 제2호 신설함에 따라 사업 추진 시 비용 발생

2. 세부추계내역

- 2024년 : 111,556,220원

가. 온라인 콘텐츠 제공 비용 = 17,369,100원

$$\begin{aligned}
 & - \text{산출방식} = \text{콘텐츠 정산인원(명)} \times \text{콘텐츠 단가(원)} \times \text{기간(개월)} \\
 & \quad = 90 \times 64,330 \times 3 \\
 & \quad = 17,369,100\text{원}
 \end{aligned}$$

나. 멘토링 제공 비용 = 28,047,600원

$$\begin{aligned}
 & - \text{산출방식} = \text{멘토링 신청인원(명)} \times \text{멘토링 단가(원)} \times \text{기간(개월)} \times \text{개월 당 횟수(회)} \\
 & \quad = 90 \times 25,970 \times 3 \times 4 \\
 & \quad = 28,047,600\text{원}
 \end{aligned}$$

다. 교재 제공 비용 = 11,869,500원

$$\begin{aligned}
 & - \text{산출방식} = \text{교재 신청인원(명)} \times \text{교재 단가(원)} \\
 & \quad = 75 \times 158,260 \\
 & \quad = 11,869,500\text{원}
 \end{aligned}$$

라. 마일리지 경품 제공 비용 = 57,286,200원

$$\begin{aligned}
 - \text{산출방식} &= \text{가입인원(명)} \times \text{지급률(\%)} \times \text{월평균 지급 단가(원)} \times \text{기간(개월)} \\
 &= 30,150 \times 15 \times 4,000 \times 3 \\
 &= 57,286,200\text{원}
 \end{aligned}$$

○ 2025년 : 449,539,560원

가. 온라인 콘텐츠 제공 비용 = 83,371,680원

$$\begin{aligned}
 - \text{산출방식} &= \text{콘텐츠 정산인원(명)} \times \text{콘텐츠 단가(원)} \times \text{기간(개월)} \\
 &= 108 \times 64,330 \times 12 \\
 &= 83,371,680\text{원}
 \end{aligned}$$

나. 멘토링 제공 비용 = 134,628,480원

$$\begin{aligned}
 - \text{산출방식} &= \text{멘토링 신청인원(명)} \times \text{멘토링 단가(원)} \times \text{기간(개월)} \times \text{개월 당 횟수(회)} \\
 &= 108 \times 25,970 \times 12 \times 4 \\
 &= 134,628,480\text{원}
 \end{aligned}$$

다. 교재 제공 비용 = 14,243,400원

$$\begin{aligned}
 - \text{산출방식} &= \text{교재 신청인원(명)} \times \text{교재 단가(원)} \\
 &= 90 \times 158,260 \\
 &= 14,243,400\text{원}
 \end{aligned}$$

라. 마일리지 경품 제공 비용 = 217,296,000원

$$\begin{aligned}
 - \text{산출방식} &= \text{가입인원(명)} \times \text{지급률(\%)} \times \text{월평균 지급 단가(원)} \times \text{기간(개월)} \\
 &= 30,180 \times 15 \times 4,000 \times 12 \\
 &= 217,296,000\text{원}
 \end{aligned}$$

○ 2026년 : 501,437,240원

가. 온라인 콘텐츠 제공 비용 = 101,898,720원

$$\begin{aligned}
 - \text{산출방식} &= \text{콘텐츠 정산인원(명)} \times \text{콘텐츠 단가(원)} \times \text{기간(개월)} \\
 &= 132 \times 64,330 \times 12 \\
 &= 101,898,720\text{원}
 \end{aligned}$$

나. 멘토링 제공 비용 = 164,545,920원

$$\begin{aligned}
 - \text{산출방식} &= \text{멘토링 신청인원(명)} \times \text{멘토링 단가(원)} \times \text{기간(개월)} \times \text{개월 당 횟수(회)} \\
 &= 132 \times 25,970 \times 12 \times 4 \\
 &= 164,545,920\text{원}
 \end{aligned}$$

다. 교재 제공 비용 = 17,408,600원

$$\begin{aligned}
 - \text{산출방식} &= \text{교재 신청인원(명)} \times \text{교재 단가(원)} \\
 &= 110 \times 158,260 \\
 &= 17,408,600\text{원}
 \end{aligned}$$

라. 마일리지 경품 제공 비용 = 217,584,000원

$$\begin{aligned}
 - \text{산출방식} &= \text{가입인원(명)} \times \text{지급률(\%)} \times \text{월평균 지급 단가(원)} \times \text{기간(개월)} \\
 &= 30,220 \times 15 \times 4,000 \times 12
 \end{aligned}$$

$$= 217,584,000\text{원}$$

○ 2027년 : 553,334,920원

가. 온라인 콘텐츠 제공 비용 = 120,425,760원

$$\begin{aligned} \text{－ 산출방식} &= \text{콘텐츠 정산인원(명)} \times \text{콘텐츠 단가(원)} \times \text{기간(개월)} \\ &= 156 \times 64,330 \times 12 \\ &= 120,425,760\text{원} \end{aligned}$$

나. 멘토링 제공 비용 = 194,463,360원

$$\begin{aligned} \text{－ 산출방식} &= \text{멘토링 신청인원(명)} \times \text{멘토링 단가(원)} \times \text{기간(개월)} \times \text{개월 당 횟수(회)} \\ &= 156 \times 25,970 \times 12 \times 4 \\ &= 194,463,360\text{원} \end{aligned}$$

다. 교재 제공 비용 = 20,573,800원

$$\begin{aligned} \text{－ 산출방식} &= \text{교재 신청인원(명)} \times \text{교재 단가(원)} \\ &= 130 \times 158,260 \\ &= 20,573,800\text{원} \end{aligned}$$

라. 마일리지 경품 제공 비용 = 217,872,000원

$$\begin{aligned} \text{－ 산출방식} &= \text{가입인원(명)} \times \text{지급률(\%)} \times \text{월평균 지급 단가(원)} \times \text{기간(개월)} \\ &= 30,260 \times 15 \times 4,000 \times 12 \\ &= 217,872,000\text{원} \end{aligned}$$

○ 2028년 : 605,232,600원

가. 온라인 콘텐츠 제공 비용 = 138,952,800원

$$\begin{aligned} \text{－ 산출방식} &= \text{콘텐츠 정산인원(명)} \times \text{콘텐츠 단가(원)} \times \text{기간(개월)} \\ &= 180 \times 64,330 \times 12 \\ &= 138,952,800\text{원} \end{aligned}$$

나. 멘토링 제공 비용 = 224,380,800원

$$\begin{aligned} \text{－ 산출방식} &= \text{멘토링 신청인원(명)} \times \text{멘토링 단가(원)} \times \text{기간(개월)} \times \text{개월 당 횟수(회)} \\ &= 180 \times 25,970 \times 12 \times 4 \\ &= 224,380,800\text{원} \end{aligned}$$

다. 교재 제공 비용 = 23,739,000원

$$\begin{aligned} \text{－ 산출방식} &= \text{교재 신청인원(명)} \times \text{교재 단가(원)} \\ &= 150 \times 158,260 \\ &= 23,739,000\text{원} \end{aligned}$$

라. 마일리지 경품 제공 비용 = 218,160,000원

$$\begin{aligned} \text{－ 산출방식} &= \text{가입인원(명)} \times \text{지급률(\%)} \times \text{월평균 지급 단가(원)} \times \text{기간(개월)} \\ &= 30,300 \times 15 \times 4,000 \times 12 \\ &= 218,160,000\text{원} \end{aligned}$$

온라인 콘텐츠 및 멘토링 서비스 제공 비용 관련 산출 근거표

① 대상 인원 증가분 (약 1,000명)

(단위 : 명, 기준 연도: 2024년)

구 분	건강장애 학생 및 요보호학생	관외 아동보호시설 아동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아동	가족돌봄청년	합계
인원(명)	400	273	100	277	1,050

② <연도별 예상 가입인원>

(단위 : 명, %)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대상인원 증가분	1,000명				
연도별 예상 가입률	15%	18%	22%	26%	30%
가입인원(명)	150	180	220	260	300

※ 연도별 예상 가입인원 = 대상인원 증가분 × 연도별 가입률

③ <연도별 콘텐츠 정산인원>

(단위 : 명, %)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가입인원(명)	150	180	220	260	300
콘텐츠 실정산률	60%				
콘텐츠 정산인원(명)	90	108	132	156	180

※ 연도별 콘텐츠 정산인원 = 가입인원 × 콘텐츠 실정산률

※ 콘텐츠 실정산률은 2024년 서울런 이용 현황 반영

④ <연도별 멘토링 신청인원>

(단위 : 명, %)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가입인원(명)	150	180	220	260	300
멘토링 신청률	60%				
멘토링 신청인원(명)	90	108	132	156	180

※ 연도별 멘토링 신청인원 = 가입인원 × 멘토링 신청률

※ 멘토링 신청률은 2024년 서울런 이용 현황 반영

⑤ <연도별 교재 신청인원>

(단위 : 명, %)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가입인원(명)	150	180	220	260	300
교재 신청률	50%				
교재 신청인원(명)	75	90	110	130	150

※ 연도별 교재 신청인원 = 가입인원 × 교재 신청률

※ 교재 신청률은 2024년 서울런 이용 현황 반영

⑥ <연도별 마일리지 지급 인원>

(단위 : 명, %)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가입인원(명)	30,150	30,180	30,220	30,260	30,300
마일리지 지급률(%)	15%				
마일리지 지급인원(명)	4,523	4,527	4,533	4,539	4,545

※ 연도별 마일리지 지급인원 = 가입인원 × 마일리지 지급률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4년 8월 12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을 더욱 내실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환경영향평가 예외 대상사업에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추가함(안 제4조제2항)
-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정비사업 통합심의가 의무화됨에 따라, 조례의 단서 조항 삭제함(안 제14조제2항)
-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통합심의의 경우 평가서 검토의견 통보기한 명시에서 제외함(안 제15조제1항)
- 라.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환경보전방안을 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18조제3항)
- 마. 재난관리 또는 안전관리를 위한 공사는 의견수렴 절차 전 사전공사 시행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21조제2항)
- 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자문 기능을 추가하고, 심의·자문 사항에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검토’를 추가함(안 제22조제1항)
- 사.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함(안 제22조제7항, 안 제24조)
- 아. 평가항목 및 심의기준이 고시된 사업은 환경영향평가서작성계획서 제출을 “제외한다”에서 “제외할 수 있다”로 변경하여 사업자가 작성계획서 제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1항)
- 자.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절차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27조제1항)
- 차. 협의절차 면제대상 사업의 경우에도 승인기관장등이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명시함(안 제28조제1항)
- 카. 자문 활동을 한 위원에게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있음(미반영)
 - (가) 개선의견: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시 성별, 연령 등 다양한 시민으로 구성토록 개정
 - (나) 조치내용: 미반영.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분야별 전문가로 위촉 필요
-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의견없음

라. 기타

- (1) 입법예고(2024. 5. 30. ~ 6. 19.) 결과: 의견있음(반영)
 - (가) 제출의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통합심의 대상일 경우 조례상 평가서 검토 기간 수정 필요
 - (나) 조치내용: 반영, 제15조제1항 검토기간 후단에 단서 신설
- (2) 신·구조문 대비표: 불임

※ 작성자 :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건물과 양은영 (☎2133-3527)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자연재해 대책법」 제46조의 재해복구계획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9조의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긴급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과 협의한 사업.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환경보전방안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중 “대상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려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과 평가당시”를 “대상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평가 당시”로, “사업의 환경보전 목표”를 “환경보전목표”로, “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의견수렴 등)”을 “(의견 수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규칙”을 “규칙”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초안과 관계행정기관”을 “초안(관계행정기관)”으로, “요약서를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요약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대상사업의 지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2 이상의 구”를 “둘 이상의 자치구(이하 “구”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받은”을 “송부받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의견수렴”을 “의견 수렴”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같은 법 제14조”를 “법 제14조”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의견수렴절차”를 “의견 수렴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최소신청인원”을 “최소 신청인원”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서류사본”을 “서류 사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영향평가서등”을 “평가서등”으로, “환경영향평가업자”를 “평가업자”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기간동안”을 “기간 동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단서 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6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6조”로, “재대행하도록 하는”을 “재대행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5

호 중 “평가서” 를 “평가서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거짓·부실 작성의 판단 기준은 시행규칙 제23조를 준용한다.

제14조제1항 전단 중 “보완을 사업자에게 요구” 를 “사업자에게 보완을 요구”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이내” 를 “이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 2에 따른 통합심의는 제외)”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평가서 등” 을 “평가서등” 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자 및 승인기관장등” 을 “승인기관장등” 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7조” 를 “이 조”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자 및 승인기관장등” 을 “승인기관장등” 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단서 중 “대하여는” 을 “대해서는”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의” 를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보전방안을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9조제4항 중 “사후환경영향조사대상” 을 “사후환경영향조사 대상” 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변경협의의 절차를” 을 “변경협의 절차를” 로, “변경협의의 사유” 를 “변경협의 사유” 로, “변경협의의 절차가” 를 “변경협의 절차가”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변경협의의” 를 “변경협의” 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을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협의 절차를 생략한 경우를 포함한다)” 을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를 “통보하여야 한다(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협의 절차를 생략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공사 중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공사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기 전에 사전공사의 범위 등을 미리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시행할 수 있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하기” 를 “심의·자문 하기” 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되고” 를 “말고” 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남은기간으로” 를 “남은 임기로” 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회의 구성원” 을 “규칙으로 정하는 구성원” 으로, “개의를하고” 를 “개의를하고,” 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구성·운영 및 심의방법” 을 “구성·운영, 심의방법 및” 으로 한다.

6. 제20조제9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의 검토

⑦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

례」 제9조에 따른다.

제23조제3항 후단 중 “위원 3분” 을 “소위원회 위원 3분” 으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위원의 해촉)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른다.

제25조제1항 중 “제외한다)” 를 “제외할 수 있다)” 로 한다.

제26조제3항 및 제4항 중 “의견수렴” 을 각각 “의견 수렴” 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대상사업” 을 “협의 또는 재협의 대상사업” 으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협의절차 면제대상 사업자의 의무)” 를 “(협의절차 면제대상 사업자의 의무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의견수렴” 을 “의견 수렴”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승인기관장등은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계획등을 확정할 때에는 평가서 초안에 대해 시장과 협의한 내용의 반영 여부 및 반영내용과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를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를 “사람에게” 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22조에 따라 평가서의 심의·자문 등의 활동에 참여한 위원

제32조의 제목 “(평가서의 공개)” 를 “(평가서등의 공개)”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평가서 등” 을 각각 “평가서등” 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 에너지개발의 평가서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란 중 “제62조” 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4호 개정규정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제2조(정의) ----- ----- 뜻은 -----. 1. ~ 4. (현행과 같음)
제4조(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u>대하여</u> 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1. ~ 3. (생략) <u><신설></u>	제4조(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대해서는</u> ----- -----. 1. ~ 3. (현행과 같음)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의 재해복구계획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9조의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긴급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과 협의한 사업.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환경보전방안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제6조(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등) ① 사업자는 <u>대상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려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과 평가당시의 과학적 지식 및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환경보전 목표를 설정한 후 이를 토대로 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u> ② (생략)	제6조(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등) ① ----- <u>대상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평가 당시</u> ----- ----- ----- <u>환경보전목표</u> ----- ----- <u>환경영향평가</u> ----- -----.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의견수렴 등) ① 사업자는 <u>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안의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이를 평가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 요구가 있으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u>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평가서 <u>초안과 관계행정기관</u>	제8조(의견수렴 등) ① ----- <u>규칙</u> ----- ----- ----- ----- ----- -----. ----- -----. ② ----- ----- ----- ----- <u>초안(관계행정기관</u> -----

현행	개정안
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 문서 양식에 따라 작성한 평가서 초안의 <u>요약서를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이 경우 사업지역이 <u>2 이상의 구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때에는</u> 대상사업의 범위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서 초안을 받은 구청장(이하 “주관구청장”이라 한다)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 주민이 공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사업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관할 구청장 및 시장에게 송부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에 <u>대하여는</u> 승인기관의 의견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평가서 초안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주관구청장에게, 주민은 주관구청장 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	----- ----- ----- <u>요약서를 포함한다.</u> <u>이하 이 조에서 같다</u>)을 대상사업의 지역-----. ----- <u>둘 이상의 자치구(이하 “구”라 한다)</u>----- ----- -----. ③ ----- ----- ----- ----- ----- -----. ----- -<u>대해서는</u> ----- -----. ④ ----- <u>송부받은</u> ----- ----- -----

현행	개정안
장에게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주민의 생활환경 및 재산상의 피해와 그 감소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u>의견수렴</u> 결과와 반영 여부를 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⑥ 사업자는 대상사업에 대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법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경우(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규칙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평가서 초안의 재작성 등) ① 사업자는 제8조의 <u>의견수렴</u> 절차를 거친 후 제15조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기 전까지 대상사업의 변경 등 규칙으로 정	----- ----- ----- ----- --. ⑤ ----- --- <u>의견 수렴</u> ----- ----- -----. ⑥ ----- ----- ----- ----- --- <u>법 제14조</u> ----- ----- ----- ----- ----- -----. 제9조(평가서 초안의 재작성 등) ① ----- <u>의견 수렴</u> <u>절차</u>----- ----- -----

현행	개정안
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평가서 초안을 다시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의견 재수렴 신청 기간, 절차, <u>최소신청인원</u>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평가업자에게 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시킬 경우에는 대상사업의 공사 등에 관한 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는 <u>서류사본</u>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발주청이 제1항에 따라 <u>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게 하려는 때에는 이에 참여하려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기술·경영능력 등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u> ④ (생략)	----- -----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u>최소 신청인원</u> -----. 제10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u>서류 사본</u>----- -----. ③ ----- ----- <u>평가서등</u>----- ----- ----- <u>평가업자</u>----- ----- -----. ④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12조(사업자와 평가업자 준수사항) ① 사업자와 평가업자는 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규칙이 정하는 <u>기간</u>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서등을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사업자와 평가업자 준수사항) ① ----- ----- ----- <u>기간</u> <u>동안</u> -----.
② 평가서등을 작성하는 사업자와 평가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평가업자가 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는 경우 자신이 대행하는 환경영향평가의 대행업무를 다른 자에게 재대행하지 아니할 것. 다만, 「 <u>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u> 」 제26조에서 정하는 요건 및 분야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의 평가항목을 조사·측정하는 업무로서 해당 업무를 발주한 자의 승인을 받아 <u>재대행하도록 하는</u> 경우는 제외한다.	4. ----- ----- ----- -----, ----- 「 <u>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u> 」 (이하 “ <u>시행규칙</u> ”이라 한다) 제26조 ----- ----- ----- <u>재대행하는</u> ----- -----.
5. <u>평가서</u> 협의절차 과정에서	5. <u>평가서등</u> -----

현행	개정안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은 건축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제15조(협의내용의 통보) ① 시장은 평가서의 검토가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제14조제1항에 따른 검토·보완 요청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협의내용”이라 한다)를 제13조제2항에 따라 평가서를 접수한 날부터 28일 이내에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으며, 규칙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협의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1. 2. (생략)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평가서 등을 보완하여 사업계획등에 반영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기관장등에게 그 협의내용을 통보할</u>	-----, <단서 삭제> ③·④ (현행과 같음) 제15조(협의내용의 통보) ① ----- ----- ----- ----- ----- 이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2에 따른 통합심의는 제외)----, ----- ----- ----- ----- -----, 1. 2. (현행과 같음) ② ----- ----- <u>평가서등</u>----- ----- -----

현행	개정안
수 있다.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재협의) ① <u>사업자 및 승인기관장등</u> 은 제15조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등을 변경하는 경우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7조(재협의) ① <u>승인기관장등</u>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제15조에 따른 협의내용에 반영된 사업·시설 규모의 30퍼센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 (누적된 변경으로 증가한 규모가 제15조에 따른 협의 및 제17조에 따른 재협의 내용에 반영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2. -----

	<u>이 조</u> -----

3. 4. (생략)	3.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u>사업자 및 승인기관장등</u>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② ----- <u>승인기관장등</u>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18조(변경협의) ① (생략)	제18조(변경협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에 대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u>대하여는</u>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 -----, ----- --- <u>대해서는</u> ----- ---
③ 승인기관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거나 검토할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u>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후단 신설></u>	③ ----- ----- ----- 이를 <u>시장에게 제출하여</u> -----. 이 경우 <u>승인기관의 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보전방안을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u>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사업자의 이행의무) ① ~ ③ (생략)	제19조(사업자의 이행의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사업자는 대상사업 착공 후에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영향에 따른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	④ ----- ----- ----- -----

현행	개정안
에 따라 <u>사후환경영향조사대상</u>의 평가항목별로 환경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장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⑥ (생략) 제21조(사전 공사시행의 금지) ① 사업자는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협의·재협의 또는 <u>변경협의의 절차를</u>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공사가 일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협의 또는 <u>변경협의의 사유</u>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협의 또는 <u>변경협의의 절차가</u> 끝나기 전을 말한다)에 대상사업의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협의를 거쳐 승인등을 받은 지역으로서 재협의를나 <u>변경협의의 대상에</u>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 <u>사후환경영향조사 대상</u>----- ----- ----- ----- ----- ---. ⑤·⑥ (현행과 같음) 제21조(사전 공사시행의 금지) ① ----- ----- <u>변경협의 절차를</u> ----- ----- ----- ----- <u>변경협의 사유</u>----- ----- <u>변경협의 절차가</u> ----- ----- -----. ----- ----- ----- ---. 1. ----- ----- ----- <u>변경</u> <u>협의</u>----- -----

현행	개정안
2. 착공을 준비하기 위한 현장 사무소 설치 공사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공사 등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사 ② 사업자는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사전에 공사를 시행하려면 제8조에 따른 평가서 초안에 대한 <u>의견수렴 절차를 거친(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협의 절차를 생략한 경우를 포함한다)</u> 후 사전공사의 근거, 내용 및 사전공사의 범위 등을 협의기관의 장에게 <u>통보하여야 한다.</u> <단서 신설> ③·④ (생략) 제22조(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2. ----- ----- ----- ----- <u>시행규칙 제15조제1항</u>----- ----- ② ----- ----- ----- -- <u>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u> --- ----- ----- ----- --- <u>통보하여야 한다(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협의 절차를 생략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u> 다만, 제1항제2호의 공사 중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공사는 <u>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기 전에 사전공사의 범위 등을 미리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시행할 수 있다.</u> ③·④ (현행과 같음) 제22조(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현행	개정안
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심의하기</u> 위하여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 5. (생략) <신설> 6. (생략) ② (생략)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후환경본부장이 <u>되고</u>,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생략) ⑤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u>남은기간으로</u>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u>회의구성원</u> 과반수의 참석으로 <u>개의하고</u>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위원회) ① ----- ----- <u>심의·자문하기</u> ----- ----- ----- -----. 1. ~ 5. (현행과 같음) 6. 제20조제9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의 검토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u>말고</u> ----- -----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u>남은 임기로</u> -----. ⑥ ----- <u>규칙으로 정하는 구성원</u> ----- <u>개의하고</u>, ----- ----- -----. ⑦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현행	개정안
<u>심의대상 안전의 심의·의결에</u> <u>서 제척되며, 위원이 각 호의 어</u> <u>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u> <u>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u> <u>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u> <u>한다.</u> 1. <u>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안전</u> <u>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u> <u>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u> <u>중에 있는 경우</u> 2. <u>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안전</u> <u>과 관련하여 직접·간접으로</u> <u>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u> <u>경우</u> ⑧ <u>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u> <u>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u> <u>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위원의</u> <u>회피 신청에 따라 해당 위원의</u> <u>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u> ⑨ <u>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u> <u>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u> <u>규칙으로 정한다.</u> 제23조(소위원회) ①·② (생략) ③ <u>위원회는 심의할 사항을 사</u>	<u>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u> <u>례」 제9조에 따른다.</u> <삭제> ⑨ ----- <u>구성·운영, 심의방</u> <u>법 및 -----</u> <u>-----.</u> 제23조(소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현행	개정안
전에 정하여 소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 회의는 <u>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u>	----- -----, -- <u>소위원회 위원 3분</u> ----- ----- ----- -----, -----
제2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제22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u>	제24조(위원의 해촉) <u>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른다.</u>
1. <u>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u>	
2. <u>품위손상·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u>	
3. <u>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u>	
제25조(환경영향평가서작성계획서 제출) ① 사업자는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사업(별표 1의 대상사업별 평가항목 및 심의기준이 고시된 사업은 <u>제외한다</u>)의	제25조(환경영향평가서작성계획서 제출) ① ----- ----- ----- ----- <u>제외할 수 있</u>

현행	개정안
평가서 초안을 작성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서작성계획서(이하 “작성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관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26조(환경영향평가서작성계획서 검토 등) ①·② (생략) ③ 주관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와 제25조제2항에 따른 <u>의견수렴</u>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된 검토결과와 <u>의견수렴</u> 결과를 제8조제2항의 평가서 초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7조(협의 절차 등에 관한 특례) ① 시장은 대상사업 중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u>대상사업</u>의 규모가 별표 1에	<u>다</u>)----- ----- -----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6조(환경영향평가서작성계획서 검토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u>의견 수렴</u> ----- -----. ④ ----- ----- <u>의견 수렴</u> ----- ----- -----. 제27조(협의 절차 등에 관한 특례) ① ----- ----- ----- ----- -----. -----. 1. <u>협의 또는 재협의 대상사업</u>-

현행	개정안
따른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200퍼센트 이하인 사업으로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사업 2.·3. (생략) ②·③ (생략) 제28조(협의절차 면제대상 사업자의 의무) ① 사업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면제 대상사업의 경우에도 제8조의 <u>의견수렴</u>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서를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u><신설></u> ② (생략) 제31조(수당 등의 지급) 시장은	----- ----- ----- ----- 2.·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28조(협의절차 면제대상 사업자의 의무 등) ① ----- ----- ----- ----- <u>의견수렴</u> ----- ----- ----- -----. ② <u>승인기관장등은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계획등을 확정할 때에는 평가서 초안에 대해 시장과 협의한 내용의 반영 여부 및 반영내용과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를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31조(수당 등의 지급) -----

현행	개정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생략) 2. 제22조에 따라 평가서의 심의활동에 참여한 위원(다만,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생략) 제32조(평가서의 공개) ① 시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 외에는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주민 등이 <u>평가서</u>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u>평가서</u>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	----- <u>사람에게</u> ----- ----- ----- ----- ----- -----. 1. (현행과 같음) 2. 제22조에 따라 평가서의 심의·자문 등의 활동에 참여한 위원 3. (현행과 같음) 제32조(평가서등의 공개) ① ----- ----- ----- ----- ----- <u>평가서등</u> ----- -----. ② ----- ----- ----- <u>평가서등</u> ----- -----

현행	개정안												
니하도록 시장에게 요청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생략) 2. <u>평가서 등에</u> 해당사업의 특별한 영업비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③ (생략) [별표 1] <u>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와 평가서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u> (제4조 및 제13조 관련)	----- ----- -----. 1. (현행과 같음) 2. <u>평가서등</u>----- ----- ----- ③ (현행과 같음) [별표 1] <u>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와 평가서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u> (제4조 및 제13조 관련)												
<table><tr><th>구분</th><th>대상사업의 범위</th><th>평가서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th></tr><tr><td>3. 에너지 개발</td><td>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다음에 해당하는 설비의 설치사업 1) 345kV 이상의 지상송전선로로서 선로길이(공사계획에 지중화구간이 포함된 경우 그 길이를 포함한다)가 5km 이상 10km미만인 것</td><td>○ 「전기사업법」 제61조 또는 제62조에 따른 공사계획인가 또는 신고 전</td></tr></table>	구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	3. 에너지 개발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다음에 해당하는 설비의 설치사업 1) 345kV 이상의 지상송전선로로서 선로길이(공사계획에 지중화구간이 포함된 경우 그 길이를 포함한다)가 5km 이상 10km미만인 것	○ 「전기사업법」 제61조 또는 제62조에 따른 공사계획인가 또는 신고 전	<table><tr><th>구분</th><th>대상사업의 범위</th><th>평가서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th></tr><tr><td>3. 에너지 개발</td><td>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다음에 해당하는 설비의 설치사업 1) 345kV 이상의 지상송전선로로서 선로길이(공사계획에 지중화구간이 포함된 경우 그 길이를 포함한다)가 5km 이상 10km미만인 것</td><td>○ 「전기사업법」 제61조 또는 「<u>전기안전관리법</u>」 제8조에 따른 공사계획인가 또는 신고 전</td></tr></table>	구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	3. 에너지 개발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다음에 해당하는 설비의 설치사업 1) 345kV 이상의 지상송전선로로서 선로길이(공사계획에 지중화구간이 포함된 경우 그 길이를 포함한다)가 5km 이상 10km미만인 것	○ 「전기사업법」 제61조 또는 「 <u>전기안전관리법</u> 」 제8조에 따른 공사계획인가 또는 신고 전
구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											
3. 에너지 개발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다음에 해당하는 설비의 설치사업 1) 345kV 이상의 지상송전선로로서 선로길이(공사계획에 지중화구간이 포함된 경우 그 길이를 포함한다)가 5km 이상 10km미만인 것	○ 「전기사업법」 제61조 또는 제62조에 따른 공사계획인가 또는 신고 전											
구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											
3. 에너지 개발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다음에 해당하는 설비의 설치사업 1) 345kV 이상의 지상송전선로로서 선로길이(공사계획에 지중화구간이 포함된 경우 그 길이를 포함한다)가 5km 이상 10km미만인 것	○ 「전기사업법」 제61조 또는 「 <u>전기안전관리법</u> 」 제8조에 따른 공사계획인가 또는 신고 전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 반영,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관련 규정 및 기타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개정안으로, 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 없음

4. 작성자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건물과, 환경7급 양은영(02-2133-3527)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4년 8월 12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가.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애인 인권증진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장애인복지위원회’와 설치 목적 및 기능이 유사함
 나.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의 기능을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등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의 기능을 「서울특별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 나.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관련 규정(구성 및 운영, 위원 임기 및 해촉, 회의 운영 등) 삭제(안 제12조제3항~제11항)
- 다.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에서 하는 보상금 지급에 관한 심의를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하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 라. 개정 조례 시행일을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위원의 임기만료일 이후(2024. 11. 9.)로 함(안 부칙 제1조)
- 마. ‘장애인복지위원회’심의사항에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을, 위촉 위원에 장애인 차별과 인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추가함(안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제13조
-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 (1) 입법예고(2024. 6. 7. ~ 6. 27.) 결과: 의견없음
- (2) 신·구조문 대비표: 불임

※ 작성자 : 복지실 장애인복지과 심현희 (☎2133-7362)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 각 호와”를 “뜻은 다음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장애’라 함은”을 ““장애”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장애인’이라 함은”을 ““장애인”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장애인 차별금지’라 함은”을 ““장애인 차별금지”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장애인 인권증진’이라 함은”을 ““장애인 인권증진”이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홈페이지”를 “누리집”으로 한다.

제10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 중 “기관”을 각각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관장”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으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과 제2항 및 제3항의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관”을 각각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한다.

제10조의3제1항 전단 중 “기관”과 같은 조 제2항 중 “기관”을 각각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한다.

제10조의4 전단 중 “기관”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심의)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장애인복지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1.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인권증진의 정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 인권증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제2항 중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를 “장애인복지위원회”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

제3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장애인 문제 및 장애인 차별과 인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u>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u>	제2조(정의) ----- ----- <u>뜻은 다음과</u> ----- -----.
1. <u>‘장애’라 함은</u>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1. <u>“장애”란</u> ----- ----- ----- -----.
2. <u>‘장애인’이라 함은</u>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과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2. <u>“장애인”이란</u> ----- ----- ----- ----- ----- ----- -----.
3. <u>‘장애인 차별금지’라 함은</u>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	3. <u>“장애인 차별금지”란</u> ----- ----- ----- -----

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4. ‘장애인 인권증진’이라 함은 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5. · 6. (생 략)

제9조(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홍보) ① (생 략)

②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별도의 배너를 시 홈페이지에 개설·운영해야 한다.

제10조(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운영) ① 시장은 장애인 인권증진 및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기관에는 기관장과 업무 수

-----.

4. “장애인 인권증진”이란 -----

-----.

5. · 6. (현행과 같음)

제9조(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홍보) ① (현행과 같음)

② -----

-- 누리집-----
-----.

제10조(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운영) ① -----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② 장애인권익옹호기관 -----

행에 필요한 인력을 둔다.

③ 기관장은 상근으로 한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생략)

제10조의2(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기능) ① 기관은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4. (생략)

②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정책 관련 부서와 공동으로 해당 사항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2. (생략)

③ 기관은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하 “피해 장애인”이라 한다)을 신속히 발견·보호·치료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6. (생략)

제10조의3(운영 위탁) ① 시장은

-----.

③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

④ -----장애인권익옹호기관-----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기능) ① 장애인권익옹호기관-

-----.

1. ~ 4. (현행과 같음)

② 장애인권익옹호기관-----

-----.

1.·2. (현행과 같음)

③ 장애인권익옹호기관-----

-----.

1. ~ 6. (현행과 같음)

제10조의3(운영 위탁) ① ----

기관의 운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서 기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의4(관계전문가 등의 조사 참여)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신청인, 시민단체 임직원, 관계전문가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에 참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① 장애인인권증진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

-----,

-----.

②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

제10조의4(관계전문가 등의 조사 참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

-----,
----- 사람-----
-----.

제12조(심의)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장애인복지위원회”라 한다)에서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한다.

1.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인권증진의 정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 인권증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장애인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복지실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장애인복지 분야의 대학교수

3. 장애인복지기관을 대표하는 자

4. 장애인인권단체 대표

심의한다.

1.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인권증진의 정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 인권증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5. 법조인

6. 그 밖에 장애인 차별과 인권
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
한 자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
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 정기회의는 매년 1월
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
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⑧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
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
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자
주 불참하거나 위원으로서 품

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
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
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⑩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
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⑪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세부적
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3조(보상금 지급 등) ① (생
략)

② 보상금의 지급 여부는 장애
인인권증진위원회에서 심의하
고, 보상금의 지급절차, 금액,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생략)

제13조(보상금 지급 등) ① (현행
과 같음)

② ----- 장애인
복지위원회-----

-----.

③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안은 우리시 조례 내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등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의 기능을 「서울특별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장애인 복지지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으로, 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없음

4. 작성자

복지실 장애인복지과 심현희(☎2133-7362)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4년 8월 12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식품위생법」 규정을 반영하여 기금의 용도 및 용자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 식품진흥기금의 용도 및 용자대상에 관한 규정에서 “모범음식점 육성”에 관한 부분 삭제(안 제2조, 제4조제1호, 제11조제1항제1호, 안 제13조)

나. 기금의 관리·운용 규정 정비(안 제5조)

다. 기금심의위원회 관련 규정 정비(안 제6조, 제6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지방회계법」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있음(반영)

※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2024. 5. 23. ~ 6. 12.) 결과: 의견 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장시호 (☎2133-4707)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3호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위한 용자사업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을 “위한” 으로 한다.

제5조제3항과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시민건강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식품정책과장
3.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사무관

④ 기금운용관 및 분임기금운용관에게는 「지방회계법」의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을, 기금출납원에게는 같은 법의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6조제2항 중 “구성한다” 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관 부서 또는 직접 관련된 부서” 를 “소관부서” 로, “되고” 를 “맡고,” 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한하며” 를 “하며” 로, 같은 항 제3호 중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을 “의원” 으로 한다.

④ 기금 업무 소관부서의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2(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 등)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 등과 관련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및 제9조에 따른다.

제8조의2 중 “소관부서 또는 직접 관련된 부서” 를 “소관부서” 로, “된다” 를 “맡는다” 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자나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 를 “자” 로 한다.

제13조 중 “업종별·용도별 용자한도액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를 “업종별·용도별”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모범음식점”이란 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3. (생략) 4.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이란 모범음식점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드는 자금을 말한다. 5. (생략)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등 개선을 위한 용자사업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용자사업 2. ~ 9. (생략)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삭제> 2. (현행 제3호와 같음) <삭제> 3. (현행 제5호와 같음) 제4조(기금의 용도) ----- -----. 1. ----- -- 위한 ----- ----- 2. ~ 9. (현행과 같음)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② 삭제 ③ <u>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기금 업무 소관부서 또는 직접 관련된 부서의 실·본부·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 업무 소관부서 또는 직접 관련된 부서의 과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기금 업무 소관부서 또는 직접 관련된 부서 담당 팀장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다만, 기금관리 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u> ④ 「지방회계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과 분임기금출납원에게	③ <u>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u> 1. 기금운용관: 시민건강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식품정책과장 3.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 사무관 ④ <u>기금운용관 및 분임기금운용관에게는 「지방회계법」의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을, 기금출납원에게는 같은 법의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u>

현행	개정안
<u>각각 이를 준용한다.</u> ⑤ (생략) 제6조(기금심의위원회) ① (생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u>구성한다.</u> ③ 위원장은 기금 업무 <u>소관부서</u> 또는 <u>직접 관련된 부서</u>의 국장급 공무원이 <u>되고</u>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을 <u>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으로 위원장과 기금 업무 소관부서 또는 직접 관련된 부서의 과장 1명을 둔다.</u>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각각 3명 이내, 제3호의 위원은 2명 이내로 <u>한하며</u> 제4호의 위원은 3명으로 한다. 1. 2. (생략) 3. 서울특별시의회 <u>보건복지위원회 위원</u>	⑤ (현행과 같음) 제6조(기금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u> ③ ----- <u>소관부서</u>----- ----- <u>말고,</u> ----- -----. ④ 기금 업무 소관부서의 과장은 <u>당연직 위원</u>이 된다. ⑤ ----- -----, ----- ----- <u>하며</u> ----- -----. 1. 2. (현행과 같음) 3. ----- <u>의원</u>

현행	개정안
4. 5. (생략) ⑥ (생략) <u>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u> 1. <u>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u> 2. <u>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u> <u>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u> <u>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u>	4. 5.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u>제6조의2(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 등)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 등과 관련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및 제9조에 따른다.</u>

현행	개정안
<u>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u> 제8조의2(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 업무 <u>소관부서 또는 직접 관련된 부서</u>의 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용자대상) ① 기금의 용자 대상은 서울특별시 관내의 영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4조제1호에 따라 위생관리 시설등 개선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u>자나 모범음식점 육성자금</u>을 필요로 하는 자 2. 3. (생략) ② (생략) 제13조(용자한도) 시설개선자금의 용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80 이내로 하며, <u>업종별·용도별 용자한도액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용자한도액</u>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의2(간사) ----- ----- ----- <u>소관부서</u>----- ----- <u>말는다.</u> 제11조(용자대상) ① ----- ----- ----- -----, 1. ----- ----- -- <u>자</u> 2.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용자한도) ----- ----- ----- --- <u>업종별·용도별</u> ----- ----- -----.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융자 대상자 및 용도에 대한 규정 명확화,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관련 규정 정비, 서식 번호 및 내용 정비 등에 관한 개정안으로, 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없음

4. 작성자

서울특별시 식품정책과 장시호 (02-2133-4707)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4년 8월 12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의 존속기한 연장과 기금 관리 운용부서 정비를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연장함(안 제4조)

나. 기금의 관리·운용과 기금관리담당공무원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변경함(안 제7조 및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2024. 6. 7. ~ 6. 27.) 결과: 의견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 도시공간본부 도시계획과 안아영(☎ 2133- 8321)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 을 “2029년 12월 31일” 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사무중” 을 “사무 중” 으로, “포함)및” 을 “포함) 및” 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 을 “도시공간본부장” 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공공자산담당관” 을 “도시계획과장” 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획조정실” 을 “도시공간본부” 로 한다.

제8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중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한” 을 “관한 다음 각 호의” 로, “의거” 를 “따라” 로,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를 “둔다” 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조정실장” 을 “도시공간본부장” 으로, “공공자산담당관” 을 “도시계획과장” 으로, “자 중” 을 “사람 중” 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 를 “사람” 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예산부서 및 기반시설설치기금” 을 “기금”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를 “담당사무관이 맡는다” 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위촉직위원” 을 “위촉직 위원” 으로, “연임” 을 “한 차례만 연임” 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회의는” 을 “회의(이하 “회의” 라 한다)는”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6항) 중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를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로, “수당과” 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로 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 위원은 해촉,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및 제9조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2024년 7월 1일 시행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제7조제1항
과 제9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24년 7월 1일 이후 운영되는 위원회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u>2024년 12월 31일까지</u> 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 ----- <u>2029년 12월 31일</u> ----- -----, ----- ----- ----- -----.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u>사무중</u>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 ----- ----- -----. ----- <u>사무 중</u> ----- ----- <u>포함</u>) 및 ----- ----- ----- ----- ----- ----- -----.
1. 기금운용관 : <u>기획조정실장</u>	1. ----- <u>도시공간본부장</u>
2. 분임기금운용관 : <u>공공자산담당관</u>	2. ----- <u>도시계획과장</u>
3. 기금출납원 : <u>기획조정실</u> 기금담당사무관	3. ----- <u>도시공간본부</u>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현행	개정안
및 기능)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4. (생략)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②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공공자산담당관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생략) 2. 도시계획, 주거환경 개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예산부서 및 기반시설설치기금과 직접 관련된 4급 이상 공무원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 소관부서의 담당 사무	및 기능) ----- 관련 다음 각 호의 ----- ----- 따라 ----- ----- 둔다. 1. ~ 4.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도시공간본부장----- ----- 도시계획과장----- ----- 사람 중 ----- ----- 1. (현행과 같음) 2. ----- ----- 사람 3. 기금----- ----- ③ ----- ----- ----- 담당사무

현행	개정안
<u>관으로 한다.</u> 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u>연임</u>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u>회의</u>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③ (생략) <u><신설></u> ④·⑤ (생략) ⑥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u>관이 맡는다.</u> ④ 위촉직 위원----- ---- 한 차례만 연임----- -----, ----- -----.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 <u>회의</u>(이하 “회의”라 한다)는-----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⑦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 ----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 ---- 제12조(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

현행	개정안
다. <u>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에 있는 경우</u> <u>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u> <u>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u> <u>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신청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u>	<u>한 조례」 제8조의2 및 제9조에 따른다.</u>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연장과 조직개편에 따른 운영부서를 변경하는 사항을 일부개정하여 보완하려는 것으로 추가적인 비용이 수반되지 않아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 도시공간본부 도시계획과 안아영(02-2133-8321)

서울특별시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24년 8월 12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13건으로

취득 11건, 처분 2건임

- 취득 11건은 매입 및 신축 등 2건, 신축 1건, 기부채납 1건, 증축 등 2건, 매입완료 후 신축취소 2건, 신축 취소 2건, 교환취득 1건이며,
- 처분 2건은 교환처분 1건과 매각 등 1건임

나. 취득 11건

○ 매입 및 신축 등 2건에 대한 세부내역

- 관악 S밸리 내 대학 인프라와 인재를 연계한 창업 거점을 조성하고자 현재 버스차고지로 이용중인 부지(신림동 131-6 외 7필지, 4,211㎡)를 차고지 이전 후 활용하고, 국유지(신림동 815-9, 24㎡)매입으로 총4,235㎡의 부지를 확보하여, 산·관·학 창업 네트워크의 거점이 되어 창업기업을 종합 지원하는 서울창업허브 관악 조성(25,614.9㎡)
- 서울시 소속 박물관 및 미술관의 수장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강원도 횡성군에 문화유산보전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2019년 제1차 수시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가결되었으나, 공간개선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비가 51.3% 증가(40,154백만원 → 60,755백만원)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수립하여 재상정

○ 신축 1건에 대한 세부내역

- 서울남부교정시설 이전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분 기부채납 부지(구로구 고척동 350-4)가 확보되어, 서울 제조분야 창업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상품성 및 사업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구로·가산 G밸리의 기술·제조기반 지역 인프라 강점을 살린 서울창업허브 구로 조성(17,652.00㎡)

○ 기부채납 1건에 대한 세부내역

- 서울창동 도시개발사업 추진시 창동역 환승주차장(543면) 부지(27,423㎡)를 제공하면

서 기존 주차장과 동일 규모 이상의 공영주차장을 신설하여 받기로 하였기에, 1지구 씨드 큐브 창동이 준공됨에 따라 지하2~3층 공영주차장을 기부채납(토지지분 620.6㎡, 건물 11,386.7㎡)

○ 증축 등 2건에 대한 세부내역

-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흥1동 기존 市 공영주차장을 1개층 수직 증축(779.3㎡)하여 주차공간(주차 15면)을 확충
- 장애인 전문 체육시설을 건립하기 위하여 2021년 제1차 수시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가결되었으나, 실시설계 최종결과 사업비가 121.46% 증가(11,522백만원 → 25,517백만원)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수립하여 재상정

○ 매입완료 후 신축취소 2건에 대한 세부내역

- 당초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금천구 마을활력소를 조성하고자 민간 소유의 토지(257.00㎡)와 건물(283.91㎡)을 매입하고, 기존 건물 멸실 후 신축(350.0㎡)을 하기 위해 2021년 제4차 수시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가결되었으나, 토지 및 건물 매입 완료 후, 2022년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결과 사업의 즉시폐지가 결정되었고, 이에 따라 관련 조례도 폐지되어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여 당초 가결된 건물 신축 관리계획을 취소하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재상정
- 당초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서초구 마을활력소를 조성하고자 민간 소유의 토지(386.0㎡)와 건물(115.01㎡)을 매입하고, 기존 건물 멸실 후 신축(300.0㎡)을 하기 위해 2021년 제3차 수시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가결되었으나, 토지 및 건물 매입 완료 후, 2022년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결과 사업의 즉시폐지가 결정되었고, 이에 따라 관련 조례도 폐지되어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여 당초 가결된 건물 신축 관리계획을 취소하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재상정

○ 신축 취소 2건에 대한 세부내역

- 당초 여의도 금융중심지 內 디지털금융 지원기능을 총괄하고 인재 양성 및 핀테크 등 디지털금융 기업성장 촉진을 위해 디지털금융 지원센터(5,145.00㎡)를 건립하고자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가결되었으나 재건축 공공기여시설이 확보되어 신축보다는 기부채납을 통한 금융 산업 지원시설 통합·집적을 위해 사업취소를 결정함에 따라 신축 취소
- 당초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5,210.07㎡)을 조성하고자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가결되었으나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가 대폭 증액(증 14,575백만원)됨에 따라 행정 절차 제이행 등 사업타당성이 현저히 감소하는 등의 사유로 사업취소를 결정함에 따라 신축 취소

○ 교환취득 1건에 대한 세부내역

-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 이원화를 해소하고 향후 안정적 운영 및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영화센터 건립 부지인 중구 소유의 토지(초동 64-11)를 중구 관내

시유지와 교환하여 취득(804.10㎡)

다. 처분 2건

○ 교환처분 1건에 대한 세부내역

- 중구에서 청사 별관 등 공공건물로 사용중인 구유 건물이 시유지 상에 존재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 일원화 차원에서 해당 부지인 중구 내 시유지(예관동 83-15외 4필지)를 교환하여 처분(663.00㎡)

○ 매각 등 1건에 대한 세부내역

- 한강 아라호(688톤) 매각을 위하여 201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가결 되었으나 수차례 매각 입찰이 유찰되는 등 매각을 추진하지 못하였고, 매각 전 운영 활성화 방안으로 대부 운영하였으나, 대부계약 종료에 따라 매각 재추진시 기준가격이 77.6% 감소(11,279백만원 → 2,526백만원)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재상정

3.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계상재산(목록 : 별첨)

○ 취득 11건

- | | | | |
|---------------|----|---|--------------------------------|
| - 매입 및 신축 등 | 2건 | : | 토지 43,161.00㎡
건물 34,904.76㎡ |
| - 신축 | 1건 | : | 건물 17,652.00㎡ |
| - 기부채납 | 1건 | : | 토지 620.61㎡
건물 11,386.69㎡ |
| - 증축 등 | 2건 | : | 건물 4,888.68㎡ |
| - 매입완료 후 신축취소 | 2건 | : | 토지 643.00㎡
건물 1,048.92㎡ |
| - 신축 취소 | 2건 | : | 건물 10,355.24㎡ |
| - 교환 취득 | 1건 | : | 토지 804.10㎡ |
| ○ 처분 2건 | | | |
| - 교환 처분 | 1건 | : | 토지 663.00㎡ |
| - 매각 등 | 1건 | : | 기타(선박) 688ton |

서울특별시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관악 S밸리 내 대학 인프라와 인재를 연계한 창업 거점을 조성하고자 현재 버스차고지로 이용 중인 부지(신림동 131-6 외 7필지, 4,211㎡)를 차고지 이전 후 활용하고, 국유지(신림동 815-9, 24㎡) 매입으로 총 4,235㎡의 부지를 확보하여, 산·관·학 창업 네트워크의 거점이 되어 창업기업을 종합지원하는 서울창업허브 관악을 조성(25,614.9㎡)하고,

서울시 소속 박물관 및 미술관의 수장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강원도 횡성군에 문화유산보전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2019년 제1차 수시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가결되었으나,

공간개선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비가 51.3% 증가(40,154백만원 → 60,755백만원)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재상정하고,

서울남부교정시설 이전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분 기부채납 부지(구로구 고척동 350-4)가 확보되어, 서울 제조분야 창업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상품성 및 사업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구로·가산 G밸리의 기술·제조기반 지역 인프라 강점을 살린 서울창업허브 구로를 조성(17,652.00㎡)하고,

서울창동 도시개발사업 추진시 창동역 환승주차장(543면) 부지(27,423㎡)를 제공하면서 기존 주차장과 동일 규모 이상의 공영주차장을 신설하여 받기로 하였기에, 1지구 씨드큐브 창동이 준공됨에 따라 지하2~3층공영주차장을 기부채납(토지지분 620.6㎡, 건물 11,386.7㎡)하고,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흥1동 기존 시 공영주차장을 1개층 수직 증축(779.3㎡)하여 주차공간(주차 15면)을 확충하고,

장애인 전문 체육시설을 건립하기 위하여 2021년 제1차 수시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가결되었으나,

실시설계 최종결과 사업비가 121.46% 증가(11,522백만원 → 25,517백만원)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재상정하고,

당초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금천구 마을활력소를 조성하고자 민간 소유의 토지(257.00㎡)와 건물(283.91㎡)을 매입하고, 기존 건물 멸실 후 신축(350.0㎡)을 하기 위해 2021년 제4차 수시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가결되었으나,

토지 및 건물 매입 완료 후, 2022년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결과 사업의 즉시폐지가 결정되었고, 이에 따라 관련 조례도 폐지되어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여 당초 가결된 건물 신축 관리계획을 취소하는 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재상정하고,

당초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서초구 마을활력소를 조성하고자 민간 소유의 토지(386.0㎡)와 건물(115.01㎡)을 매입하고, 기존 건물 멸실 후 신축(300.0㎡)을 하기 위해 2021년 제3차 수시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가결되었으나,

토지 및 건물 매입 완료 후, 2022년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결과 사업의 즉시폐지가 결정되었고, 이에 따라 관련 조례도 폐지되어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여 당초 가결된 건물 신축 관리계획을 취소하는 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재상정하고,

당초 여의도 금융중심지 내 디지털금융 지원기능을 총괄하고 인재 양성 및 핀테크 등 디지털금융 기업성장 촉진을 위해 디지털금융 지원센터(5,145.00㎡)를 건립하고자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가결되었으나

재건축 공공기여시설이 확보되어 신축보다는 기부채납을 통한 금융 산업 지원시설 통합·

집적을 위해 사업취소를 결정함에 따라 신축 취소하고,

당초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5,210.07㎡)을 조성하고자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가결 되었으나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가 대폭 증액(증 14,575백만원)됨에 따라 행정절차 재이행 등 사업 타당성이 현저히 감소하는 등의 사유로 사업 취소를 결정함에 따라 신축 취소하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 이원화를 해소하고 향후 안정적 운영 및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영화센터 건립 부지인 중구 소유의 토지(초동 64-11)를 중구 관내 시유지와 교환하여 취득(804.10㎡)하고,

중구에서 청사 별관 등 공공건물로 사용중인 구유 건물이 시유지 상에 존재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 일원화 차원에서 해당 부지인 중구 내 시유지(예관동 83-15외 4필지)를 교환하여 처분(663.00㎡)하고,

한강 아라호(688톤) 매각을 위하여 201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가결 되었으나

수차례 매각 입찰이 유찰되는 등 매각을 추진하지 못하였고, 매각 전 운영 활성화 방안으로 대부 운영하였으나, 대부계약 종료에 따라 매각 재추진시 기준가격이 77.6% 감소(11,279백만원 → 2,526백만원) 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재상정하여,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한다.

□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계상재산(목록 : 별첨)

○ 취득 11건

－ 매입 및 신축 등	2건	:	토지 43,161.00㎡ 건물 34,904.76㎡
－ 신축	1건	:	건물 17,652.00㎡
－ 기부채납	1건	:	토지 620.61㎡ 건물 11,386.69㎡
－ 증축 등	2건	:	건물 4,888.68㎡
－ 매입완료 후 신축취소	2건	:	토지 643.00㎡ 건물 1,048.92㎡
－ 신축 취소	2건	:	건물 10,355.24㎡
－ 교환 취득	1건	:	토지 804.10㎡

- 처분 2건
- | | | | |
|---------|----|---|---------------|
| - 교환 처분 | 1건 | : | 토지 663.00㎡ |
| - 매각 등 | 1건 | : | 기타(선박) 688ton |

첨 부

1.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구 분			이 전			금 회			합 계		
			건수	면 적(㎡)	금 액(천원)	건수	면 적(㎡)	금 액(천원)	건수	면 적(㎡)	금 액(천원)
취득	계	토지	2	65,924.21	36,502,233	4	45,228.71	26,512,512	6	111,152.92	63,014,745
		건물 등	21	114,298.08	547,430,702	7	80,236.29	301,592,990	28	194,534.37	849,023,692
		기타	2	-	38,000,000	-	-	-	2	-	38,000,000
	매입 및 신축 등	토지	-	40,320.40	3,279,488	-	43,161.00	1,750,984	-	83,481.40	5,030,472
		건물	3	38,714.52	131,689,282	2	34,904.76	138,097,151	5	73,619.28	269,786,433
		토지	-	-	-	2	643.00	2,204,951	2	643.00	2,204,951
	매입	건물	-	-	-	-	398.92	594,216	-	398.92	594,216
		기타	2	-	38,000,000	-	-	-	2	-	38,000,000
	신축 등	건물 등	14	63,717.04	368,628,384	1	17,652.00	76,878,000	15	81,369.04	445,506,384
		토지	-	-	-	1	620.61	6,386,126	1	620.61	6,386,126
처분	기부채납	건물 등	1	6,985.60	24,380,000	-	11,386.68	11,455,478	1	18,372.29	35,835,478
		건물	3	4,880.92	22,733,036	2	4,888.68	28,123,850	5	9,769.60	50,856,886
		건물	-	-	-	2	11,005.24	46,444,295	2	11,005.24	46,444,295
	신축 (취소)	토지	2	25,603.81	33,222,745	1	804.10	16,170,451	3	26,407.91	49,393,196
		건물	-	-	-	-	-	-	-	-	-
	교환	토지	5	15,057.90	111,015,293	1	663.00	3,611,154	6	15,720.90	114,626,447
		건물	2	41,136.33	12,548,156	-	-	-	2	41,136.33	12,548,156
		기타	-	-	-	1	-	2,526,652	1	-	2,526,652
	교환	토지	1	5,905.70	28,260,768	1	663.00	3,611,154	2	6,568.70	31,871,922
		건물	1	23,665.47	6,756,691	-	-	-	1	23,665.47	6,756,691
매각 등	매각 등	토지	4	9,152.20	82,754,525	-	-	-	4	9,152.20	82,754,525
		건물	-	1,715.51	804,574	-	-	-	-	1,715.51	804,574
	멸실	기타	-	-	-	1	-	2,526,652	1	-	2,526,652
		건물	1	15,755.35	4,986,891	-	-	-	1	15,755.35	4,986,891

2.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 24년도 제3차 수시분)

일련 번호	구분	재산의 표시			(연)면적(㎡)	기준가격(천원)	취득 시기	취득사유	소관부서	비고
		구	동	번지						
계										
1	토지 매입	관악구	신림동	815-9	24.00	131,136	2026	서울창업허브 관악 조성	경제실 창업정책과	
	건물 신 축	관악구	신림동	131-6 외 8필지	25,614.90	77,342,151	2028			
2	토지 매입 (변경)	황성군 우천면	두곡리	440-2 외 16필지	43,137.00	1,619,848	2019	서울시 문화유산보존센터 건립	문화본부 박물관과	
	건물 신 축 (변경)				9,289.86	60,755,000	2025			
3	건물 신 축	구로구	고척동	350-4	17,652.00	76,878,000	2027	서울창업허브 구로 조성	경제실 창업정책과	
4	토지 기부채납	도봉구	청동	1-28	620.61	6,386,126	2025	세드큐브 창동 공영주차장 기부채납	교통실 주차계획과	
	건물 기부채납				11,386.69	11,455,478	2025			
5	건물 증 축	금천구	시흥동	886-14	779.38	2,606,850	2025	시흥1동 공영주차장 증축		
6	건물 증 축 (변경)	송파구	오금동	51	4,109.30	25,517,000	2026	시립반도체육센터 건립	복지실 장애인자립지원과	

입원 번호	구분	제산의 표시			(면적(㎡))	기준가격(천원)	취득 시기	취득사유	소관부서	비고
		구	동	번지						
7	토지 매입 (완료)	금천구	독신동	1063-2,-3	257.00	220,139	2021	금천구 모든의공간 미유휴소 조성	행정국 자치행정과	
	건물 매입 (완료)				283.91	579,145	2021			
	건물 신축 (취소)				350.00	1,254,788	-			
8	토지 매입 (완료)	서초구	우면동	42-5	386.00	1,984,812	2021	서초구 모든의공간 미유휴소 조성	행정국 자치행정과	
	건물 매입 (완료)				115.01	15,071	2021			
	건물 신축 (취소)				300.00	1,089,107	-			
9	건물 신축 (취소)	영등포구	여의도동	10-5	5,145.17	29,392,000	-	디지털금융지원센터 건립 사업 취소	경제실 금융투자과	
10	건물 신축 (취소)	강서구	공행동	796	5,210.07	14,708,400	-	빙화대로 지하주차장 조성 사업 취소	교통실 주차계획과	
11	토지 교환	중구	초동	64-11	804.10	16,170,451	2024	서울영합센터 건립관련 시-구유지(중구) 토지교환	경제실 창조산업과	

3. 공유재산 처분대상 재산목록(' 24년도 제3차 수시분)

일련 번호	구분	재산의 표시			(연면적(㎡))	기준가격(천원)	처분 시기	처분사유 및 근거법령	소관부서
		구	동	번지					
	계				663.00 (668(ton))	6,137,806			
1	토지 교환	중구	예관동	83-15 외 4필지	663.00	3,611,154	2024	서울영화센터 건립 관련 시-구유지(중구) 토지교환	경제실 창조산업과
2	매각 (변경)	영등포구	여의도동	83	668(ton)	2,526,652	2024	한강 관광 유람선 (한강아라호) 매각	미래환경본부 수상관리과

4.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 요약(' 24년도 제3차 수시분)

사 업 명	구 분	내 역				세 부 내 용
		종류	건수	(연)면적(㎡)	기준가격(천원)	
서울창원허브 관악 조성	취득 (매입 및 신축)	토지	1	24.00	131,136	- 목적 및 용도 : 창업지원시설 조성 - 대 상 지 : 관악구 신림동 131-6 외 9필지 - 사업기간 : '23. 3월 ~ '28. 12월 - 소요예산 : 77,342백만원 - 사업규모 : 토지 24.00㎡, 건물 25,614.90㎡ - 기준가격 명세 : 토지 131,136천원, 건물 77,342,151천원 - 계약방법 : <토지매입> 협의취득, <건물신축> 공개경쟁입찰
		건물	1	25,614.90	77,342,151	
서울시 문화유산보존센터 건립	취득 변경 (매입 및 신축)	토지	1	43,137.00	1,619,848	- 목적 및 용도 : 서울시 문화유산보존센터 건립 - 대 상 지 :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두곡리 440-2 외 16필지 - 사업기간 : '16. 8월 ~ '25. 7월 - 소요예산 : 63,064백만원 - 사업규모 : <토지매입> 43,137.00㎡, <건물신축> 9,289.86㎡ - 기준가격 명세 : 토지 1,619,848천원, 건물 60,755,000천원 - 계약방법 : <토지매입> 협의매입 <건물신축> 공개경쟁입찰
		건물	1	9,289.86	60,755,000	
서울창원허브 구로 조성	취득 (신축)	건물	1	17,652.00	76,878,000	- 목적 및 용도 : 창업지원시설 조성 - 대 상 지 : 구로구 고척동 350-4 - 사업기간 : '23. 3월 ~ '27. 12월 - 소요예산 : 76,878백만원 - 사업규모 : 건물 17,652㎡ - 기준가격 명세 : 건물 76,878,000천원 - 계약방법 : <건물신축> 공개경쟁입찰

사 업 명	구 분	내 역			세 부 내 역
		종류	건수	(연)면적(㎡)	기준가격(천원)
세드큐브 창동 공영주차장 기부채납	취득 (기부 채납)	토지	1	620.61	6,386,126
		건물	1	11,386.69	11,455,478
시흥·동 공영주차장 건축	취득 (건축)	건물	1	779.38	2,606,850
		건물	1	4,109.30	25,517,000
시립 반도체육센터 건립	취득 (건축)	건물	1	4,109.30	25,517,000

- 목적 및 용도 : 세드큐브 창동 공영주차장 기부채납
- 대 상 지 : 도봉구 창동 1-28
- 사업기간 : '14. 3월 ~ '25. 1월
- 소유예산 : 없음
- 사업규모 : 집합건물의 지하 2~3층에 위치한 공영주차장
토지(지분) 620.61㎡, 건물 11,386.69㎡
- 기준가격 명세 : 토지 6,386,126천원, 건물 11,455,478천원
- 계약방법 : 기부채납

- 목적 및 용도 :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기존 공영주차장 건축
- 대 상 지 : 금천구 시흥동 886-14
- 사업기간 : '22. 10월 ~ '26. 12월
- 소유예산 : 2,606,850천원
- 사업규모 : 건물 779.38㎡
- 기준가격 명세 : 건물 2,606,850천원
- 계약방법 : <건물건축> 공개경쟁입찰

- 목적 및 용도 : 시립반도체육센터 건립(건축)
- 대 상 지 : 송파구 오금동 51
- 사업기간 : '20. 6월 ~ '26. 10월
- 소유예산 : 25,517,000천원
- 사업규모 : 건물 4,109.30㎡
- 기준가격 명세 : 건물 25,517,000천원
- 계약방법 : <건물건축> 공개경쟁입찰

사 업 명	구 분	내 역			세 부 내 용
		종류	건수	(연)면적(㎡)	
금천구 모두의공간 마을활력소 조성 특정 변경 (매입·원료 후 신축 취소)		토지	2	257.00	220,139 - 목적 및 용도 : 금천구 마을활력소 조성을 위해 토지 및 건물 매입·원료 후 건물 신축을 취소하는 관리계획 변경 - 대 상 지 : 금천구 독산동 1063-2, -3 - 사업기간 : ' 19. 8월 ~ ' 22. 8월 - 소요예산 : 1,611,452천원 - 사업규모 : 토지(매입원료) 257.00㎡, 건물(매입원료) 283.91㎡, 건물(신축취소) 350㎡ - 기준가격 명세 : 토지 : 건물 매입 822,459천원, 건물 1,254,788천원(신축비) - 계약방법 : 〈토지·건물 매입-원료〉 협의취득, 〈건물신축-취소〉
		건물	2	283.91	579,145
		건물	1	350.00	1,254,788
서초구 모두의공간 마을활력소 조성 특정 변경 (매입·원료 후 신축 취소)		토지	1	386.00	1,984,812 - 목적 및 용도 : 서초구 마을활력소 조성을 위해 토지 및 건물 매입·원료 후 건물 신축을 취소하는 관리계획 변경 - 대 상 지 : 서초구 우면동 42-5 - 사업기간 : ' 19. 8월 ~ ' 22. 8월 - 소요예산 : 3,004,328천원 - 사업규모 : 토지(매입원료) 386.00㎡, 건물(매입원료) 115.01㎡, 건물(신축취소) 300.00㎡ - 기준가격 명세 : 토지 : 건물 매입 1,999,883천원, 건물 1,089,107천원 - 계약방법 : 〈토지·건물 매입-원료〉 협의취득, 〈건물신축-취소〉
		건물	1	115.01	15,071
		건물	1	300.00	1,089,107
디지털금융지원센터 건립 사업 취소	취득 (신축 취소)	건물	1	5,145.17	29,392,000 - 목적 및 용도 : 디지털금융지원센터 건립 신축 취소 - 대 상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0-5 - 사업기간 : ' 22. 5월 ~ ' 27. 8월 - 소요예산 : 29,392,000천원 - 사업규모 : 건물 5,145.17㎡ - 기준가격 명세 : 건물 29,392,000천원 - 계약방법 : 〈건물신축〉 공개경쟁입찰

사 업 명	구 분	내 역			세 부 내 역
		종류	건수	(연)면적(㎡)	
병화대로 지하주차장 조성 사업 취소	취 득 (신축 취소)	건물	1	5,210.07	14,708.400
					- 목적 및 용도 : 병화대로 지하주차장 조성 취소 - 대 상 지 : 강서구 공항동 796 - 사업기간 : ' 20. 6월 ~ ' 23. 12월 - 소요예산 : 14,708,400천원 - 사업규모 : 건물신축 5,210.07㎡ - 기준가격 명세 : 건물 14,708,400천원 - 계약방법 : 건물신축 취소
서울영화센터 건립 관련 시-구유지(중구) 토지교환	취 득 (교환)	토지	1	804.10	16,170.451
					- 목적 및 용도 : 구유지 내 시립시설 축조에 따른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 이원화 해소를 위하여 시-구유지 토지 교환 - 대 상 지 : 중구 초동 64-11 외 5필지 - 사업기간 : ' 24. 6월 ~ ' 28. 12월 - 소요예산 : 20,883,000천원 - 사업규모 : <교환취득> 804.10㎡, <교환처분> 663.00㎡ - 기준가격 명세 : <교환취득> 16,170,451천원, <교환처분> 3,611,154천원 - 계약방법 : 차액 지급
	처 분 (교환)	토지	5	663.00	3,611,154
한강 관광 유람선 (한강아라호) 매각	판 권 변 경 (매각)	선박	1	688.00	2,526.652
					- 목적 및 용도 : 내구연한 도래와 관리 유지비 상승에 따라 매각 추진 - 대 상 지 : 한강 아라호(선박) - 사업기간 : ' 12. 9월 ~ ' 24. 9월 - 소요예산 : 75,000천원 - 사업규모 : 선박 688톤(승선정원 310명) - 기준가격 명세 : 2,526,652천원 ※ 취득가격(112.7억)×자가율(0.224/정률법, 선형13년) - 계약방법 : <선박> 공개경쟁매각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4년 8월 12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연구원을 설립하고, 주요 시책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분석, 시정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연구 및 학술활동을 통해 시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서울연구원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 나. 이에 서울연구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5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 사무명 : 서울연구원 출연

나. 출연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1) 추진근거

- －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13조(운영재원)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 －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제4조 제1항

제4조(기금 및 출연금) ① 시는 연구원의 시설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줄 수 있다.

2) 추진 필요성

- － 서울연구원은 서울시가 출연하여 설립한 시책연구기관으로, 서울의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택, 교통, 안전, 경제, 복지, 문화,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체계적·전문적으로 조사·분석하고, 시정 주요 당면 과제에 대한 연구 및 학술활동을 수행하여 서울시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다. 출연 사무내용

- 1) 시 행정 및 의회 의정에 관한 중·장기계획 및 자료의 조사연구
- 2) 시 행정 및 의회 의정의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조사연구
- 3)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내·외의 연구기관과 민간단체로부터의 연구용역, 원가계산 등의 수탁
- 4) 시 행정 및 의회 의정에 관한 연구관련 도서 및 간행물 발간
- 5)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학술대회 및 정보교류 협력
- 6) 자치구의 요청에 따른 자치구 행정과 자치구의회의 의정에 관한 연구

라. 출연 기관 개요

1) 연 혁

- ' 92. 1. 15 서울특별시시정개발연구원 육성 조례 제정
- ' 92. 7. 14 재단법인 서울특별시시정개발연구원 설립
- ' 92. 9. 23 초대 최상철 원장 취임
- ' 92. 10. 1 서울특별시시정개발연구원 개원
- ' 03. 1. 27 현 청사(서초동 인재개발원 내) 이전
- ' 12. 7. 26 서울연구원으로 명칭 변경
- ' 17. 9. 21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 개정
- ' 23. 11. 1 통합연구원 출범 * 서울연구원+서울기술연구원
- ' 24. 2. 23 제18대 오균 원장 취임

2) 소재지

- 본 관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 역삼별관 :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205 YK빌딩
- 정동별관 :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89-10

3) 위치도





4) 규 모

- 조 직 : 원장, 부원장, 감사실, 3본부, 11실, 5센터
- 인 력 : 정원 301명 / 현원 302명

(2024년 7월 22일, 단위: 명)

구분	계	임 원	연구직	일반직	공무직
정 원	301	1	213	71	16
현 원	302	1	214	71	16
과부족	1	-	1	-	-

5) 시설현황

- 본 관 : 지상5층~지하1층 / 연면적 8,467.83m²
- ▶ 시유재산 무상사용 : ' 21.12.27. ~ ' 26.12.26.(5년)

- 정동 별관 : 지상4층~지하1층 / 연면적 1,793.87m²
- ▶ 시유재산 무상사용 : ' 24.3.22. ~ ' 29.3.21.(5년)
- 역삼 별관 : 지상8층(1,006.61m²), 지상1층(110.08m²)
- ▶ 민간건물 임차 : ' 21.5.1. ~ ' 26.4.30.(5년)

마.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1) 출연금액(안) : 39,172백만원

2) 산출근거(안)

(단위 : 천원)

세입 예산			세출 예산		
계	60,792,924	100%	계	60,792,924	100%
1. 일반사업계정	53,192,924	87.5%	1. 일반사업계정	53,192,924	87.5%
가. 출연금	39,172,170	64.4%	가. 연구사업	6,976,275	11.5%
나. 자재수입	14,020,754	23.1%	1)연구과제 수행	6,887,060	11.3%
1)수탁사업 계정전입금	1,178,000	1.9%	2)연구실 운영	89,215	0.1%
2)출판물 등 판매수입	40,000	0.1%	나. 경영사업	12,317,546	20.3%
3)고유목적사업 준비금	1,000,000	1.6%	다. 인건비	33,699,103	55.4%
4)이월금	1,712,340	2.8%	라. 예비비	200,000	0.3%
5)내부유보금	10,090,414	16.6%			
2. 수탁협약사업계정	7,600,000	12.5%	2. 수탁협약사업계정	7,600,000	12.5%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운영재원)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2)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3)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3(출자·출연의 동의)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2조의4(출자·출연 동의안) 시장이 제22조의3에 따라 제출하는 출자·출연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출자·출연 사무명
2. 출자·출연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출자·출연 사무 내용
4. 출자·출연 기관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6. 이사회 회의록
7. 결산 보고서
8. 그 밖에 출자·출연 심의에 필요한 사항

4)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제4조(기금 및 출연금) ① 시는 연구원의 시설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줄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별첨 1. 2023년도 결산 이사회 결과보고 1부.
2. 2023년도 결산보고서 1부.

※ 작성자 : 기획조정실 창의행정담당관 안은경 (☎ 2133-7775)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4년 8월 12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 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 지방자치의 정착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지방분권·지방행정·지방재정 등에 대한 정책연구를 수행함
- 나. 이에 중앙정부 및 17개 시·도가 출연금을 분담하고 있으므로, 2025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 사무명: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나. 출연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1) 추진근거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 제3항

제3조(출연금) ③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와 제2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추진 필요성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자치·지방분권·지방행정·지방재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지방행정 과제를 의뢰받아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 현안에 대해 지역 연구원과 차별화된 조사·분석을 통해 정책 대응 방안을 제시함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중앙정부 및 각 17개 시도가 출연금을 분담함으로써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에 기여함

다. 출연 사무내용

- 1) 지방행정에 관한 중장기 계획 및 자료의 조사연구
- 2) 지방행정·지방재정·지역발전의 당면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 3) 지방투자사업 (예비)타당성 조사·평가 연구 및 용역 수탁
- 4)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에 대한 자문 및 경영진단 등
- 5) 국내외 연구기관과 교류, 협력

라. 출연기관 개요

1) 연 혁

- ' 84. 8월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설립 허가(서울시 마포구)
- ' 86. 5월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정
- ' 15.10월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시행령 개정(출연금 지급 지자체에 특별시 포함) 및 서울특별시 출연 시작
- ' 16.12월: 강원도 원주 혁신도시로 이전

2) 소재지: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21(반곡동)

3) 위치도



4) 규 모

- 조 직 : 원장, 1부원장(6실), 1센터(3부)
 - ▶ 기획조정실, 자치분권제도실, 지방행정혁신실, 지방재정실, 지역균형발전실, 경영지원실,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 인 력 (' 24. 07. 24. 기준)

▶ 임 원 : 25인 (당연직 21인, 임의직 4인)

이사회 구성현황

- 원 장(0) : 공석(원장공모 진행중)
- 당연직(21)
 - 행안부(4) :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자치분권국장, 지방재정국장, 균형발전지원국장
 - 시·도 기획관리실장(17)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임의직(4) : 김재훈(서울과기대), 김태영(경희대), 손희준(청주대), 이재원(부경대)

▶ 직 원 : 총 95명 (원장0, 연구직 58, 행정직 18, 전문직 1, 투자분석직 18)

(2024. 07. 24. 기준, 단위:명)

구 분	계	원장	연구직	행정직	전문직	투자분석직
정 원	104	1	63	19	1	20
현 원	95	0	58	18	1	18
과부족	△9	△1	△5	△1	-	△2

5) 시설현황

- 규 모 : 지상 3층, 지하 2층 / 연면적 5,742.68m²
- 건축년도 : 2016년(' 16.12월 강원도 원주시로 이전)
- 시설현황

층 별	주요 용도
지하 2층	주차장, 체력단련실, 기계실, 전기실
지하 1층	자료실
1층	로비, 경영지원실, 기획조정실 연구기획과
2층	임원실, 연구실(지방재정), 대회의실, 중회의실, 소회의실
3층	연구실(자치분권제도, 지방행정혁신, 지역포용발전), 중회의실, 소회의실, 여성휴게소
※ LIMAC 별도 청사 임차 사용 중(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 5~6층)	

마.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1) ' 25년 출연금 편성액(안) : 250백만원

2) 산출근거

－ 지방자치단체(17개) 출연금 총 4,150백만원

▶ 특별·광역시·도(16개) 출연금 : 각 250백만원

▶ 세종특별자치시(1개) 출연금 : 150백만원

※ 분담근거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출연금)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출연금의 교부절차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 제3항

제3조(출연금) ③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와 제2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2)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3) 지방재정법 제18조 1항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연구원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 재무상태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3. 기타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서류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붙임 1. 2024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 심의 결과

2. 2023년 결산 보고서

3. 2023년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4. 2025년 추정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5. 2025년 사업계획(안)

6. 2025년 출연금 요구서

※ 작성자 : 기획조정실 창의행정담당관 김수연 (☎ 2133-7776)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4년 8월 12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의2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 사무명 :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나. 출연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1) 출연 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의2(발전기금의 재원)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제17조의2(발전기금의 재원) ①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3.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의 출연금으로서 회계 연도별 지방소비세 세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출연금)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

제12조의2(출연금) ① 법 제17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제5호에 따라 산출한 해당 시·도의 안분액 × (35/100)

2) 출연 필요성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법정 출연금

－ 2010년부터 수도권 3개 시·도(서울·인천·경기)의 출연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일 자리 창출 및 지역개발 사업을 지원하여 수도권·비수도권 간 상생발전을 도모

다. 출연 사무 내용

1) 지역발전 및 지역상생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 지원

2)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른 지방채의 인수 및 「지방공기업법」 제68조에 따른 공사채의 인수 등

라. 출연 기관 개요

- 1) 기 관 명 :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 2) 소 재 지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6(공덕동, 지방재정회관 3층)
- 3) 규 모

－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구성

구 분	정·현원	인원수	세부 내용
조합위원	정원	23인	시·도 기획조정실장 또는 국장(17인),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1),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정책관(1),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하는 지방재정전문가(2인), 균형발전전문가(2인)
	현원	23인	서울특별시 재정기획관 및 16개 시도 기획조정실장(17인),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국장(1),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장(1),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하는 지방재정전문가(2인), 소멸대응전문가(2인)
사무직원	정원	4인	조합원 파견공무원 5급(1인) · 6급(1인) 한국 지방재정공제회 직원 또는 조합원 파견공무원 6급(2인)
	현원	4인	조합원 파견공무원 5급(1인) · 6급(1인) 한국 지방재정공제회 직원(2인)

－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사무실 면적 : 108.9㎡(33평, 임차 사무실)

4) 위 치 도



〈위 치 도〉



〈지방재정회관 건물〉

마.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1) 2025년 출연금 편성액(안) : 307,619,608천원

※ 국회예산정책처 중기 국세수입 전망('23~'27년)에 따른 잠정액으로, 실제 출연 금액은 세수에 따라 변동 가능

- 2) 2025년 산출근거(안)

$$\begin{aligned}
 & - 921,438,396\text{천원(기금 출연 대상 지방소비세¹⁾)} \times 35\% \\
 & + \triangle 14,883,830\text{천원('23년 결산 기금 정산분)}
 \end{aligned}$$

1) 지방소비세 인상 10%p분(약 11.6조원)에서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지방이양에 따른 보전분 등(약 4.5조원)을 제외한 잔여분(약 7.1조원)에 서울시 안분율(12.96%) 적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제②항~제③항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 성 자 :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오경진(☎ 2133-6865)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원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4년 8월 12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는 전문적인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방공기업 컨설팅 지원 등을 수행하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 나. 이에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원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대상기관 : 지방공기업평가원
- 나. 사 무 명 : 지방공기업평가원 운영 지원
- 다. 추진근거
- 관련법령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 동법 시행령 제76조
- 라. 출연 필요성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및 진단, 임직원 교육, 경영지도·컨설팅, 정책연구 등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지방공기업의 경영합리화 지원을 통한 지방재정 건전성 도모
- 마. 주요사업 내용
- 지방공기업 정책 개발 및 연구지원
 - 지방공기업(광역+기초) 경영평가 및 경영진단 등 수행
 - 지방공기업 컨설팅 지원
 - 지방공기업 설립·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법정지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법정지정기관)
 - 지방공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임직원 전문교육
- 바. 출연대상 기관 개요
- 소 재 지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12-6
 - 법인설립 : 1992. 3. 2.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 법정기관 전환(' 16.6)
 - 조 직 : 3실 2센터 / 정원 65명 ※현원 62명
 - 이사회 구성 : 이사 10명, 감사 1명
 - 시설현황 : 건물(지상6층) 연면적 2,550㎡, 부지 640㎡

○ 위 치 도



청사현황



위 치 도

사. 소요예산(안)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90,000천원

○ 산출근거 : 경상운영비 60,000천원, 사업비 30,000천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 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운영) ③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은 평가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원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 이효성(☎2133-6779)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4년 8월 12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는 산업진흥 및 중소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 등 경제 산업분야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서울경제진흥원을 운영하고 있음
- 나. 이에 서울경제진흥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5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서울경제진흥원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그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상기관 :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나. 주요사업

- 산업진흥 기반 조성 및 운영,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에 관한 지원, 해외 판로개척 및 기업 브랜드화 지원, 첨단산업 기술진흥
 - 중소기업지원시설의 건립 및 관리·운영, 시장이 위탁하는 중소기업 육성 사업 등 중소기업의 종합적인 지원 사업
- 다. 출연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2조

제12조(출연금 등) ① 시는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하거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 서울시 산업 및 중소기업 육성 전문기관인 서울경제진흥원에 대한 출연으로 서울 전략산업 육성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 중소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 개선 및 서울 경제 활성화

라. 출연기관 개요

- 소 재 지 :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상암동)
- 시설규모 : 대지 9,864.2㎡, 연면적 43,609㎡ (지하4층 ~ 지상14층)
- 지원시설 및 위치도 : (붙임 1) 참조

3. 소요예산

가. 2025년 출연금액(안) : 68,436백만원

- 지출예산 추계 95,982백만원 중 자체수입 추계 27,546백만원 감안, 필요예산 68,436백만원을 출연금으로 추계하여 검토 중

(단위: 백만원)

세 입				세 출			
구분	2024년	2025년	증감	구분	2024년	2025년	증감
총계	93,857	95,982	2,125	총계	93,857	95,982	2,125
고유사업	13,265	12,442	△823	고유사업비	52,432	52,514	82
시설운영	6,286	6,456	170	시설운영비	6,408	6,550	142
수탁수수료 등	1,500	1,500	-	기관운영비	34,479	36,818	2,339
사업외수입	2,900	3,000	100	예비비	538	100	△438
잉여금	3,066	4,148	1,082				
출연금	66,840	68,436	1,596				

※ 현재 2025년도 예산 편성·검토 과정으로 출연금 규모는 추계액으로 확정 사항이 아니며 검토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 있음, 수탁사업 예산 제외

나. 세부내역 : (붙임 2) 참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3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2조

나. 예산조치 : 2025년 예산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붙임 : 1. 관리시설 및 위치도 1부
 2. 예산 세부내역 1부
 3. 이사회 회의록 1부
 4. 결산보고서 1부(따로 붙임)

※ 작성자 : 경제실 경제정책과 권선애(☎2133-5215)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4년 8월 12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는 서울의 신성장 동력이 될 미래 산업(인공지능, 로봇, 바이오 등)을 육성하고자 2019년부터 우수한 기술과 역량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펀드를 조성·운영 중임
- 나. 이에 '25회계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되는 펀드 출자계획(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자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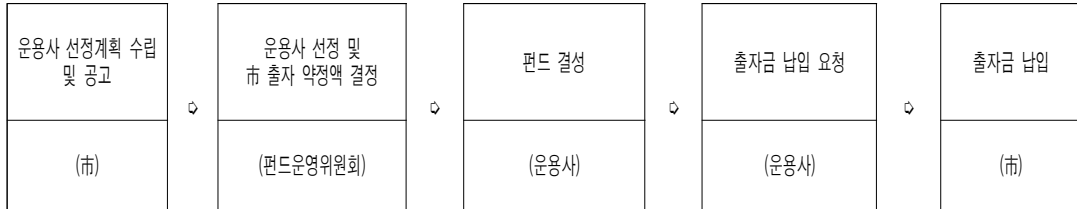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 제1항제1호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기금의 투자 등) 제4항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59조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 제1항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
(기금의 용도) 제2항
-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23조(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 제1항

나. 출자 개요

○ 출자사업

펀드명	市 출자액	조성액	조성기간
미래혁신성장 펀드	1,751억원	3조 6,857억원	'19년~'22년
서울 Vision 2030 펀드	3,500억원	5조원(목표)	'23년~'26년
녹색기업창업펀드 제5호	20억원	200억원	'23년

< 서울시 벤처펀드 출자 방식 >



* 벤처투자조합, 모태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 → 펀드 결성

* 투자기간(4년) 동안 출자금 분할 납입 → 회수기간(4년) 동안 출자금 회수

※ 출자금 납입 후 출자증권 취득

○ 출자 재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 ' 25년 출자계획(안) : 1,013억원

－ 미래혁신성장 펀드 : 187억원

－ 서울 Vision 2030 펀드 : 817억원

－ 녹색기업 창업펀드 제5호 : 9억원

※ 기 조성된 펀드의 ' 25년 출자 예상액 및 ' 25년 조성 펀드의 市 출자 약정액 규모(890억원)을 고려하여 산출

다. 출자 필요성

－ 총 3.7조원 규모의 미래혁신성장 펀드는 ' 19년부터 조성되어 차세대 신산업 분야의 유망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해 고용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음

* 피투자기업 600개사, 매출증대 2조 3,873억원, 고용창출 6,993명(' 23년말 기준)

－ 총 5조원 조성을 목표로 하는 서울 Vision 2030 펀드는 ' 24년까지 2.4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였으며, 첨단제조 등 미래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함

* 연도별 市 출자약정액 : (' 23년) 700억원 (' 24년) 850억원

(' 25년) 890억원 (' 26년) 1,100억원

－ ' 23년 200억원 규모로 조성된 녹색기업창업펀드 제5호는 서울 소재 녹색기업에 투자하여 녹색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 23년 조성 후 2개사 17억원 투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 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

제8조(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설치 또는 그 기금의 활용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

제71조(기금의 투자 등) ④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1. 벤처투자조합 2. 모태조합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59조제1항

제59조(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제5조(기금의 용도) ② 투자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지원
2.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23조제1항

제23조(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 ① 시장은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 실증사업에 대한 실증장소 및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 반영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 성 자 : 경제실 창업정책과 석영명 (☎ 2133-4890)

[붙임] 2025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펀드 출자계획(안)

분 야	주 요 내 용	출 자 액
계		1,013억원
미래혁신성장 펀드		187억원
① 4 차 산 업 혁 명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 지원	30억원
② 스 마 트 시 티	스마트시티 인프라 및 솔루션 분야 지원	38억원
③ 창 업 지 원	원천기술, 지식 기반 창업기업 지원	53억원
④ 재 도 전 지 원	기술력과 경험을 갖춘 재도전 창업기업 지원	12억원
⑤ 서 울 바 이 오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49억원
⑥ 문 화 콘 텐 츠	고부가가치의 콘텐츠 산업 지원	4억원
서울 Vision 2030 펀드		817억원
① 디 지 털 대 전 환	디지털 전환 시대 선도기술 지원	140억원
② 서 울 바 이 오	바이오, 의료, 헬스케어 유망기업 지원	78억원
③ 첨 단 제 조	첨단기술을 통한 제조공정 혁신 및 신제품 생산기업 지원	125억원
④ 창 조 산 업	지식재산권 기반 생산, 유통, 마케팅 등 종합 지원	144억원
⑤ 첫 걸 음 동 행	창업 초기기업, 경영위기에처한 기업, 대학창업기업 지원	88억원
⑥ 스 케 일 업	스케일업 및 해외 진출 지원	220억원
⑦ 창 업 지 원	초기창업 투자 강화 및 상생협력	23억원
녹색기업창업 펀드 제5호		9억원
녹색기업창업 펀드 제5호	기후위기 대응 기술개발 산업 지원	9억원

※ ' 25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정 및 운용사 출자금 납입 요청에 따라 금액 변동될 수 있음

서울특별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4년 8월 12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공기관의 연구성과 사업화 촉진을 통해 과학기술기반 지역 혁신성장플랫폼을 조성하고자 ‘서울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를 지정·고시[2020.8.28./2022.10.26. (개정)] 하였음
- 나. 이에,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25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하며,
- 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으로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출연기관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나. 사 무 명 :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 다. 출연근거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58조, 제58조의2
 -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의2

제18조의2(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에 대한 출연 등) 시장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8조의2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라. 출연의 필요성

-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연구성과 사업화 및 창업 지원을 통한 ‘기술-창업-성장’ 이 선순환하는 소규모, 지역 주도 혁신클러스터 육성을 위하여 ‘홍릉 강소특구 육성 사업비’ 지원 필요

마. 주요사업 내용

- 특구 내 기술 핵심기관(연구소·대학)이 개발 보유한 연구 역량을 활용하여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 기업 수요 조사를 통한 사업화 유망기술을 발굴하고 단계별 임상시험 및 인허가, 제품개발 등 기업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바. 출연대상 기관 개요

- 기 관 명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2005. 9월 법인설립
- 설립목적 : 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

* 특구 연구성과 사업화, 연구소기업·창업 성장지원, 특구 기반시설 구축 등

- 설립근거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23번길 27-5
- 조 직 : 10본부(10실, 17팀), 감사 1부 1팀

사. 소요예산(안)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900,000천원
- 산출근거 : 강소특구별 육성사업 국비(2,000백만원)의 40%이상 매칭
※ 과기정통부 지방비 매칭 비율 통보(' 21.8.26.)

(단위 : 천원)

구 분	계	2024	2025	2026
출 연 금	1,800,000	900,000	900,000	미정

※ 사업기간 2021~2025년, 총사업비 212억 원(국비 156, 지방비 56)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특구육성사업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구 육성종합계획에 따라 연구개발 활동 및 지식재산권 관리의 지원,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 등의 사업(이하 “특구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하고, 매년 특구육성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특구에 입주한 대학·연구소 및 기업과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② 특구육성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특구육성사업의 실시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2(출연 및 보조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재단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48조에 따른 진흥재단의 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2(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에 대한 출연 등) 시장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8조의2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경제실 첨단산업과 박세준 (☎ 2133-8749)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4년 8월 12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에서는 담보력이 부족한 서울 소재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유통을 원활히 하고, 교육 및 컨설팅 등 경영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 산하에 서울신용보증재단을 두고 있음
- 나. 이에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5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대상기관 : 서울신용보증재단
- 나. 주요사무 :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신용보증,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및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 다. 추진근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라. 출연의 필요성
- 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통해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유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 및 서울경제 활성화에 기여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나. 예산조치 : 2025년 예산편성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민생노동국 소상공인정책과 오승백 (☎2133-5533)

- 붙임 1. 서울신용보증재단 기관 현황
2.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3. 이사회 회의록(2023년 결산 관련)
4. 2023년 결산 보고서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4년 8월 12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에서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문화를 고양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조정·육성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자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06년 1월~)
- 나.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5 회계연도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출연 여부에 대해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상기관 :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나. 근거법령

- (공통)법령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개별)법령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 조례 :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다. 사무내용

- 대학(원)생 봉사활동 및 청년 기획봉사 활동 지원
- 동 단위 자원봉사 캠프 활성화 지원, 캠프 활동가 역량 강화 교육
- 효과적 재난·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민·관 자원봉사 협력사업 추진
- 자치구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지원
- 자원봉사 참여자 및 관리자 교육, 온라인 교육 플랫폼 운영
- 대내외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자원봉사 성과 연구
- 다양한 활동 주체(공공기관·기업, 국내·외, 중장년층 등)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라. 출연의 필요성

- 자원봉사활동을 주도해 나가는 민간의 역량 강화를 위해 설립한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의 체계적인 운영을 지원
-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주민들과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회복 및 발전 도모
- 자원봉사활동의 민·관 파트너십 구축으로 자원봉사활동을 범시민운동으로 확산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마. 기관개요

- 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신용보증재단 건물 3층)
- 규모 : 1,413.22㎡ (약 428평)

○ 인 력 : 36명

○ 지 원 : 25개 자치구 자원봉사센터 및 동 캠프 등

바. 소요예산('25년) : 5,670,838천원

○ 운 영 비(인건비, 경비 등) : 3,050,128천원

○ 사 업 비 : 2,620,710천원

※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행정국 시민협력과 문예림 (☎ 2133-6310)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4년 8월 12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 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세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설립·운영되고 있음
- 나. 이에,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연개요

- 대상기관 : 한국지방세연구원
- 관련법령
 -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원의 설립·운영)
 -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 출연금액: 2,429,864천원
 - － 산출내역 : 전전년도(' 23년) 보통세 세입결산액 (20,248,864,646천원) × 0.012%
 - ※ 산출 근거규정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

나.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주요사업

- 지방세정책 수단의 개발에 관한 연구
-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인 조정에 관한 연구

다. 출연의 필요성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교육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동법이 정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서울특별시의 출연은 법적사항으로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연구수행 관련 소요비용에 사용되는 바,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확충방안과 세제개선 과제들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지방세 실무 공무원들에 대한 역량 강화 등 역할 수행에 필요한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작성자 : 재무국 세제과 김종승 (☎ 2133-3353)

관 계 법 령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 ①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지방세연구원의 이사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 2명을 둔다. 이 경우 이사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협의하여 공무원, 교수 등 지방세에 대한 조예가 있는 사람을 각각 같은 수로 추천·선출하되, 이사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 ③ 지방세연구원의 원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며, 이사장과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 ④ 지방세연구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5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

을 말한다.

1. 1만분의 1.2

※ 비율변경(2020년 이전 1만분의 1.5, 2021년 1만분의1.3, 2020년 1만분의 1.2)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3. 지방세의 연구·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서울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4년 8월 12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는 우수인재 발굴·양성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 받기 곤란한 학생 및 서울시 소재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소속의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나. 이에 서울장학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5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서울장학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상기관: 서울장학재단

나.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다. 출연의 필요성

- 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의 발굴·양성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 및 서울시 소재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소속의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서울장학재단 운영 지원을 통해,
- 저소득 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함

라. 주요사업

- 고교 및 대학 분야 장학생 진로활동 학업장려 장학금 지원사업
- 학교 밖 청소년 및 직업전문학교 학업활동 장학금 지원사업
- 독립유공자 후손 및 해외 교환학생 파견 장학금 지원사업
-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서울시 정책사업에 참여한 우수학생 지원사업
- 멘토링, 서포터즈, 아카데미 등 장학생 성장지원사업 등

마. 기관개요

- 소 재 지 : 마포구 마포대로 163, 2층
- 법인설립 : 2009.1.8.
- 조 직 : 사무국(2부), 정원 13명/ 현원 12명
- 시설규모: 675㎡(사무공간, 회의실(3), 창고)

바. 소요예산(안) : 9,735,258천원

사. 산출근거

- 장학사업비 : 8,476,330천원
- 사무국운영비(인건비, 경비 등) : 1,258,928천원
- ※ 예산 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예산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평생교육국 교육지원정책과 전진수(☎ 2133-3913)

붙임

2025년도 서울장학재단 예산(안)

(단위: 천원)

구 분		2025년 편성안
합 계		9,735,258
장학사업비 소계		8,476,330
	서울희망대학진로장학금	3,010,000
	서울희망고교진로장학금	2,650,503
	독립유공자후손장학금	360,000
	서울교환학생장학금	315,500
	서울희망직업전문학교장학금	301,100
	서울꿈길장학금	200,000
	서울선순환인재장학금	50,000
	서울희망하나고장학금	31,800
	서울희망공익인재장학금	254,000
	서울희망예체능장학금	650,229
	장학생성장지원 프로그램 사업비	60,000
	홍보사업비	100,000
	장학시스템 구축 등 정보화사업비	493,198
경상운영비 소계		1,258,928
	인건비	604,467
	운영경비(기본경비+성과급)	654,461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4년 8월 12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는 중장년층에게 은퇴 전후의 새로운 인생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고자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을 운영하고 있음
- 나. 이에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나. 추진근거

- 법령 : 「민법」 제3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 조례 :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시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다. 출연의 필요성

- 고령화 가속과 기대수명 증가, 인구구조 및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대비, 기존 노년층과는 다른 특성과 욕구를 가진 중장년층에 대한 선제적 정책 대응 필요에 따라 관련 정책을 총괄·조율하는 전담 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을 지원하고,
- 중장년층의 역량을 서울시 미래 성장동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 중장년 일자리 생태계 구축을 위해 ‘경력 활용형 맞춤형 일자리 창출’ 확대, ‘직업전환을 위한 리스킬링’ 강화 및 ‘중장년 지속가능 일자리 환경 조성 사업’ 등 사업 추진을 통해 ‘서울형 중장년 지원 정책’을 구현하고자 함

라. 출연 사무내용

- 50플러스 캠퍼스 운영
- 50플러스센터 정책 지원
- 중장년층 관련 정책 연구·개발 및 성별 통계 구축 등
- 중장년층 이직 및 취업 지원 서비스, 사회공헌활동 지원 및 생애설계 상담서비스 등
- 중장년층 인력 개발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 중장년층 관련 프로그램 개발·보급
- 중장년층 관련 시설 종사자 교육
- 중장년층 사업 관련 민·관 네트워크 구축 및 자원 발굴, 연계

○ 기타 시장이 중장년층 관련 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마.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개요

○ 재단본부(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 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 시설규모 : 중부캠퍼스 사무 공간 사용
- 위치도



지역여건 : 5호선 · 6호선 · 경의중앙선 · 공한철도 공덕역 2번출구 도보 약 7분

○ 서울시50플러스 서부캠퍼스(' 16.5월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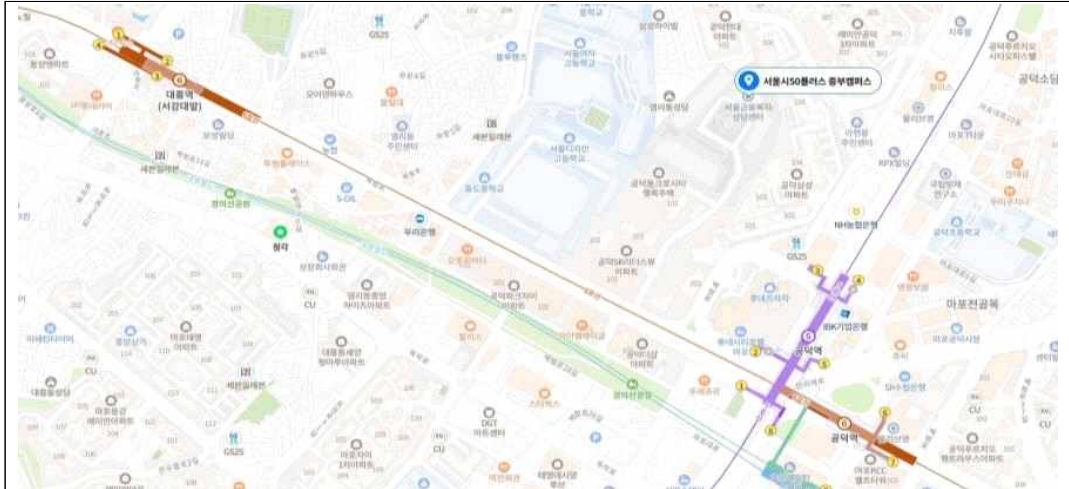
- 소재지 :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2길 7
- 시설규모 : 연면적 3,708.74㎡ 지하1~지상4층
- 위치도



지역여건 : 3호선 · 6호선 불광역 2번 출구 도보 7분

○ 서울시50플러스 중부캠퍼스(' 17.3월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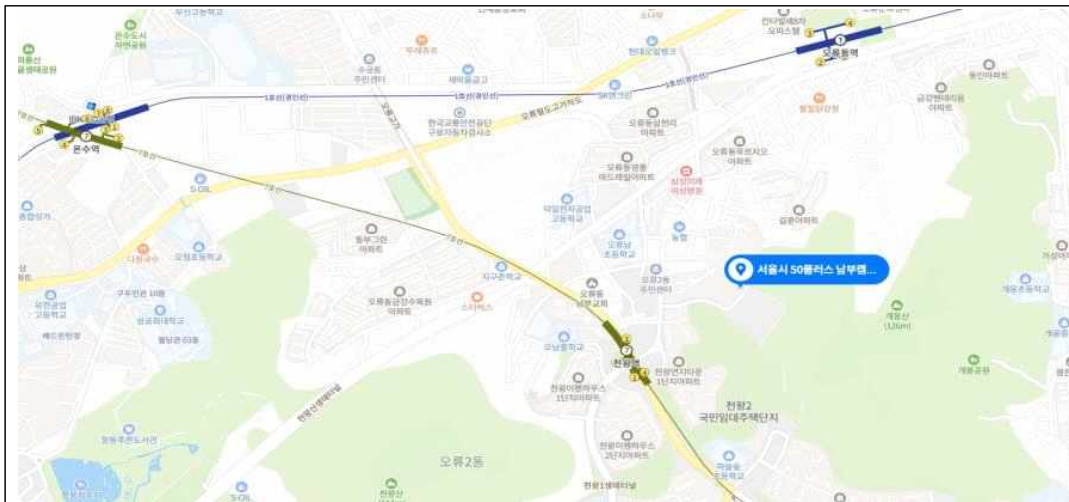
- 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 시설규모 : 연면적 4,509.9㎡ 지하1~지상4층
- 위치도



지역여건 : 5호선·6호선·경의중앙선·공항철도 공덕역 2번출구 도보 약 7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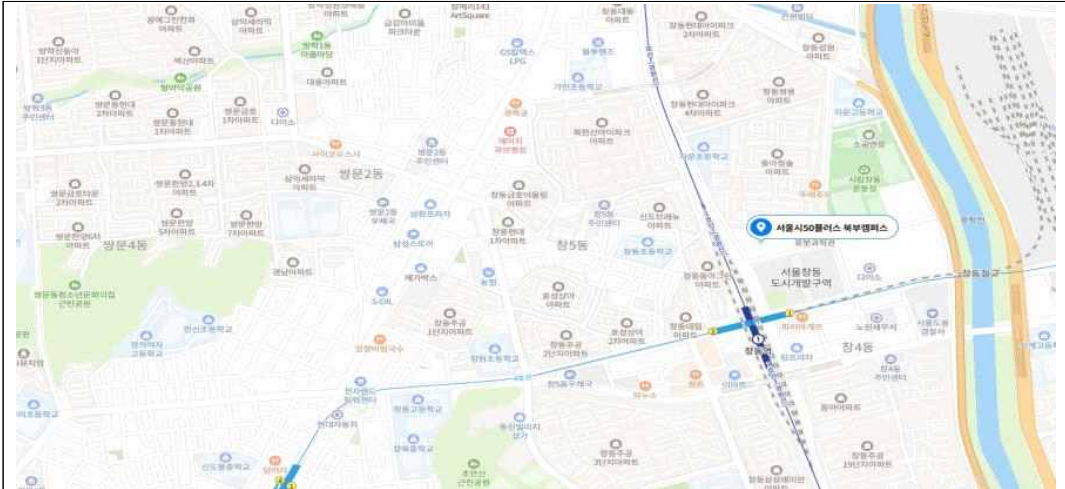
○ 서울시50플러스 남부캠퍼스(' 18.3월 개관)

- 소재지 : 서울시 구로구 오류로 36-25
- 시설규모 : 연면적 3,755.28㎡ 지하1~지상4층
-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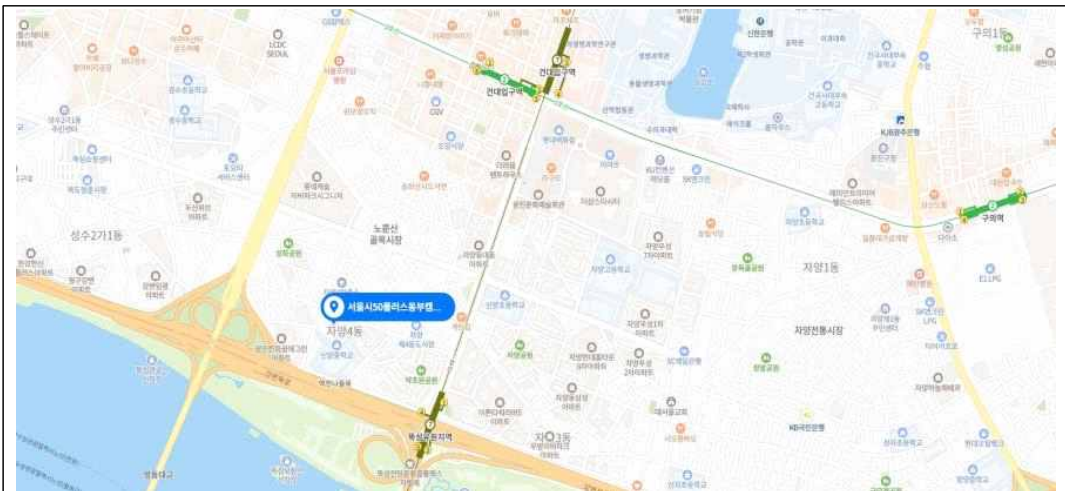
지역여건 : 7호선 천왕역 3번 출구 도보 5분

- 서울시50플러스 북부캠퍼스(' 20.11월 개관)
 - 소재지 :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13길 84
 - 시설규모 : 연면적 6,280.62㎡ 지하1~지상3층
 - 위치도



지역여건 : 1호선 · 4호선 창동역 1번 출구 도보 4분

- 서울시50플러스 동부캠퍼스(' 24.12월 개관 예정)
 - 소재지 :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57-153
 - 시설규모 : 연면적 6,155.94㎡ 지하3~지상4층
 - 위치도



지역여건 : 7호선 독섬유원지역 4번 출구 도보 6분

바.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붙임1)

○ 출연금액 : 18,992백만원

－ 인건비 8,655백만원, 운영경비 등 1,914백만원, 사업비 8,423백만원

※ 예산 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사. 이사회 결의서 : 붙임2

아. 결산보고서 : 붙임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예산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작성자 :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허준오 (☎ 2133-3963)

붙임1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사업별 예산(안)

(단위: 천원)

구 분		2025년 편성안
합 계		18,992,165
사업비 소계		8,423,115
1. 경력 활용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연계		1,805,000
	중장년 경력인재 지원사업(舊 인턴십) [서울런4050]	1,405,000
	일자리 컨설팅(舊 취업컨설팅) [서울런4050]	100,000
	중장년 채용설명회 [서울런4050]	30,000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 [서울런4050]	270,000
2. 직업전환 및 유지를 위한 리스킬링 강화		956,000
	디지털 직무 역량 강화 [서울런4050]	245,000
	4050 직무훈련 [서울런4050]	350,000
	40대 재직자 직업전환 훈련 [서울런4050]	300,000
	퇴직 준비 설계 [서울런4050]	61,000
3. 중장년 지속가능 일자리 환경 조성		229,000
	중장년 고용지원사업 [신규]	80,000
	창업 공간지원	29,000
	창업 보육컨설팅 [서울런4050]	120,000
4. 중장년 종합지원 체계 운영		210,000
	중장년 정책 확산 및 교류	16,000
	중장년 사업 활성화 지원 및 성과 관리	194,000
5. 중장년 정책 연구 및 확산		250,000
	정책기획 연구과제 수행	250,000
6. 온·오프라인 인프라 구축		4,665,199
	시민 이용 공간 시설 및 안전 관리	3,015,599
	디지털 인프라 조성 및 정보시스템 운영 [서울런4050]	1,649,600
7. 고객만족경영 및 경영혁신 강화		307,916
	중장년 통합 온라인 플랫폼 운영 및 시민소통 강화	218,200
	대외협력 강화 및 고객만족경영	11,800
	노사협력을 통한 사회적 책임 강화	31,476
	경영혁신 및 ESG 경영 기반 구축	1,900
	성과관리 체계 구축 및 관리	18,100
	청렴 및 인권경영 체계 구축 및 관리	26,440
일반관리비 소계		10,569,050

(단위: 천원)

구 분		2025년 편성안
합 계		18,992,165
인건비		8,655,364
운영경비		932,328
성과급		980,358
영업외비용(반환금)		1,000
예비비		0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4년 8월 12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는 市 평생교육 정책에 따른 전문적인 사업 수행체계를 마련하여 평생교육 진흥 및 지역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을 운영하고 있음
- 나. 이에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여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나. 추진근거

- (공통)법령 : 「민법」 제3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 (개별)법령 : 「평생교육법」 제20조
- 조 례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24조
‘시장은 진흥원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흥원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다. 출연의 필요성

- 서울시 평생교육 정책수행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평생교육 진흥·지원·전문기관으로써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을 지원하고,
- 서울시민을 위한 ‘학습인프라 강화’, ‘학습체계 고도화’ 등을 통해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하는 ‘서울형 평생학습생태계’ 를 구현하기 위함

라. 출연 사무내용

- 대학연계 평생교육 체계 강화
 - 서울마이칼리지 운영, 대학연계 평생교육 기반 구축 및 확산
- 평생교육 문화 확산 및 정책개발
 - 서울형 평생학습 동기부여 및 문화 확산, 평생교육 정책과제 연구·개발
- 광역 평생학습 체계 강화 및 교육약자 지원
 - 광역 평생학습 체계 강화, 찾아가는 약자동행 심리건강 인문학 지원 사업, 약자동행을 위한 문해교육 강화, 서울시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 운영
- 서울시 인문학 허브 구축
 - 중부권·동남권·모두의학교 캠퍼스 정규과정 운영, 온라인 시민대학 운영

- 시민대학 특화사업 운영
 - 중부권 · 동남권 · 모두의학교 캠퍼스 특화과정 운영, 4050 인생디자인학교 운영, 7학년 교실 운영
- 시민대학 성과관리 및 활성화
 - 명예시민학위제 운영, 시민대학 시민커뮤니티 운영, 시민대학 인적자원 발굴 및 지원, 시민대학 성과관리 및 통합 홍보
- 시민대학 캠퍼스 시설 운영
 - 서울시민대학 중부권 · 동남권 · 모두의학교 캠퍼스 시설 및 공간 관리
- 다시가는 캠퍼스(관악북합평생교육센터) 운영
 - 다시가는 캠퍼스 정규과정 · 특화과정 운영, 커뮤니티/일자리연계 지원, 홍보 및 행사 운영, 캠퍼스 시설 및 공간관리

마.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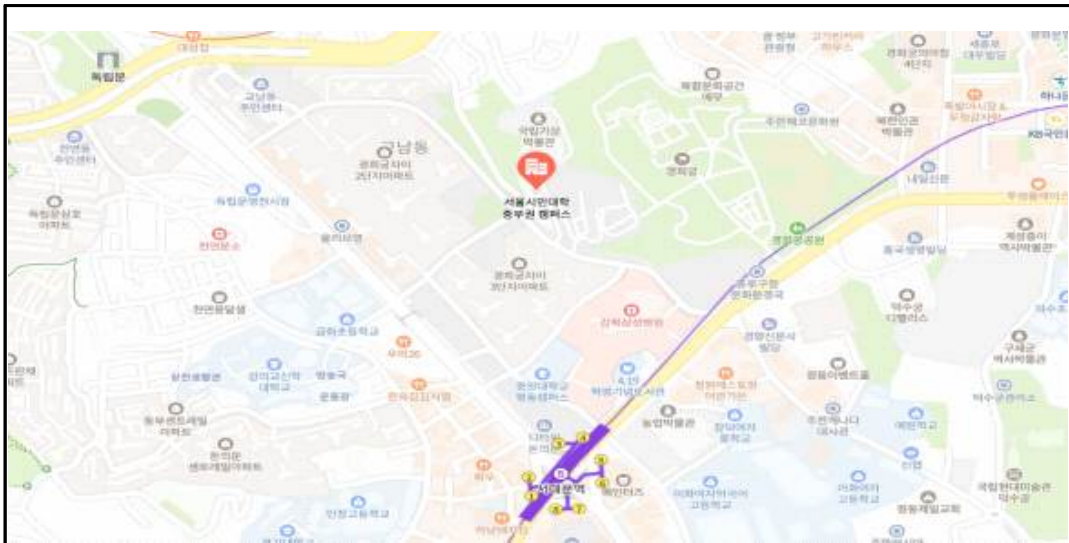
- 평생교육진흥원 본원
 -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창로 7, SNU장학빌딩 14층
 - 시설규모 : 331㎡(사무실, 회의실1, 강의실1)
 - 위치도



지역 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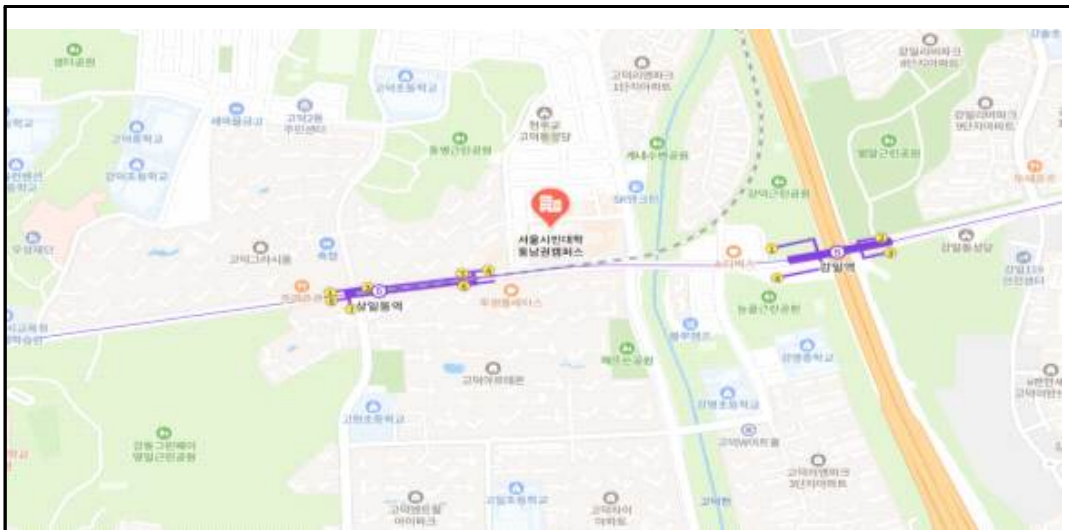
지하철 56호선, 경의중앙선 공덕역에서 도보 5분

- 서울시민대학 중부권 캠퍼스(' 18년 3월 개관)
 -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송월길 52
 - 시설규모 : 1,485㎡(강의실, 회의실, 다목적홀 등)
 - 위치도



지역 여건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에서 도보 12분

- 서울시민대학 동남권 캠퍼스('21년 4월 개관)
 - 소재지 :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 399
 - 시설규모
 - 지상 7,211㎡(강의실, 다목적홀, 도서공간 등)
 - 지하 4,600㎡(주차장, 기계·전기실 등)
 - 위치도

지하철 5호선 상일동역에서 도보 3분

바.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붙임1)

○ 출연금액 : 13,223백만원

－ 인건비 4,192백만원, 운영경비 2,048만원, 사업비 6,356백만원, 예비비 627백만원

※ 예산 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사. 이사회 결의서 : 붙임2

아. 결산보고서 : 붙임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예산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작성자 :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강성준 (☎ 2133-3966)

붙임1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사업별 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2025년 예산(안)
합 계		13,222,910
고유사업비 소계		6,355,995
1. 대학연계 평생교육 체계 강화		525,110
	서울마이칼리지 운영	507,110
	대학연계 평생교육 기반 구축 및 확산	18,000
2. 평생교육 문화 확산 및 정책개발		684,550
	서울형 평생학습 동기부여 및 문화 확산	333,060
	서울시 평생교육 정책 과제 연구·개발	351,490
3. 광역 평생학습 체계 강화 및 교육약자 지원		539,145
	광역 평생학습 체계 강화	93,460
	찾아가는 약자동행 심리건강 인문학 지원사업	66,725
	약자동행을 위한 문해교육 강화	310,890
	서울시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 운영	68,070
4. 서울시 인문학 허브 구축		619,220
	중부권 캠퍼스 정규과정 운영	197,780
	동남권 캠퍼스 정규과정 운영	187,950
	모두의학교 캠퍼스 정규과정 운영	141,690
	온라인 시민대학 운영	91,800
5. 시민대학 특화사업 운영		582,455
	중부권 캠퍼스 특화과정 운영	79,720
	동남권 캠퍼스 특화과정 운영	207,535
	모두의학교 캠퍼스 특화과정 운영	124,060
	4050 인생디자인학교 운영	33,680
	7학년 교실 운영	137,460
6. 시민대학 성과관리 및 활성화		430,875
	명예시민학위제 운영	180,665
	시민대학 시민커뮤니티 운영	63,270
	시민대학 인적자원 발굴 및 지원	27,410
	시민대학 성과관리 및 통합 홍보	159,530
7. 시민대학 캠퍼스 시설 운영		818,856
	중부권 캠퍼스 시설 및 공간 관리	206,840
	동남권 캠퍼스 시설 및 공간 관리	418,041
	모두의학교 캠퍼스 시설 및 공간 관리	193,975
8. 다시가는 캠퍼스(관악복합평생교육센터) 운영		2,155,784
	다시가는 캠퍼스 정규과정 운영	191,350

구 분		2025년 예산(안)
	다시가는 캠퍼스 특화과정 운영	348,520
	다시가는 캠퍼스 커뮤니티/일자리연계 지원	49,500
	다시가는 캠퍼스 홍보 및 행사 운영	112,000
	다시가는 캠퍼스 시설 및 공간관리	1,454,414
일반관리비 소계		6,240,369
	인건비	4,192,059
	운영경비	2,048,310
예비비 소계		626,546
	정-현원차 예비비	27,346
	예비비(관악북합평생교육센터)	599,200

서울시 기후테크 펀드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출자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4년 8월 12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는 2050 탄소중립 달성 등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견인하기 위해 ' 11년부터 녹색기업 창업펀드를 조성하는 등 녹색산업 육성책을 펼치고 있음.
- 나. 특히,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하는 기술인 기후테크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각되고 있어, 관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펀드를 조성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전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59조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
-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23조

나. 필 요 성

- 지속적인 온실가스 배출로 새로운 기술 적용 없이는 탄소중립 실현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혁신기술을 가진 기업 육성 필요
- 기후테크 산업의 투자·회수의 불확실성 등의 사유로 초기 민간투자가 미흡함에 따라 공공부문의 집중적인 지원 필요
- 성장 가능성 있는 기후테크 벤처·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선순환 생태계(투자 → 성장 → 자금회수 → 재투자) 조성 필요

※ 기존 녹색기업 창업펀드 조성 및 추진 실적

(단위 : 억원)

구분	조성년도 (운용사)	준속기간 (투자/회수)	결성 금액	서울시 출자액	서울 녹색기업 투자집행액 (총 투자집행액)	서울 녹색기업 투자 수 (총 투자기업 수)
			805	90	128 (569.7)	15 (69)

구분	조성년도 (운용사)	존속기간 (투자/회수)	결성 금액	서울시 출자액	서울 녹색기업 투자집행액 (총 투자집행액)	서울 녹색기업 투자 수 (총 투자기업 수)
1호	2011년 (서울투자파트너스)	7년 (4년/3년)	160	20 (SBA 출연금)	40 (138.7)	5 (16)
2호	2012년 (디에스씨인베스트먼트)	8년 (4년/4년)	100	20 (SBA 출연금)	20.5 (96.4)	4 (19)
3호	2013년 (메디치인베스트먼트)	11년 (3년/8년)	200	20 (市 중소기업육성기금)	45 (207.1)	3 (20)
4호	2017년 (코메스인베스트먼트)	8년 (4년/4년)	145	10 (SBA 기금)	22.5 (127.5)	3 (14)
5호	2023년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	8년 (3년/5년)	200	20 (市 중소기업육성기금, 3호 펀드 회수금)	설립 출자금 납입(' 23.12.1) 기업발굴 및 투자 진행 중	
6호	-	8년 내외	200이상	20 (市기후대응기금)	투자운용사 선정중(' 24.8월 중)	

3. 기후테크 펀드 출자 계획

가. 추진방향

- 정부 정책펀드와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펀드 운용
 - ▶ 정부출자기관(모태펀드 등)과 민간투자를 확보하여 안정적 재원 확보
- 탄소중립 달성을 위하여 미래 新성장 동력인 기후테크 기업 집중 육성
- 市 기후테크 산업 육성 정책과 연계하여 초기 벤처·창업기업 생존 및 성장 지원
- 우수 펀드 운용사를 선발, 회수자금을 재투자하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
 - ▶ 펀드 운용 전문성이 높은 벤처캐피탈을 선발하여 수익 안정성 확보
 - ▶ 회수 자금 재투자를 통한 선순환 기후테크 산업 생태계 및 기업성장 환경 조성

나. 출자금액 : 20억원

- 출자재원 : 기후대응기금

다. 기후테크 펀드 조성 계획

- 펀 드 명 : 기후테크 펀드
- 조성목표 : 200억원
 - ▶ 서울시(20억원), 모태펀드(결성예정액의 지정출자비율), 민간출자자 등
- 조성형태 :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투자대상 : 서울 소재 기후테크 분야 창업 또는 벤처기업 등
 - ▶ 서울 소재 기후테크 기업(창업기업·벤처기업) : 서울시 출자금의 200% 이상
 - ▶ 초기 창업기업(창업 3년 이내) 또는 설립 후 연간 매출액이 20억을 초과하지 않은 기업 : 서울시 출자금의 100% 이상
- ※ 투자대상은 펀드운영위원회 자문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71조(기금의 투자 등) ①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을 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벤처투자를 하거나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②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운용계획의 범위에서 벤처투자를 하거나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는 같은 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에서 벤처투자를 하거나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④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1. 벤처투자조합
2. 모태조합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59조

제59조(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은 녹색기술·녹색산업에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거나 보증조건 등을 우대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

산세·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매년 녹색기술·녹색산업 관련 기업이나 연구기관 등의 고충을 조사하고 불합리한 규제 등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계 기관에 대하여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고충조사,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23조

제23조(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 ① 시장은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 실증사업에 대한 실증장소 및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소득세·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때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등의 업무를 서울시 출자·출연 기관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기금 예산 반영

※ 작성자 :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박지미 (☎ 2133-3619)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출자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4년 8월 12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는 친환경 에너지의 이용, 보급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 16.12월 서울에너지공사를 설립하였으나, 안정적인 열공급 및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노후 열수송관 적기 교체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 다.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수권자본금 범위 내에서 서울에너지공사에 현금으로 출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자개요

- 대 상 : 서울에너지공사
- 출자규모 : 20,000백만원
 - 노후 열수송관 교체 : 20,000백만원

(단위 : 억원)

사업명	소계	' 22년	' 23년	' 24년	' 25년	' 26년
합 계	659	59	200	140	200	60
노후 열수송관 교체사업	659	59	200	140	200	60

나. 출자 필요성

-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열수송관의 노후화가 지속 진행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해 노후 열수송관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이를 위하여 ' 25년 사업비를 출자하고자 함
 - ' 25년 노후 열수송관 6.1km 교체 (' 26년까지 총 22.6km 교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방공기업법]

제53조(출자) ① 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③ 항 생략

나. 예산조치 : ' 25년 서울에너지공사 출자금 예산 반영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김보영 (☎ 2133-3554)

시청자미디어재단 서울센터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4년 8월 12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시청자의 미디어 접근권을 제고하고 권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서울시, 성북구청, 시청자미디어재단 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함(' 15. 12. 15.)
- 나. 업무 협약에 따른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2025회계연도 세출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출연 여부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사 업 명: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 나. 위 치: 성북구 길음로7길 20, 서울성북미디어문화마루
- 다. 규 모: 지상 1~3층(연면적 2,925.23㎡, 전용 1,791.1㎡)
- 라. 사업주체: 시청자미디어재단(방송통신위원회 산하 기타공공기관)
- 마. 주요시설: 디지털교육실, 장애인방송제작실, 편집실, 사무실 등
- 바. 주요사업
- 미디어 교육 지원: 미디어체험 프로그램, 콘텐츠 제작 교육 등
 - 시청자 방송참여 지원: 방송제작을 위한 시설장비 무료대여 등
 - 소외계층 방송교육 지원: 장애인 방송 서비스 제작 지원 등
- 사. 출연금액(안): 292,100천원
- 시청자미디어재단 서울센터 총운영비(1,460,500천원)의 20% 분담 (인건비 80,300천원, 경상비 211,800천원) ※ 사업비 제외
- 아. 출연의 필요성
- 서울시민의 미디어 접근권을 제고하고 권익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에 따라 시청자미디어재단 서울센터의 운영비 지원 필요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

제4조(운영비 분담) ①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운영비는 센터 구축에 필요한 신규 시설장비와 관련된 비용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담한다.

1. 방송통신위원회는 운영비의 60%를 분담한다.
2. 서울특별시와 성북구는 각각 운영비의 20%를 출연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방송법」 제90조의2

제90조의2(시청자미디어재단)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2025 회계연도 예산편성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홍보기획관 홍보담당관 안주희(☎2133-6442)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4년 8월 12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는 대시민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중심의 소통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종합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나.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120다산콜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개요

-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출연금)
 - ▶ “시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나. 주요 사업

-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운영 (120다산콜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
 - 시정·구정 상담서비스 제공
 - 시민소통 상담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분석
 - 상담 전문인력 확보 및 양성
 - 시민중심 맞춤형 상담서비스 발굴
 - 시정상담 서비스의 효과적 전달방안 연구
 - 시정 특수목적 및 임시 상담서비스 수탁 수행
 - 재단 사업 관련 업무시설 관리
 - 상담관련 전산장비 구축·운영 및 관리
 -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다. 출연의 필요성

- 시민중심 맞춤형 종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정 전문상담기관 기능을 수행하여 시민서비스 질 향상 및 시민중심 소통행정 실현
- 상담관련 과학적 데이터 축적과 분석을 통해 시정서비스 개발 및 제공

라. 기관현황

- 소재지 : 서울시 동대문구 난계로 28길 23
- 규모 : 연면적 4,615m² (지하1~지상5층)
- 위치도 및 전경사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홍보기획관 민원담당관 이미현 (☎2133-6542)

붙임

2025년도 120다산콜재단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 25년 예산(안)
계		38,928,878
세입	출 연 금	37,631,063
	결산잉여금	1,297,815
계		38,928,878
세출	사업비	9,458,212
	상담시스템 구축 및 운영	8,833,058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1,718,895
	상담정보시스템 운영	1,635,721
	상담 체계 운영	83,174
	스마트상담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	7,114,163
	스마트상담센터 구축	6,500,000
	스마트상담센터 운영 활성화	614,163
	상담 역량 강화 및 감정노동 보호	625,154
	상담 역량 강화	244,939
	역량강화 교육	229,419
	상담지식정보 현행화	15,520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강화	380,215
	감정노동 보호 프로그램 운영	272,495
	악강성 민원 전담 관리	107,720
	인건비	20,600,960
	보 수	17,421,452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71,521
	기간제근로자 보수	249,523
	퇴직급여	2,458,464
	운영비	8,686,327
	경 비(일반운영비 등)	5,981,684

구 분		' 25년 예산(안)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554,440
	성과급	2,150,203
	예비비	183,379
	예비비	183,379

※ 예산편성 과정에서 변경 가능함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4년 8월 12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는 급변하는 관광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서울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해 나가기 위해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나. 이에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5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서울관광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1) 사 무 명 : 서울관광재단 출연금
- 2) 추진 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3) 필 요 성 : 서울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하기 위해 설립된 서울관광재단의 운영을 지원하고, 외래관광객 3천만명 달성을 목표로 국내외 관광홍보 및 마케팅 사업, 관광콘텐츠 확충 및 관광객 편의 개선 등 사업수행을 위해 출연 필요
- 4) 사무내용
 - 관광자원 개발 및 상품화 등 관광콘텐츠 확충
 - 국내외 관광홍보 및 마케팅
 - 기업회의, 인센티브관광, 국제회의, 전시회 등 육성 지원
 - 관광정보 및 관광안내서비스 제공
 - 관광객 편의 및 관광여건 개선
 - 관광시장 조사연구컨설팅 및 정보제공
 - 관광기업 육성 및 지원 등
- 5) 출연예산(2025년) : 금79,426,236천원
 - 본부운영비(인건비, 경비 등) : 금18,096,499천원
 - 고유사업비 : 금61,329,737천원

※ 예산 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나. 서울관광재단 기관 개요

- 1) 소 재 지 :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85 삼일빌딩
- 2) 규 모 : 전용 6,941㎡, 9개 층(지상1층 일부, 4~11층, 6,941㎡)

3) 전경 및 위치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조치사항 : 2025년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임영선(☎2133-2811)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4년 8월 12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에서는 시민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 양질의 공연예술 활동을 제공하기 위하여 각종 사업을 수행하는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 나. 이에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1) 사 무 명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금
- 2)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
- 3) 필 요 성 : 서울의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 사업수행을 위하여 출연 필요
- 4) 사무내용
 - 음악연주활동 및 연주자 육성사업
 - 음악·공연 교육사업 및 조사·연구
 - 국내·외 공연예술단체와의 교류·협력
 -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위탁하는 사업
 - 그 밖에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한 부대사업

나.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기관 개요

- 1)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5
 - 2) 규 모 : 건물 2,043.58㎡
 - 3) 소요예산 : 22,587백만원
- ※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강민지 (☎ 2133-2527)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4년 8월 12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는 문화 예술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을 설립하고 법인의 운영 및 시설관리, 공연예술 등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음
- 나. 이에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1) 사 무 명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금
- 2)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 조례
- 3) 필 요 성 : 서울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공연, 전시, 세종문화회관 운영 등 문화 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출연 필요
- 4) 사무내용
 - 세종문화회관의 운영
 - 공연예술진흥 및 작품전시 활동과 그 보급
 -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 보급 및 조사·연구
 -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 그 밖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 5) 소요예산 : 49,495백만원
 - ※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나.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기관 개요

- 1) 소재지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5
- 2) 규 모 : 대지 21,083㎡, 건물 64,066㎡ (지하 3층, 지상 6층)
 - 공연장(세종대극장, M씨어터, 체임버홀, S씨어터), 전시관(세종미술관, 세종충무공이야기), 교육시설(세종예술아카데미) 등

3) 전경 및 위치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김영미 (☎ 2133-2519)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4년 8월 12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에서는 시민의 자율적인 문화 예술 활동을 진작시켜 서울의 문화 예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 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 예술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 나. 이에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서울문화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1) 사 업 명 : 서울문화재단 출연금
- 2)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3) 필 요 성 : 서울의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 사업수행을 위하여 출연 필요
- 4) 사무내용
 -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활동의 지원
 - 문화예술의 교육 및 연구
 -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 시민의 문화향수 및 창의력 증진
 - 지역문화의·육성 지원 및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5) 소요예산 : 60,641백만원
 - ※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나. 서울문화재단 기관 개요

- 1) 소 재 지 : 서울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용두동 255-67)
- 2) 규 모 : 대지 1,520.2㎡, 건물 2,367.41㎡ (6층 건물)

3) 전경 및 위치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정유진 (☎ 2133-2555)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4년 8월 12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는 서울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전문적이고 내실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울시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나. 이에 서울시복지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5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서울시복지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연 개요

○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구 분	시설현황
본 관	- 위 치 :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5층, 8~10층) - 전용면적 : 3,665㎡ - 주요시설 : 감사실, 연구평가본부, 사업1본부(복지협력실), 사업2본부(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경영기획실 등 
흑석동 별 관	- 위 치 : 서울시 동작구 현충로 75, 원불교 소태산기념관(6층) - 전용면적 : 814.64㎡ - 주요시설 : 사업1본부(복지사업실, 서울복지교육센터), 사업2본부(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등 

○ 관련법령

- 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조례 :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주요사업

- 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 복지 분야의 평가심사 및 인증
- 복지 분야의 교육 및 자문

- 복지 분야의 프로그램 개발·보급
-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 지역복지 활성화 지원
-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금융복지서비스 지원 등

다. ' 25년 총 소요예산(안) : 80,709,888천원

라. ' 25년 예산 산출근거(안)

- 사 업 비 : 57,196,320천원
- 일반관리비(인건비, 운영경비 등) : 23,513,568천원
- ※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마. 출연의 필요성

-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 선도적 복지정책 개발 및 확산, 사회서비스 품질 강화, 지역중심 복지통합 서비스 지원, 시민 일상 속 복지욕구 대응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복지공동체 서울을 만들기 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예산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복지실 복지정책과 이수호 (☎ 2133-7332)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4년 8월 12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는 실질적 양성평등의 실현, 서울여성의 능력향상과 사회참여 활성화, 복지증진 및 아동의 권리 보장, 가족 다양성 지원 및 보육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나.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여성가족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개요

-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 소 재 지 :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대방동) 등
 - 운영시설 : 서울여성플라자 및 서울가족플라자
 - 서울여성플라자 : 지상 5층, 지하 3층(연면적 22,520㎡)
 - 서울가족플라자 : 지상 2층, 지하 2층(연면적 14,710㎡)



서울여성플라자



서울가족플라자

○ 근거법령

- 법 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조 례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기금 및 출연금 등) ② 시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나. 주요사업

- 여성·아동·가족·보육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 여성·아동·가족·보육 분야의 평가·심사 및 인증
- 여성·아동·가족·보육 분야의 교육 및 자문
- 여성·아동·가족·보육 분야의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보급
- 여성·아동·가족·보육 분야의 당사자 및 서비스 종사자 권리 보장에 필요한 지원
- 국내외 여성·아동·가족·보육 분야 기관과의 연계·교류 및 민간 협력
- 서울여성플라자 및 서울가족플라자의 운영·관리 등

다. ' 25년 소요예산(안) : 19,396,791천원

라. ' 25년 예산 산출근거(안)

- 사업비 : 8,604,635천원
- 일반관리비(인건비, 운영비 등) : 10,792,156천원
- ※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마. 출연의 필요성

- 서울시 여성가족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정책 연구·개발 및 시민체감형 양성평등 정책 실행을 위해 설립된 서울여성가족 재단 운영 지원을 통해,
- 양성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 서울여성의 경력 활성화, 아동의 권리 보장, 그리고 평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가족생활 지원 및 보육 공공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3(출자·출연의 동의)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예산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여성가족실 저출생담당관 이단희 (☎ 2133-5010)

붙임 이사회 회의록 및 결산보고서 각 1부. 끝.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4년 8월 12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에서는 택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개량·공급 및 관리 등을 통한 서울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운영하고 있음
- 나. 이에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지원하고자 출자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자 개요

- 대상기관 : 서울주택도시공사
- 관련법령
 - 법 령 : 지방공기업법
 - 조 례 :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주요사업

- 매입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 민간토지를 활용한 민간참여 장기전세 주택 공급

다. 출자의 필요성

-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공급 사업은 서울시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하고 많은 자금이 수반되는 사업이며, 실제 주택의 건설 및 공급은 실행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
- 따라서, 서울시 서민주거안정 정책의 실행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출자금으로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주택실 주택정책과 서영진(☎2133-7019)

[붙임1] 서울주택도시공사 개요

구 분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목적		택지개발공급 주택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
설립일		' 89. 2. 1.
대 표 자 (임기)		김 현 동 2021.11.15. ~ 2024.11.14.
조 직		7본부, 6실, 1원, 25처, 1단, 99부, 26센터 12TF (*한시조직 1단 별도)
임원 현황	정 원	15명 (비상임이사 포함)
	현 원	15명 (비상임이사 포함)
정원 내	정 원	1,386 (임원 포함)
	현 원 (결 원)	1,371 (-15)
	%	99%
정원 외	무기	100
	기간제	49
	단시간	-
자본금	수 권	80,000억원
	납 입	74,097억원
' 24 예산		50,786억원
' 24 市 출자금		3,155억원
주요사업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 24년 계획 총 22,071호(신규공급:13,666호, 재공급 : 8,405호)
		주택건설 사업 추진 - 8개 단지, 6,130세대 택지조성 사업 추진 - 17개 지구 13,999천㎡ 노후 임대단지 재정비 추진 - 하계5 시범사업 추진 - 상계마들 시범사업 추진 주거복지 종합지원 서비스 제공 - 1구 1주거안심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 저소득층, 1인가구 등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 확대
		임대주택 유지·보수 등 관리 - 664개 단지 239,537세대

[붙임2] 서울주택도시공사 2025년 출자사업(출자금) 내역

(단위:백만원)

사업명	2025년 (출자금)	산출내역
총 계	419,252	
일반(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사업	119,974	① 매입비 (지하) 56,000천원 *400호*50% = 11,200,000천원 (지상) 116,000천원*600호*50% = 34,800,000천원 (신축약정) 227,590천원*500호*50% = 56,897,500천원 ② 정산비 : 17,076,000천원
청년 매입임대주택 사업	50,000	① 매입비 : 100,000천원*1,000호*50% = 50,000,000천원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사업	187,500	① 매입비 (신혼부부 I) 234,000천원*500호*50% = 58,500,000천원 (신혼부부 II) 129,000천원*2,000호*50% = 129,000,000천원
계획적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지원	4,343	① 정산비('20~22년 매입한 자율주택 151호) - ' 20년(30호) : 469,222천원 - ' 21년(100호) : 3,779,275천원 - ' 22년(21호) : 95,472천원
청년안심주택 SH 선매입	48,470	① 매입비 : 48,470,000천원 - 청년: 832호*(350,000-253,000)천원*50% = 40,352,000천원 - 신혼 I : 99호*(450,000-286,000)천원*50% = 8,118,000천원
공공주택 건설 (추가8만호, 통합공공임대주택)	8,965	① 명일1동주민센터 공공주택복합화사업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6,534,000천원 - ' 25.03. 착공 예정, '27.09. 준공 예정 ② 방화차고지 공공주택건설사업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1,337,000천원

사업명	2025년 (출자금)	산출내역
		- ' 25.03. 착공 예정, '27.03. 준공 예정 ③ 중랑창업지원센터 복합화사업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1,093,638천원 - ' 25.06. 착공 예정, '28.07. 준공 예정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4년 8월 12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는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시민복리를 증진하고, 서울특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디지털재단’ 을 운영하고 있음
- 나. 이에 서울특별시 디지털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5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 편성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상기관 : 서울디지털재단

나. 출연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다. 출연 필요성

- 디지털 선도도시 구현을 위해 AI·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연구 및 서비스 개발로 행정혁신 가속화 지원
- 디지털 기술 기반의 도시문제 해결을 통한 시민 편의 증진 및 디지털 약자·소외계층의 격차 해소 지원
-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도시 생태계 활성화

라. 출연 사무내용

- 첨단 디지털 기술 및 스마트도시 분야 정책연구 및 컨설팅
- 첨단 디지털 기술 및 스마트도시 관련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시민들의 디지털 역량강화
- 디지털 격차해소 사업
- 빅데이터 관련 교육, 컨설팅, 공공·민간데이터 활용 사업
- 디지털 기술 및 스마트도시 분야 국제협력 등

마. 서울디지털재단 기관 개요

- 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에스플렉스센터 스마트움 16층
- 규모(전용) : 1,738(700)m²

○ 위치도



지역여건

지하철 디지털미디어시티역(경의중앙선, 공항철도, 6호선)에서 도보 15분

바.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붙임1)

- 출연금액 : 16,520,732천원 ※ 예산편성 과정에서 변경 가능
○ 산출근거 : 사업비 10,614,240천원, 행정운영경비 4,458,203천원, 예비비 1,448,289천원

사. 이사회 회의록 : 붙임2

아. 결산보고서 : 붙임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25년 예산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디지털도시국 디지털정책과 김정택 (☎ 2133-2919)

붙임 1

서울디지털재단 2025년 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명	' 25 년 예산안
AI 행정 연구개발	소 계	3,622,400
	AI 행정 연구개발	3,622,400
디지털 정책연구	소 계	328,800
	디지털 정책연구	328,800
도시데이터 활용 컨설팅	소 계	350,000
	빅데이터 분석	350,000
공공데이터 활용·분석 지원	소 계	232,000
	공공데이터 분석 역량 제고	162,900
	공공데이터 활용 확산	69,100
디지털약자 역량 강화	소 계	883,000
	어르신 디지털 나들이 지원단 운영	793,000
	포용기술 디지털 체험버스 운영	90,000
서울스마트 시티센터 운영	소 계	674,260
	디지털 오픈랩 프로그램 운영	295,000
	서울스마트시티센터 활성화	83,200
	서울스마트시티센터 인프라 운영	296,060
스마트도시 솔루션 대외 교류·확산	소 계	4,523,780
	스마트라이프워크 운영	3,950,000
	해외 전시 서울관 조성 및 운영	275,750
	글로벌 도시간 교차실증 지원	298,030
행정운영 경비	소 계	4,458,203
	인력운영비	2,757,366
	기본경비	1,700,837
예비비	소 계	1,448,289
	인력증원 예비비	878,393
	일반 예비비	569,896
합 계		16,520,732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4년 8월 12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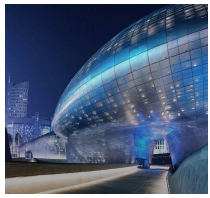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는 디자인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디자인 문화 확산 및 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의 수행을 위해 설립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 나. 서울디자인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개요

○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구 분	시설현황	
서울 디자인재단	- 위 치 : 서울시 종로구 을곡로 283 - 규 모 : 사용면적 2,695㎡ (지하1층, 지상1,3층, 지상6~9층) - 시설소유 : 디자인정책관 디자인정책담당관 - 주요시설 : 경영본부, 디자인진흥본부 등 사무실	
DDP 등 (수탁사업)	- 위 치 : 서울시 중구 을지로 281 - 시설소유 : 디자인정책관 디자인정책담당관(관리위탁) - 주요시설 :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동대문역사 문화공원(이간수문전시장 외 3개소), DDP운영본부 사무실	
서울디자인 창업센터 (교유사업)	- 위 치 : 서울시 마포구 신촌로2길 19 - 규 모 : 사용면적 2,987㎡(지상3~5층) - 시설소유 : ㈜마포애경타운(시 무상사용) - 주요시설 : 입주기업 창작공간, 컨퍼런스 홀, 멤버십 라운지, 운영 사무실 등	

구 분	시설현황	
서울새활용 플라자센터 (수탁사업)	- 위 치 : 서울시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9 - 규 모 : 사용면적 16,530㎡ (지하2~지상5층) - 시설소유 :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민간위탁) - 주요시설 : 꿈꾸는 공장, 소재은행, 미디어룸, 창작실 등	

○ 근거법령

- 법 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조 례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주요사업

-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의 운영
- 서울디자인지원센터 및 서울디자인창업센터의 운영
- 디자인정책 연구사업과 디자인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 조사 연구 및 전시·보급
- 디자인산업 지원 및 문화 확산
- 디자인 진흥 및 작품 전시활동과 그 보급
- 디자인의 국·내외 교류사업
- 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등

다. ' 25년 소요예산(안) : 35,665,335천원

- 사 업 비 : 22,566,330천원
- 일반관리비(인건비, 운영비) : 13,099,005천원
- ※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라. 출연의 필요성

-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디자인 문화 확산 및 산업 진흥을 전문으로 하는 서울디자인재단의 활동에 필요한 재원의 출연 필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3(출자·출연의 동의)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예산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디자인정책관 디자인정책담당관 김혜경 (☎ 2133-2704)

붙임 : 이사회 회의록 및 결산보고서(별첨)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출자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4년 8월 12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지하철 이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출자기관인 서울교통공사를 설립하였음
- 나. 서울 지하철은 개통된지 30년 이상 경과하여 노후화가 가중되고 있고 수도권 교통망 확대로 이용객이 증가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차량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개량이 필요함
- 다. 이에 시민 안전 제고 및 지하철 이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후시설 재투자, 전동차 증차 등 주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2025회계연도 서울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사전에 그 동의를 얻고자 함

2. 제안내용

가. 출자개요

- 대상기관 : 서울교통공사
- 출자규모 : 3,663억 원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출자 현황

○ 주요 안전투자사업 : 13개 사업 3,663억 원

(단위 : 천원)

구 분	출자액(안)	비 고
계	366,342,917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35,762,400	- (국비매칭) 6개 분야 21개 사업 (전기, 통신, 궤도, 신호, 구조물, 건축)
지하철 5~8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42,969,500	- 5개 분야 12개 사업 (전기, 통신, 궤도, 신호, 건축)
서울교통공사 지하철역 화장실 확충	3,730,500	- 사당, 약수 등 13개역 개선
서울교통공사 노후전동차 교체	127,015,000	- (국비매칭) 1~8호선 노후전동차 교체 6~10차 사업분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공기질 개선	19,666,267	- (국비매칭) ' 24년 미매칭 시비 및 ' 25년 매칭비(환기설비 교체 등)
서울지하철 스마트관제센터 구축	113,068,750	- 건축물 공사 및 관제시스템 제작 등
가산디지털단지역 출입구 신설 및 확장	2,405,000	- 출입구 확장(2개소) 잔여 공사
지하철 승강장 자동안전발판 설치	9,239,500	- 자동안전발판 326개소 및 연단경고등 169개소
지하철 방음벽 설치 및 고가구조물 보강	2,000,000	- 지상구간 소음저감 (대림~구로디지털단지~신대방 구간 0.1km)
4·7호선 전동차 증차 지원	5,380,000	- (국비매칭) 47호선 혼잡도 완화를 위한 증차
지상역사 동행쉼터 설치	1,925,000	- 승강장 35개소 고객대기실 설치
홍대입구역(2호선) 출입구 신설	181,000	- 출입구 신설 설계 및 지하안전평가 용역
4호선 운영필수시설 현업사무실 설치	3,000,000	- 4호선 운영필수시설 현업사무실(특수차 운전, 비상복구 등 유지관리 직원 상주공간) 설치

※ 사업개수 및 사업별 예산액은 예산편성·심의 과정에서 변동 가능

다. 출자의 필요성

- 서울시 지하철은 일 6백만명 이상의 시민이 이용하는 가장 대중적인 교통수단으로서 개통 후 30년 이상이 경과함에 따라 시설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수도권 교통망 확대로 이용객이 증가하여 시설투자 필요성이 높으나
- 서울교통공사는 법정 무임승차 제공, 저렴한 운임수준 유지 등으로 만성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어 노후시설 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서울시의 예산 지원이 필요함

3. 참고사항

가. 출자 대상기관 개요(현황)

기관현황

- ▶ 설립일자 : 2017. 5. 31.
- ▶ 설립목적 : 지하철 건설·운영(서울지하철 1~8호선) 및 부대사업 도시교통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
- ▶ 위 치 : 서울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용답동)
- ▶ 조 직
 - 본 사 : 6본부, 6실, 42처 / 현 업 : 1부문, 2원, 1단, 10센터, 58사업소
- ▶ 인 원 : 정원 16,592명/현원 16,865명 (' 24.7.31.기준)

나. 예산조치 :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끝.

※ 작성자 : 교통실 도시철도과 유경아(☎2133-4335)

서울특별시 제2서울핀테크랩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4년 8월 12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 가. ‘제2서울핀테크랩 운영’은 금융혁신을 이끄는 핀테크 분야 초기 스타트업에 발굴 및 육성하고, 여의도 서울핀테크랩과 연계하여 글로벌 유니콘 배출을 목표로 핀테크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서울의 디지털금융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 나. 제2서울핀테크랩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효과적인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초기 핀테크 스타트업에 특화된 인큐베이팅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본 사무를 위탁하고자 함
- 다.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해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으로 의결되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사업명 : 제2서울핀테크랩 운영
- 나. 위탁기간 : 2년('25.1.~'26.12.)
- 다. 소요예산 : 980,648천원('24년 기준)
- 라.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마. 위탁사무 내용
- (입주기업 관리) 모집·선정 및 평가, 공간 관리, 사용료 징수 등
 - (경영안정화 지원) 진단컨설팅, 기술·법률 등 멘토링, 교육 운영
 - (시장 진출 지원) BM고도화, 마케팅 지원, 인재채용 등 기획·운영
 - (투자유치 지원) IR Deck 제작, IR 밋업 및 데모데이 개최 등
 - (규제개선 지원) 혁신기술을 위한 규제 개선 간담회, 컨설팅 등 운영
 - (글로벌 진출 지원) 해외 전시회 참가, 글로벌 진출 컨설팅 등
 - (협력사업 추진) 국내·외 핀테크·금융사, VC, 유관기관 협업 추진
 - (성과조사) 입주 및 졸업기업 성과조사, 우수 사례 발굴 등
 - (시설관리)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의무이행 등
- 바.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
 -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18조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핀테크’라는 특화된 산업분야에 대한 육성과 스타트업의 성장 단계에 맞춘 인큐베이팅 시설 운영을 위해 고도의 전문지식, 경험 등을 바탕으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바, 민간의

전문적인 기관 및 단체에 위탁 운영이 필요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18조>

제17조(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 ① 시장은 금융산업을 육성하고 서울 금융중심지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1. 서울 금융중심지 내 국내외 금융기관 등을 유치하기 위한 시설
2. 금융기관 및 혁신금융서비스 창업자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시설
3. 혁신금융서비스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제18조(관리·운영의 위탁) 시장은 제17조에 따른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나. 예산조치 : 2025년 민간위탁금 편성(예정)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작성자 : 경제실 금융투자과 이루다 (☎ 2133-5249)

서울특별시 전자상거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4년 8월 12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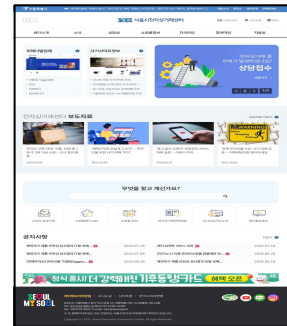
- 가. 서울특별시 전자상거래센터의 주요 업무는 능률과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전자상거래업체 모니터링 및 소비자상담으로, 조사 및 상담분야에서 상당기간 지식과 경험을 쌓아온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신속한 소비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04년 개소 시부터 민간위탁사무로 지속하여 추진해 왔음.
- 나. 급변하는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하는 전자상거래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새로이 등장하는 소비자문제에 신속히 대응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직영으로 운영하는 방식보다 민간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간 운영주체를 통한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재위탁하고자 함.
- 다. 이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회동의)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명 : 서울특별시 전자상거래센터 운영(사무형)

◇ 서울특별시 전자상거래센터 현황

- 개 소 : 2004.9.1. / 위 치 : 서소문별관 1동 14층
- ※ 홈페이지 : ecc.seoul.go.kr
- 수탁기관 : (사)한국소비자연맹(대표:강정화)
- 인 원 : 센터장 포함 7명
- 주요사업
- 전자상거래업체 전수 모니터링 및 DB 정비, 인터넷쇼핑몰평가
-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사기사이트 적발, 피해다발업체 명단 공개 등 시장감시 활동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소비자기본조례」 제19조 및 제20조
- 추진경위
- '04.02. : 전자상거래지원협의회 구성(운영방법 및 사업추진 방향 결정)

- '04.04. : 전자상거래센터 설치·운영계획 수립(소비자보호과-2652호)

- '04.04.~05.: 전자상거래센터 운영기관 공모 및 선정

- '04.05.~ :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운영' 민간위탁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대부분의 재화·용역이 거래되는 전자상거래 업무를 추진하는 전자상거래센터의 소비자상담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전자상거래 및 소비자 관련 다양한 전문지식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 서울시 소재 15만 여개 전자상거래업체에 대한 단순·반복의 전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검수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이 현저히 요구됨.

- 따라서 민간의 전문성과 능률성이 요구되는 사무로, 직영으로 운영 시 예산증가, 전문성 부족 등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탁운영 함으로서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민간부문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인건비 등 예산 절감 및 對 시민 서비스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임.

다. 위탁사무내용

○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시설·장비의 관리

○ 전자상거래업체 통합관리 시스템 및 업체 DB 구축

○ 신고·미신고 전자상거래업체에 대한 모니터링 및 활용

○ 센터 홈페이지 운영 및 수집된 개인정보 관리

○ 인터넷쇼핑몰 평가, 전자상거래 등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 기타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소비자보호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

라. 민간위탁기간 : 3년(2025.1.1.~2027.12.31.)

마.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바.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637백만원(' 25년 예산(안))

※ 산출근거 : 별첨 예산 내부내역 참고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소비자기본법

제12조(거래의 적정화)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약관에 따른 거래 및 방문판매·다단계판매·할부판매·통신판매·전자거래 등 특수한 형태의 거래에 대하여는 소비자의 권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소비자에의 정보제공)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가 물품등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물품등의 거래조건·거래방법·품질·안전성 및 환경성 등에 관련되는 사업자의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소비자분쟁의 해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가 신속·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기구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소비자기본조례

제19조(전자상거래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전자상거래 소비자의 권익을 위한 전자상거래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센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소비생활센터 및 전자상거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단체 등 외부 전문기관에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2항에 따른 위탁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⑤ 시장은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재위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나. 예산조치 : 2025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민생노동국 공정경제과 최은희 (☎2133-5372)

별첨**예산 세부내역(위탁 시작연도)**

□ '25년 위탁금 : 637백만원(12개월, '25.1월~12월)

(단위 : 천원)

계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637,047	344,906	237,727	54,869

□ 산출내역(안)

구분		산출금액(천원)
계		637,047
인 건 비		344,906
	8명(센터장 및 사업담당) 기본급	225,272
	제수당(연차수당, 직책수당, 급식보조비, 명절휴가비 등)	62,958
	퇴직충당금	27,548
	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29,128
사 업 비		237,727
	전자상거래업체 전수 모니터링(연2회)	소계 194,972
	▶모니터 활동비	191,850
	▶모니터단 교육 및 운영비	3,122
	인터넷 쇼핑몰 소비자만족도 평가	14,300
	홍보활동비(피해예방 콘텐츠 제작 등)	20,000
	자율규제 협의체 운영	8,000
운 영 비		54,869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39,781
	특근매식비 등 업무추진비	4,188
	자문위원회 운영	2,700
	통신비 및 임차료	4,200
	기타 운영비(여비, 소모품비, 사무용품비 등)	4,000

서울특별시 서울글로벌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4년 8월 12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는 지난 5월 도시경쟁력 제고와 해외 우수인재를 유치하여 성공적으로 서울에 정착하고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주민 정책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발표하였음.
- 나. 외국인을 포함한 서울시 글로벌 정책의 대외 창구이자 정주외국인에 대한 종합지원기관으로서 2008년 1월 서울글로벌센터를 개소하여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는바, 기존 수탁기관의 운영종료('24.12.31.)에 대비하여 새로이 역량 있는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 다. 서울시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민간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적정’의결)되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3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명 : 서울글로벌센터 운영
- 나. 시설개요
- 소 개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8, 4~5층(서린동 63)
 - 시설규모 : 821.65㎡ (4층 395.19㎡, 5층 426.46㎡)
 - 시설용도 : 외국인 유치 및 지원(교육·상담공간, 커뮤니티 공간 등)
- 다. 위탁개요
- 위탁유형 : 시설형(기간: 3년, '25.1.1.~'27.12.31.)
 - 위탁사무 : 해외 우수인재 유치 계획수립 및 인재 유치 활동 전개 해외 우수인재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서비스 개발·지원
외국인 주민의 우호적 정주환경 위한 종합 정보 제공 수탁기관과 협의를 통해 “시”가 지정하는 사업 등
- 라. 소요예산 : 1,799백만원(2024년 기준)
-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권고사항(외국인 인재유치 타게팅 전략 마련, 타 외국인 지원 시설과 차별화 전략)에 따라 2025년 예산 변동 가능성 있음
- 마.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서울글로벌센터는 외국인재를 유치하고 외국인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국어 생활 상담 및 전문 상담, 취·창업 연계, 비자 발급지원 등의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음.
 - 해당 사무는 시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무라 볼 수 없으며 전문지식과 경

협, 네트워킹이 등이 요구되는 사무임.

- 관련 역량과 현장 경험을 보유한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는 것이 이용자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민간위탁으로 지속 운영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나. 예산조치 : 2025년 예산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글로벌도시정책관 외국인주민담당관 유형 (☎ 2133-5062)

서울특별시 성북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4년 8월 12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 가. 외국인노동자센터는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상담·교육·문화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 지원시설로,
- 나. 전문기관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이며, 수탁기관의 수탁포기에 따라 재위탁 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제2항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개요

- 소 재 지 : 서울시 성북구 오패산로 16길 23 (하월곡동)
- 시설규모 : 23㎡ (월곡종합사회복지관 2층, 사무실)
 - ※ 사무실 외 기타 시설은 종합사회복지관과 시설 공유를 통해 센터 운영
- 주요시설 : 사무실, 상담실, 강의실, 강당 등
- 인력운영 : 4명 (센터장은 복지관장 겸임, 과장1, 대리1, 팀원2)

나. 주요 위탁 내용

- 위탁기간 : 3년(2025. 1. 1. ~ 2027.12.31.)
- 위탁업무
 - 성북외국인노동자센터 관리·운영 및 사업 일체
 - 일반 상담 및 법률, 노무 등 상담사업 운영
 - 한국어교육, 사회통합프로그램 등 교육사업 운영
 - 문화체험 행사, 의료지원, 인권문화다양성 사업 등 운영
 - 센터직원 채용 등 인사관리, 회계운영, 시설관리 등 센터 운영 전반
- 소요예산 : 283,561천원(2024년)
 - 산출근거 : 인건비 204,824천원, 운영비 11,737천원, 사업비 67,000천원
- 수탁기관 선정방법 : 재위탁
 -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 24.07.18)

다.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기존 외국인 노동자 위주에서 외국인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지원분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노동자센터”를 “외국인주민센터”로 명칭 변경
- 외국인주민을 위한 상담 및 교육사업, 문화지원 등 서비스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현장

- 에서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현재 위탁 운영 중인 사회복지법인 해명은 월곡종합사회복지관의 수탁기간 만료('24.6.30.)로 성북외국인노동자센터의 수탁 포기를 요청하였으며, 공모를 통한 신규 수탁기관의 선정이 필요함
 - 외국인주민의 한국생활의 적응력 향상 및 안정적 정착 여건 조성을 위해 공개모집을 통해 역량있는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재위탁 추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7조, 제18조 및 제20조

제7조(지원의 범위)

-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0. 외국인 노동자 권익 및 인권 보호

제18조(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

- ① 시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지원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법인·단체의 직원을 지원시설에 파견 근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단체·기관에 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이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시설 및 센터의 운영지원 등)

- ① 시장은 제18조제3항이나 제19조제3항에 따라 지원시설 또는 지원센터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2025년 예산편성 요구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서울시 성북외국인노동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
(가족다문화담당관-9810, 2024.6.20.)

※ 작성자 : 글로벌도시정책관 다문화담당관 김정애 (☎2133 -8690)

서울시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24년 8월 12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는 한국사회 정착 등에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한 교육·상담·문화교류 사업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외국인지원시설로,
- 나. 전문기관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중이며,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0조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 개요

- 소재지 : (교육센터) 영등포구 문래로 164, SK리더스뷰 501호
- 시설규모 : 문래교육장(765㎡)
- 주요시설 : 강의실, 강당, 휴게실, 상담실 등
- 인력운영 : 7명(센터장 1, 교육·문화사업 2, 상담사업 1, 회계·행정 1, 취업지원 1, 주말반 운영 1)
- ※ 운영시간 : 평일 9~18시(주말도 행사 등에 의해 필요시 운영)

나. 주요위탁 내용

- 위탁기간 : 3년(2025. 1. 1. ~ 2027.12.31.)
- 위탁업무
 - 서울시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 관리·운영 및 사업일체
 - 교육지원(한국어/검정고시/학습 멘토링) 및 문화교류를 통한 적응 지원 등 중도입국청소년들의 안정적 한국생활 정착에 필요한 사업
 - 상담사업 등을 통한 심리·정서적 안정 지원 등
- 소요예산 : 676,252천원('25년도)
 - 인건비 375,044천원, 사업비 196,217천원, 운영비 104,992천원 등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24. 7. 19.)

다. 민간위탁 및 재위탁 추진 필요성

-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사회 정착 및 지지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교육·상담·문화교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하는 업무로서,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현장의 경험을 축적한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 및 제 18조의 2

제18조(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상담 및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2.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제18조의2(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에게 다음 각 호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3. 교육·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4조·7조·18조 및 20조

제4조(시장의 책무)

-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4.>

제4조(시장의 책무)

-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3. 28., 2019. 9. 26.>
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등
 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등
 3. 전문외국인력의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등
 4. 각종 문화·체육행사의 개최
 5. 외국인·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6. 외국인주민 자녀 보호·교육사업
 7. 외국인주민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8. 외국인주민 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지원

9.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10. 외국인 노동자 권익 및 인권 보호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 ① 시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지원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법인·단체의 직원을 지원시설에 파견 근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업무의 위탁)

-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단체·기관에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시설 및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 및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4., 2017. 1. 5.>
-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관련 사항에 대하여 연 한 번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4., 2017. 1. 5.>

○ 다문화가족지원법 10조

제10조(아동·청소년 보육·교육)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12. 1.>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18세 미만인 사람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 구성원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 및 결혼이민자등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2., 2015. 12. 1.>
- ④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아동·청소년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1. [제목개정 2015. 12. 1.]>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민간위탁 예산편성 예정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서울시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 민간위탁(재위탁) 추진 계획 (여성가족정책실 가족
다문화담당관-9947, 2024.6.24.)

※ 작성자 : 글로벌도시정책관 다문화담당관 박윤정 (☎ 2133-8689)

서울특별시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4년 8월 12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는 가정폭력 등 위기 상황에 놓인 이주 여성을 위한 전문상담 및 긴급 일시보호(쉼터) 서비스를 제공 하는 지원시설로,
- 나. 전문기관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이며,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 4조 및 제4조의3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개요

- 소 재 지 : (상담센터) 중구 마른대로 146, 7층
(쉼 터) 성북구 ※서울주택도시공사 공동생활가정 임대
- 시설규모 : (상담센터) 288.19㎡, (쉼터) 137.26㎡
- 주요시설
 - (상담센터) 사무실, 상담실5, 교육장, 커뮤니티공간, 창고 및 탕비실1
 - (쉼 터) 총 2개호 / 각 호별(68.63㎡) 방3, 거실, 주방, 화장실
- 인력운영 : 12명(센터장 1, 회계·행정1, 센터 상담원 6, 쉼터 상담원 4)
※ 운영시간 : 평일 9~18시 / 상시 상담언어 : 6개(한국어, 영어, 중국어, 몽골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나. 주요 위탁내용

- 위탁기간 : 3년(2025.1.1.~ 2027.12.31.)
- 위탁업무
 -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관리·운영 및 사업 일체
 - 다국어 전문상담(전화/온라인/대면/현장방문) 및 의료·법률·심리지원 서비스 등 위기 이주여성 인권보호 및 안정적 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업
 - 센터 산하 ‘한울타리 쉼터’ 관리·운영 및 긴급보호서비스 제공
 - 의식주 생활서비스, 이용자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 소요예산 : 789,776천원(' 24년 민간위탁금)
 - 인건비 621,643천원, 사업비 102,580천원, 운영비 65,553천원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24.7.19.)

다. 민간위탁 및 재위탁 추진 필요성

- 폭력피해 등 위기에 처한 이주여성에게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와 연계한 긴급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업무로서,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추고 현장에서 경험을 축적한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다양한 기관(대사관, 병원, 경찰서, 법률사무소, 이주민지원기관 등)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공유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민간단체를 선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8조

제8조(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들을 보호·지원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갖춘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설치 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들이 가정폭력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법률체계 등에 관한 정보의 부족 등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 지 아니하도록 의견진술 및 사실확인 등에 있어서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7조

제7조(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외국인주민 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지원

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지원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18조

제18조(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제7조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단체·기관에 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이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민간위탁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
(가족다문화담당관-10011, 2024.6.25.)

※ 작성자 : 글로벌도시정책관 다문화담당관 서민령 (☎ 2133-8693)

시립노원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4년 8월 12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 가.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시설인 시립노원청소년센터의 위탁기간이 2024. 12. 31. 만료 예정임에 따라,
- 나. 청소년 사업 관련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 등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청소년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시립노원청소년센터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제11조(협약체결 등)

○ 추진의 필요성

- 시립노원청소년센터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시설로,
- 진로직업·창의적 체험활동 등 청소년센터를 이용한 학교연계 수업과 방과 후 활동 등 청소년에 대한 높은 이해와 지식을 바탕으로 청소년 요구에의 적절한 대응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통해 청소년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고 있음
- 또한 청소년 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따라서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고, 청소년 관련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하며 현장 경험이 많은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다. 위탁 사무 내용

-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청소년활동사업
-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 상담사업
- 학교,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 지원사업
- 청소년센터 관리·운영(시설물, 장비 등 포함)
- 그 밖에 청소년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라. 위탁시설 개요

- 소 재 지 :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70길 99
- 개관일자 : 1998. 1. 22.
- 시설규모 : 부지 3,560㎡ / 건물 8,246㎡
- 주요시설 : 안전체험장, 청소년문화놀이터, 강당, 체육관, 수영장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시민
- 위치도



마. 민간위탁기간: 3년(2025.1.1 ~ 2027.12.31.)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5,876백만원('24년)

○ 산출근거

- 인건비 1,463백만원, 운영비 689백만원, 사업비 3,529백만원, 사업외지출 및 기타 195백만원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8조(수탁기관 선정), 제11조(협약체결 등)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3.18., 2009.7.30., 2014.5.14., 2019.9.26.>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노동자에 대한 고용·노동조건 개선노력
6. 지도·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작성자 :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정혜진 (☎02-2133-4121)

시립수서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4년 8월 12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 가.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시설인 시립수서청소년센터의 위탁기간이 2024. 12. 31. 만료 예정임에 따라,
- 나. 청소년 사업 관련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 등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청소년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명 : 시립수서청소년센터 운영

-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제11조(협약체결 등)

○ 추진의 필요성

- 시립수서청소년센터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시설로,
- 진로직업·창의적 체험활동 등 청소년센터를 이용한 학교연계 수업과 방과 후 활동 등 청소년에 대한 높은 이해와 지식을 바탕으로 청소년 요구에의 적절한 대응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통해 청소년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고 있음
- 또한 청소년 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따라서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고, 청소년 관련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하며 현장 경험이 많은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다. 위탁 사무 내용

○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청소년활동사업
-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 상담사업
- 학교,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 지원사업
- 청소년센터 관리·운영(시설물, 장비 등 포함)
- 그 밖에 청소년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라.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144
- 개관일자 : 1994. 7. 21.
- 시설규모 : 부지 41,328㎡ / 건물 6,381㎡
- 주요시설 : 수영장, 청소년극장, 대체육관, 특성화사업공간, 디지털체험공간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시민
- 위치도



마. 민간위탁기간: 3년(2025.1.1 ~ 2027.12.31.)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3,990백만원('24년)
- 산출근거

－ 인건비 1,411백만원, 운영비 683백만원, 사업비 1,786백만원, 사업외지출 및 기타 110백만원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8조(수탁기관 선정), 제11조(협약체결 등)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3.18., 2009.7.30., 2014.5.14., 2019.9.26.>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노동자에 대한 고용·노동조건 개선노력
6. 지도·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작성자 :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정혜진 (☎02-2133-4121)

시립은평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4년 8월 12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 가.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시설인 시립은평청소년센터의 위탁기간이 2024. 12. 31. 만료 예정임에 따라,
- 나. 청소년 사업 관련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 등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청소년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시립은평청소년센터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제11조(협약체결 등)

○ 추진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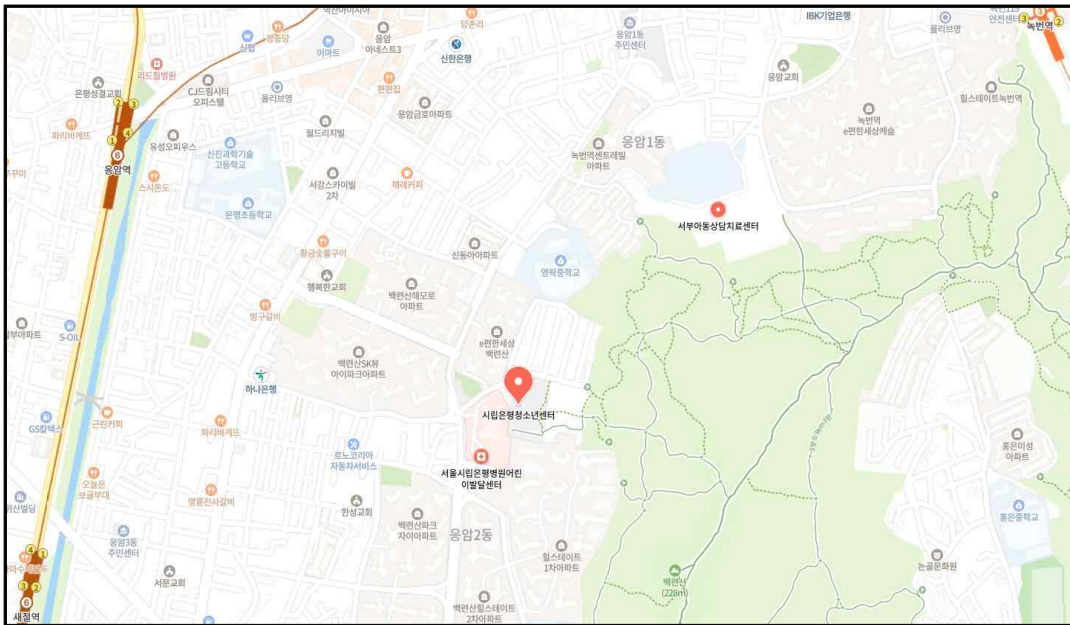
- 시립은평청소년센터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시설로,
- 진로직업·창의적 체험활동 등 청소년센터를 이용한 학교연계 수업과 방과 후 활동 등 청소년에 대한 높은 이해와 지식을 바탕으로 청소년 요구에의 적절한 대응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통해 청소년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고 있음
- 또한 청소년 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따라서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고, 청소년 관련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하며 현장 경험이 많은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다. 위탁 사무 내용

-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청소년활동사업
-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 상담사업
- 학교,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 지원사업
- 청소년센터 관리·운영(시설물, 장비 등 포함)
- 그 밖에 청소년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라. 위탁시설 개요

- 소 재 지 : 서울시 은평구 백련산로4길 16
- 개관일자 : 2003. 11. 1.
- 시설규모 : 부지 13,500㎡ / 건물 4,963㎡
- 주요시설 : 청소년전용공간, 프로그램실, 특성화 프로그램실.
수영장, 대강당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시민
- 위치도



마. 민간위탁기간: 3년(2025.1.1 ~ 2027.12.31.)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4,550백만원('24년)

○ 산출근거

- 인건비 861백만원, 운영비 868백만원, 사업비 2,729백만원, 사업외지출 및 기타 92백만원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8조(수탁기관 선정), 제11조(협약체결 등)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3.18., 2009.7.30., 2014.5.14., 2019.9.26.>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11조(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노동자에 대한 고용·노동조건 개선노력
 6. 지도·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작성자 :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정혜진 (☎02-2133-4121)

시립서울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4년 8월 12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 가.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시설인 시립서울유스호스텔의 위탁기간이 2024. 12. 31. 만료 예정임에 따라,
- 나. 청소년 사업 관련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 등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청소년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시립서울유스호스텔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제11조(협약체결 등)

○ 추진의 필요성

- 시립서울유스호스텔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시설로,
- 서울특별시의 공공화된 최상의 글로벌 청소년 숙박시설과 국제교류사업을 제공함과 동시에 전세계 여행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숙박편의시설 제공하고자 함
- 청소년 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음에 따라,
- 변화하는 청소년의 욕구반영 및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하고 우수한 청소년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고, 현장 경험이 많은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다. 위탁 사무 내용

- 국내·외 여행 청소년을 위한 숙박시설 운영
- 국내·외 청소년을 위한 국제교류사업 및 홍보사업
- 국내·외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 및 생활지도·보호사업
- 유스호스텔의 시설보수 및 안전 등 물적 설비 관리 등

라. 제3자 재위탁 : 해당

○ 필요성

- 코로나19로 인한 남산생활치료센터 운영 기간(2020. 6월 ~ 2022. 4월) 동안 식당 및 환경미화 분야 제3자 위탁. 유스호스텔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갖춘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3자 위탁 유지

○ 제3자 재위탁 내용

- 객실 정비 및 유스호스텔 공용구역 청소
(현 계약기간 : 2023.10. 01. ~ 2024. 9. 30.)
- 서울유스호스텔 구내식당 운영 일체
(현 계약기간 : 2022.11. 01. ~ 2024. 12. 31.)
- ※ 계약기간 만료로 용역 계약 체결하여 추진 예정

마. 위탁시설 개요

- 소 재 지 : 서울시 중구 퇴계로 26가길 6
- 개관일자 : 2006. 2. 23.
- 시설규모 : 부지 17,223㎡ / 건물 6,483㎡
- 주요시설 : 객실(비즈니스룸, 스위트룸), 대강당, 식당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시민
- 위 치 도



바. 민간위탁기간: 3년(2025.1.1 ~ 2027.12.31.)

사.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아.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2,778백만원('24년)

○ 산출근거

- 인건비 1,253백만원, 운영비 976백만원, 사업비 411백만원, 사업외지출 및 기타 138백만원

자.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8조(수탁기관 선정), 제11조(협약체결 등)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3.18., 2009.7.30., 2014.5.14., 2019.9.26.>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11조(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노동자에 대한 고용·노동조건 개선노력
 6. 지도·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작성자 :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정혜진 (☎02-2133-4121)

시립청소년이동쉼터(서북)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4년 8월 12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및 제6조 제1호에 의하여 설치·운영 중인 시립청소년이동쉼터(서북)의 위탁기간이 2024.12.31. 만료 예정에 따라,
- 나. 청소년 사업 관련 법인의 전문성과 시설 운영 노하우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사업운영 및 시설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시립청소년이동쉼터(서북)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2조의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1항 및 같은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1호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 시립청소년이동쉼터(서북)는 가정 밖(위기) 청소년의 생활보호 및 가정·사회복귀, 자립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사업 운영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바,
 - － 민간위탁을 통해 청소년 전문가 인력 및 운영 노하우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미 구축되어 있는 민간 조직망을 활용하게 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공공서비스 전달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다. 위탁 사무 내용

- 가정 밖 청소년 보호·지원사업
- 청소년 상담, 보호기관·단체 연계활동 지원
- 위기 개입 상담, 진로지도, 적성검사 등 상담서비스 제공
- 청소년 가출예방을 위한 거리상담활동 및 청소년복지지원 활동 등
- 가출예방과 가출청소년 보호를 위한 대외홍보사업
- 기타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라. 위탁시설 개요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1길 11, 3층
- 시설규모 : 45인승 대형버스
 - 휴게공간, 상담좌석, 외부 부스 등
- 이용대상 : 가출·거리배화·노숙 청소년 등
- 보호기간 : 24시간 이내 일시보호

마. 민간위탁 기간 : 3년(2025. 1. 1. ~ 2027.12.31.)

바. 수탁자 선정방식 : 재위탁 공모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523백만원('24년)
 - 인건비 380백만원, 운영비 27백만원, 사업비 116백만원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2조의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 ①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지원시설은 필요한 경우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작성자 :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김규리 (☎ 2133-4133)

시립청소년이동쉼터(서남)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4년 8월 12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및 제6조 제1호에 의하여 설치·운영 중인 시립청소년이동쉼터(서남)의 위탁기간이 2024.12.31. 만료 예정에 따라,
- 나. 청소년 사업 관련 법인의 전문성과 시설 운영 노하우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사업운영 및 시설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시립청소년이동쉼터(서남)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2조의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1항 및 같은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1호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 시립청소년이동쉼터(서남)는 가정 밖(위기) 청소년의 생활보호 및 가정·사회복귀, 자립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사업 운영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바,
 - － 민간위탁을 통해 청소년 전문가 인력 및 운영 노하우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미 구축되어 있는 민간 조직망을 활용하게 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공공서비스 전달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다. 위탁 사무 내용

- 가정 밖 청소년 보호·지원사업
- 청소년 상담, 보호기관·단체 연계활동 지원
- 위기 개입 상담, 진로지도, 적성검사 등 상담서비스 제공
- 청소년 가출예방을 위한 거리상담활동 및 청소년복지지원 활동 등
- 가출예방과 가출청소년 보호를 위한 대외홍보사업
- 기타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라. 위탁시설 개요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1길 11, 3층
- 시설규모 : 25인승 중형버스
 - 휴게공간, 상담좌석, 외부 부스 등
- 이용대상 : 가출·거리배화·노숙 청소년 등
- 보호기간 : 24시간 이내 일시보호

마. 민간위탁 기간 : 3년(2025. 1. 1. ~ 2027.12.31.)

바. 수탁자 선정방식 : 재위탁 공모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522백만원('24년)
- 인건비 355백만원, 운영비 29백만원, 사업비 138백만원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2조의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 ①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지원시설은 필요한 경우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작성자 :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김규리 (☎ 2133-4133)

시립청소년이동쉼터(동북)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4년 8월 12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및 제6조 제1호에 의하여 설치·운영 중인 시립청소년이동쉼터(동북)의 위탁기간이 2024.12.31. 만료 예정에 따라,
- 나. 청소년 사업 관련 법인의 전문성과 시설 운영 노하우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사업운영 및 시설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시립청소년이동쉼터(동북)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2조의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1항 및 같은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1호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 시립청소년이동쉼터(동북)는 가정 밖(위기) 청소년의 생활보호 및 가정·사회복귀, 자립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사업 운영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바,
 - － 민간위탁을 통해 청소년 전문가 인력 및 운영 노하우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미 구축되어 있는 민간 조직망을 활용하게 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공공서비스 전달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다. 위탁 사무 내용

- 가정 밖 청소년 보호·지원사업
- 청소년 상담, 보호기관·단체 연계활동 지원
- 위기 개입 상담, 진로지도, 적성검사 등 상담서비스 제공
- 청소년 가출예방을 위한 거리상담활동 및 청소년복지지원 활동 등
- 가출예방과 가출청소년 보호를 위한 대외홍보사업
- 기타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라.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303 평원빌딩 3층
- 시설규모 : 25인승 중형버스
 - 상담부스, 활동부스 등
- 이용대상 : 가출·거리배화·노숙 청소년 등
- 보호기간 : 24시간 이내 일시보호

마. 민간위탁 기간 : 3년(2025. 1. 1. ~ 2027.12.31.)

바. 수탁자 선정방식 : 재위탁 공모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522백만원('24년)
- 인건비 327백만원, 운영비 31백만원, 사업비 164백만원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2조의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 ①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지원시설은 필요한 경우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작성자 :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김규리 (☎ 2133-4133)

시립청소년이동쉼터(동남)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4년 8월 12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및 제6조 제1호에 의하여 설치·운영 중인 시립청소년이동쉼터(동남)의 위탁기간이 2024.12.31. 만료 예정에 따라,
- 나. 청소년 사업 관련 법인의 전문성과 시설 운영 노하우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사업운영 및 시설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시립청소년이동쉼터(동남)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2조의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1항 및 같은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1호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 시립청소년이동쉼터(동남)는 가정 밖(위기) 청소년의 생활보호 및 가정·사회복귀, 자립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사업 운영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바,
 - － 민간위탁을 통해 청소년 전문가 인력 및 운영 노하우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미 구축되어 있는 민간 조직망을 활용하게 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공공서비스 전달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다. 위탁 사무 내용

- 가정 밖 청소년 보호·지원사업
- 청소년 상담, 보호기관·단체 연계활동 지원
- 위기 개입 상담, 진로지도, 적성검사 등 상담서비스 제공
- 청소년 가출예방을 위한 거리상담활동 및 청소년복지지원 활동 등
- 가출예방과 가출청소년 보호를 위한 대외홍보사업
- 기타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라. 위탁시설 개요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303 평원빌딩 3층
- 시설규모 : 45인승 대형버스
 - 상담부스, 활동부스, 집단상담부스, 대기부스 등
- 이용대상 : 가출·거리배화·노숙 청소년 등
- 보호기간 : 24시간 이내 일시보호

마. 민간위탁 기간 : 3년(2025. 1. 1. ~ 2027.12.31.)

바. 수탁자 선정방식 : 재위탁 공모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523백만원('24년)
- 인건비 352백만원, 운영비 31백만원, 사업비 140백만원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2조의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 ①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지원시설은 필요한 경우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작성자 :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김규리 (☎ 2133-4133)

시립용산청소년일시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4년 8월 12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및 제6조 제1호에 의하여 설치·운영 중인 시립용산청소년일시쉼터의 위탁기간이 2024.12.31. 만료 예정에 따라,
- 나. 청소년 사업 관련 법인의 전문성과 시설 운영 노하우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사업운영 및 시설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시립용산청소년일시쉼터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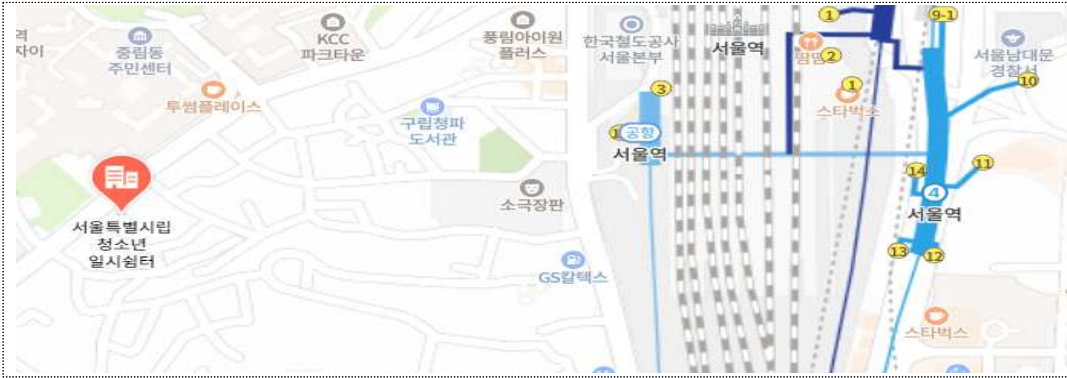
- 민간위탁 추진근거
 -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2조의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1항 및 같은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1호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 시립용산청소년일시쉼터는 가정 밖(위기) 청소년의 일시보호 및 가정·사회복귀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사업 운영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바,
 - － 민간위탁을 통해 청소년 전문가 인력 및 운영 노하우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미 구축되어 있는 민간 조직망을 활용하게 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공공서비스 전달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다. 위탁 사무 내용

- 가정 밖 청소년 일시보호·지원사업
- 청소년문제 예방을 위한 위기청소년 조기발견 및 응급서비스 제공
- 청소년 가출예방을 위한 거리상담활동 및 청소년복지지원 활동 등
- 가출예방과 가출청소년 보호를 위한 대외홍보사업
- 청소년 상담, 보호기관·단체 연계활동 지원
- 기타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라.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만리재로 156-1
- 시설규모 : (대지) 85.3㎡, (연면적) 130.38㎡
- 주요시설 : 상담실, 숙소, 사무실 등
- 위치도



마. 민간위탁 기간 : 3년(2025. 1. 1. ~ 2027.12.31.)

바. 수탁자 선정방식 : 재위탁 공모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634백만원('24년)
- － 인건비 324백만원, 운영비 48백만원, 사업비 262백만원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2조의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 ①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지원시설은 필요한 경우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작성자 :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김미연 (☎ 2133-4131)

시립신림청소년단기쉼터(남)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4년 8월 12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및 제6조 제1호에 의하여 설치·운영 중인 시립신림청소년단기쉼터(남)의 위탁기간이 2024.12.31. 만료 예정에 따라,
- 나. 청소년 사업 관련 법인의 전문성과 시설 운영 노하우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사업운영 및 시설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시립신림청소년단기쉼터(남)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2조의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1항 및 같은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1호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시립신림청소년단기쉼터(남)는 가정 밖(위기) 청소년의 생활보호 및 가정·사회복귀, 자립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사업 운영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바,
- 민간위탁을 통해 청소년 전문가 인력 및 운영 노하우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미 구축되어 있는 민간 조직망을 활용하게 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공공서비스 전달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다. 위탁 사무 내용

- 가정 밖 청소년 보호·지원사업
- 청소년 상담, 보호기관·단체 연계활동 지원
- 위기 개입 상담, 진로지도, 적성검사 등 상담서비스 제공
- 청소년 가출예방을 위한 거리상담활동 및 청소년복지지원 활동 등
- 가출예방과 가출청소년 보호를 위한 대외홍보사업
- 기타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라.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 376 대경빌딩
- 시설규모 : (대지) 1,038㎡, (연면적) 685.04㎡
- 주요시설 : 상담실, 교육실, 숙소, 사무실 등
- 위치도



마. 민간위탁 기간 : 3년(2025. 1. 1. ~ 2027.12.31.)

바. 수탁자 선정방식 : 재위탁 공모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1,471백만원('24년)
- － 인건비 911백만원, 운영비 75백만원, 사업비 485백만원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2조의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 ①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지원시설은 필요한 경우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작성자 :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김미연 (☎ 2133-4131)

시립금천청소년단기쉼터(여)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4년 8월 12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및 제6조 제1호에 의하여 설치·운영 중인 시립금천청소년단기쉼터(여)의 위탁기간이 2024.12.31. 만료 예정에 따라,
- 나. 청소년 사업 관련 법인의 전문성과 시설 운영 노하우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사업운영 및 시설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시립금천청소년단기쉼터(여)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2조의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1항 및 같은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1호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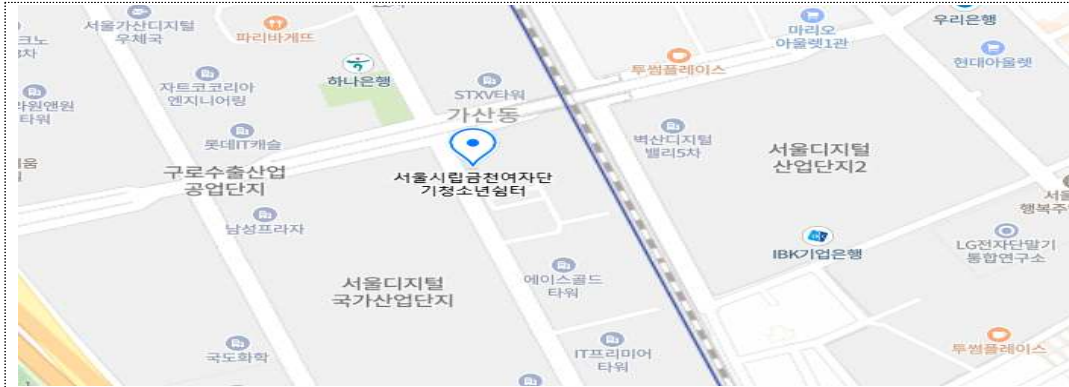
- － 시립금천청소년단기쉼터(여)는 가정 밖(위기) 청소년의 생활보호 및 가정·사회복귀, 자립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사업 운영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바,
- － 민간위탁을 통해 청소년 전문가 인력 및 운영 노하우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미 구축되어 있는 민간 조직망을 활용하게 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공공서비스 전달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다. 위탁 사무 내용

- 가정 밖 청소년 보호·지원사업
- 청소년 상담, 보호기관·단체 연계활동 지원
- 위기 개입 상담, 진로지도, 적성검사 등 상담서비스 제공
- 청소년 가출예방을 위한 거리상담활동 및 청소년복지지원 활동 등
- 가출예방과 가출청소년 보호를 위한 대외홍보사업
- 기타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라.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로1로 120, G밸리창업복지센터 내
- 시설규모 : (대지) 1,149㎡, (연면적) 6,017.63㎡
- 주요시설 : 상담실, 교육실, 숙소, 사무실 등
- 위치도



마. 민간위탁 기간 : 3년(2025. 1. 1. ~ 2027.12.31.)

바. 수탁자 선정방식 : 재위탁 공모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1,095백만원('24년)
- 인건비 543백만원, 운영비 101백만원, 사업비 451백만원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2조의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 ①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지원시설은 필요한 경우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작성자 :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김미연 (☎ 2133-4131)

시립신림청소년중장기쉼터(남)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24년 8월 12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및 제6조 제1호에 의하여 설치·운영 중인 시립신림청소년중장기쉼터(남)의 위탁기간이 2024.12.31. 만료 예정에 따라,
- 나. 청소년 사업 관련 법인의 전문성과 시설 운영 노하우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사업운영 및 시설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시립신림청소년중장기쉼터(남)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2조의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1항 및 같은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1호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 시립신림청소년중장기쉼터(남)는 가정 밖(위기) 청소년의 생활보호 및 가정·사회복귀, 자립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사업 운영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바,
 - － 민간위탁을 통해 청소년 전문가 인력 및 운영 노하우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미 구축되어 있는 민간 조직망을 활용하게 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공공서비스 전달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다. 위탁 사무 내용

- 가정 밖 청소년 보호·지원사업
- 청소년 상담, 보호기관·단체 연계활동 지원
- 위기 개입 상담, 진로지도, 적성검사 등 상담서비스 제공
- 청소년 가출예방을 위한 거리상담활동 및 청소년복지지원 활동 등
- 가출예방과 가출청소년 보호를 위한 대외홍보사업
- 기타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라.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24가길 54
- 시설규모 : (대지) 138.49㎡, (연면적) 153.65㎡
- 주요시설 : 숙소, 사무실 등
- 위치도



마. 민간위탁 기간 : 3년(2025. 1. 1. ~ 2027.12.31.)

바. 수탁자 선정방식 : 재위탁 공모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440백만원('24년)
- 인건비 336백만원, 운영비 25백만원, 사업비 79백만원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2조의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 ①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지원시설은 필요한 경우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작성자 :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김미연 (☎ 2133-4131)

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4년 8월 12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및 제6조 제1호에 의하여 설치·운영 중인 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의 위탁기간이 2024.12.25. 만료 예정에 따라,
- 나. 청소년 사업 관련 법인의 전문성과 시설 운영 노하우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사업운영 및 시설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2조의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1항 및 같은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1호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은 가정 밖(위기) 청소년의 생활보호 및 가정·사회복귀, 자립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사업 운영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바,
- 민간위탁을 통해 청소년 전문가 인력 및 운영 노하우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미 구축되어 있는 민간 조직망을 활용하게 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공공서비스 전달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다. 위탁 사무 내용

- 가정 밖 청소년 보호 지원사업
- 청소년 상담, 보호기관·단체 연계활동 지원
- 위기 개입 상담, 진로지도, 적성검사 등 상담서비스 제공
- 가정 밖 청소년 맞춤형 사례관리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발굴
- 기타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라.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및 시설 규모

구분	동·호수	전용면적	비 고
대원리츠빌 (시루봉로15길 93)	2동 203호	63.77㎡	사무실
	1동 103호	60.05㎡	여자 생활관
	1동 201호	60.03㎡	
	1동 302호	59.98㎡	
해날하이빌 (도봉로133길 8-18)	301호	57.42㎡	여자 생활관
	302호	50.63㎡	
삼성아트빌 (도당로 17길 54)	301호	44.32㎡	남자 생활관
	302호	44.32㎡	

○ 이용대상 : 청소년쉼터 퇴소 후 갈 곳이 없어 장기적인 보호와 자립지원이 필요한 만 24세 이하 청소년

마. 민간위탁 기간 : 3년(2024. 12. 26. ~ 2026.12.25.)

바. 수탁자 선정방식 : 재위탁 공모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511백만원(' 24년)

－ 인건비 336백만원, 운영비 33백만원, 사업비 142백만원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2조의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①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지원시설은 필요한 경우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작성자 :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김규리 (☎ 2133-4133)

한강생태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4년 8월 12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전문적이고 창의적 역량을 활용한 한강생태공원 운영관리로 시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민간 전문운영자에게 한강 생태공원 운영관리를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추진근거

- 「자연환경보전법」 제23조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
-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4항 및 제4조의3

나. 민간위탁 필요성

- 생태공원은 「자연환경보전법」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고덕, 암사동), 야생생물보호구역(난지생태습지원)으로써 생태환경 보존·유지 및 생물다양성 증대(보호)를 위한 전문 지식과 운영을 바탕으로 생태 보전 활동 수행 요구
- 생물다양성 보전 가치 전달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 지역 내 공원 특성에 맞는 전문 프로그램 개발 운영 필요
- 우수한 민간단체에 의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장기·지속적인 시민 이용성 증진 등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보유한 민간 단체에 의한 관리 필수

다. 민간위탁 개요

- 위탁기간: '25. 4. 1. ~ '28. 3. 31.(3년)
- 위탁유형: 5개 시설을 2개 사무로 통합 운영, 시설형 위탁(예산지원형)
 - 서북권 : 난지생태습지원, 한강야생탐사센터 통합 (한강 북쪽 생태공원)
 - 동북권 : 여의도샛강 생태공원, 암사생태공원, 고덕수변 생태공원 통합 (한강 남쪽 생태공원)
- 선정방법: 공개모집(적격자심의위원회를 통해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 위탁사무
 - 생태교실, 곤충탐험 등 다양한 생태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기초 생태환경, 생물종별 모니터링 실시 및 결과보고
- 공원 내 식물, 야생생물서식처 유지관리
- 프로그램운영 사용 교재 개발 및 홍보물 자체 제작 활용
- 생태학습센터 유지관리(공공요금, 보험료 지급 등)

○ 위 탁 금 : 825,441천원(2025년 기준)

(단위: 천원)

구 분	1번 사무			2번 사무			
	소계	난지생태 습지원	한강야생 탐사센터	소계	여의도샛강 생태공원	암사 생태공원	고덕수변 생태공원
예산액	323,287	162,811	160,476	502,154	183,119	155,981	163,054

라.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조건부 적정

○ 2개 권역으로 통합운영(권고: 예산내실화)(조직담당관 - 7519호.'24.7.19.)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제13조

나. 예산조치 : 2025년 민간위탁 예산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종합성과평가 결과 78.40점

구 분	난지생태습지원	한강야생탐사센터	여의도샛강 생태공원	암사생태공원	고덕수변 생태공원
종합성과평가결과	78.49	78.59	79.66	76.64	78.54

붙임 : 예산 세부내역

※ 작성자 : 미래한강본부 공원여과과 이상연 주무관(☎3780-0839)

붙임 1**예산 세부내역**

○ 난지생태습지원 : 162,811,000원

항목	내역	금액(천원)	산출내역(원)
인건비	기본급	96,164	- 2,671,224원 × 3인 × 12월 = 96,164,164
	퇴직충당금	8,014	- (2,671,224원/12개월) × 3인 = 8,014,672
	보험료	10,726	- 국민연금 (96,164,163원) × 4.5% = (60세 이상 근로자 제외) 4,327,387
			- 건강보험 (96,164,163원) × 3.5% = 3,409,008
			- 고용보험 (96,164,163원) × 1.5% = 1,682,868
			- 산재보험 (96,164,163원) × 0.76% = 865,464
- 장기요양 (3,409,008원) × 12.95% = 441,480			
소 계		114,904	
운영비	임 차 료	1,056	- 복합기 88,000원 × 1대 × 12월 = 1,056,000
	우 편 료	201	- 우편발송 16,766원 × 1회×12월 = 201,000
	교 통 통 신 비	163	- 전화 · 통신(인터넷) 13,543원 × 12월 = 162,516
	소 모 품 비	9,305	- 프로그램 재료 350,000원 × 1식 × 12월 = 4,200,000
			- 공원관리물품 275,379원 × 1식 × 12월 = 3,304,548
			- 센터관리물품 150,000원 × 1식 × 12월 = 1,800,000
	수 선 유 지 비	3,399	- 유지관리인건비 91,400원 × 30회 = 2,742,000
			- 수선비 657,200원 × 1식 = 657,200
	유 인 물 비	2,216	- 유인물비 2,216,266원 × 1식 = 2,216,266
	강 사 비	1,200	- 일반강사 240,000원 × 5회 = 1,200,000
	생태모니터링비	3,262	- 모니터링 인건비 217,493원 × 15회 = 3,262,395
	공공요금 및 제세	4,406	- 공공요금(전기) 367,146원 × 12월 = 4,405,75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630	- (총사업비의 145,108,197원 × 1.12%)= 1,630,000
기 타	3,366	- 보안용역 143,000원 × 12월 = 1,716,000	
		- 자원활동가 관리비 137,500 × 12월 = 1,650,000	
소 계		30,204	

항목	내역	금액(천원)	산출내역(원)
	계	145,108	
	일반관리비	2,902	
	부 가 세	14,801	
합	계(백원 이하 절사)		162,811,000원

○ 한강야생탐사센터 : 160,476,000원

항목	내역	금액(천원)	산출내역(원)
인건비	기본급	96,164	－ 2,671,224원 × 3인 × 12월 ＝ 96,164,164
	퇴직충당금	8,014	－ (2,671,224원/12개월) × 3인 ＝ 8,014,672
	보험료	10,726	－ 국민연금 (96,164,164원) × 4.5% ＝ (60세 이상 근로자 제외) 4,327,387
			－ 건강보험 (96,164,164원) × 3.5% ＝ 3,409,008
			－ 고용보험 (96,164,164원) × 1.5% ＝ 1,682,868
			－ 산재보험 (96,164,164원) × 0.76% ＝ 865,464
－ 장기요양 (3,409,008원) × 12.95% ＝ 441,480			
소 계		114,904	
운영비	임 차 료	1,927	－ 복합기 143,000원 × 1대 × 12월 ＝ 1,716,000
			－ 디자인플랫폼사용료 160,800원 × 1년 ＝ 160,800
			－ 구글드라이브 사용료 50,000원 × 1년 ＝ 50,000
	우 편 료	500	－ 우편발송 5,000원 × 100회 ＝ 500,000
	교 통 통 신 비	732	－ 전화 · 통신(인터넷) 61,000원 × 12월 ＝ 732,000
	소 모 품 비	4,320	－ 프로그래밍 재료 325,000원 × 1식 × 12월 ＝ 3,900,000
			－ 센터 운영 물품 35,000원 × 1식 × 12월 ＝ 420,000
	수 선 유 지 비	3,432	－ 시스템에어컨 점검 1,000,000원 × 1식 ＝ 1,000,000
			－ 자전거안전점검 800,000원 × 1식 ＝ 800,000
			－ 기타수선유지 예비비 1,631,631원 × 1식 ＝ 1,631,631
	유 인 물 비	3,000	－ 유인물비 3,000,000원 × 1식 ＝ 3,000,000
	강 사 비	2,400	－ 일반강사 240,000원 × 7회 ＝ 1,680,000
			－ 보조강사 80,000원 × 7회 ＝ 560,000
			－ 보조진행 40,000원 × 4회 ＝ 160,000
	차량렌탈비	1,100	－ 차량렌탈 1,100,000원 × 1회 ＝ 1,100,000
공공요금 및 제세	7,200	－ 공공요금(전기) 600,000원 × 12월 ＝ 7,200,00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797	－ (총사업비의 160,476,000원 × 1.12%)＝ 1,797,000	
기 타	1,716	－ 보안용역 143,000원 × 12월 ＝ 1,716,000	

항목	내역	금액(천원)	산출내역(원)
	소 계	28,122	
	일반관리비	2,861	
	부 가 세	14,589	
합	계(백원 이하 절사)		160,476,000원

○ 여의도샛강 생태공원 : 183,119,000원

항목	내역	금액(천원)	산출내역(원)
인건비	기본급	96,164	－ 2,671,224원 × 3인 × 12월 96,164,163
	퇴직충당금	8,013	－ (2,671,224원/12개월) × 3인 = 8,013,672
	보험료	10,726	－ 국민연금 (96,164,163원) × 4.5% = (60세 이상 근로자 제외) 4,327,387
			－ 건강보험 (96,164,163원) × 3.5% = 3,409,008
			－ 고용보험 (96,164,163원) × 1.5% = 1,682,868
			－ 산재보험 (96,164,163원) × 0.76% = 865,464
－ 장기요양 (3,409,008원) × 12.95% = 441,480			
소 계		114,904	
운영비	임 차 료	1,056	－ 복합기 88,000원 × 1대 × 12월 = 1,056,000
	우 편 료	75	－ 우편료 6,250원 × 1회 × 12월 75,000
	교 통 통 신 비	2,156	－ 전화 69,737원 × 12월 = 836,853
			－ 통신(인터넷) 110,000원 × 12월 1,320,000
	소 모 품 비	4,800	－ 프로그램 재료 150,000원 × 1식 × 12월 = 1,800,000
			－ 공원관리 물품 150,000원 × 1식 × 12월 = 1,800,000
			－ 센터 운영 물품 100,000원 × 1식 × 12월 = 1,200,000
	수 선 유 지 비	5,954	－ 유지관리 인건비 91,400원 × 51회 = 4,661,400
			－ 수선비 1,293,540원 × 1식 = 1,293,540
	유 인 물 비	2,216	－ 유인물비 2,216,000원 × 1식 2,216,000
	강 사 비	1,200	－ 일반강사 240,000원 × 5회 = 1,200,000
	생태모니터링	7,590	－ 전문가 모니터링 253,000 × 30회 7,590,000
	공공요금 및 제세	19,492	－ 공공요금(전기·수도) 1,624,397원 × 12월 = 19,492,77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050	－ 2,050,932원 × 1식 = ※ 총사업비의 1.12% (183,119,000원 × 1.12%) 2,050,932	
기 타	1,716	－ 보안구역 143,000원 × 12월 = 1,716,000	

항목	내역	금액 (천원)	산출내역 (원)
	소 계	48,304	
	일반관리비	3,264	
	부가가치세	16,647	
합	계 (백원 이하 절사)		183,119,000원

○ 암사 생태공원 : 155,981,000원

항목	내역	금액(천원)	산출내역(원)
인건비	기본급	96,164	－ 2,671,224원 × 3인 × 12월 ＝ 96,164,064
	퇴직충당금	8,014	－ (2,671,224원/12개월) × 3인 ＝ 8,013,672
	보험료	10,726	－ 국민연금 (96,164,164원) × 4.5% ＝ (60세 이상 근로자 제외) 4,327,387
			－ 건강보험 (96,164,164원) × 3.5% ＝ 3,409,000
			－ 고용보험 (96,164,164원) × 1.5% ＝ 1,682,868
			－ 산재보험 (96,164,164원) × 0.76% ＝ 865,464
－ 장기요양 (3,409,008원) × 12.95% ＝ 441,480			
소 계		114,904	
운영비	임 차 료	1,056	－ 복합기 88,000원 × 1대 × 12월 ＝ 1,056,000
	우 편 료	75	－ 우편료 6,250원 × 1회 × 12월 ＝ 75,000
	교 통 통 신 비	1,200	－ 전화 · 통신(인터넷) 100,000원 × 12월 1,200,000
	소 모 품 비	3,240	－ 프로그램 재료 100,000원 × 1식 × 12월 ＝ 1,200,000
			－ 공원관리 물품 70,000원 × 1식 × 12월 ＝ 8,40,000
			－ 센터 운영 물품 100,000원 × 1식 × 12월 ＝ 1,200,000
	수 선 유 지 비	6,150	－ 수선유지 인건비 91,400원 × 51회 ＝ 4,661,400
			－ 수선비 1,489,197원 × 1식 ＝ 1,489,197
	유 인 물 비	1,000	－ 인쇄제작비 100,000원 × 1식 × 10회 ＝ 1,000,000
	강 사 비	1,200	－ 일반강사비 100,000원 × 1식 × 12회 ＝ 1,200,000
	생태모니터링	600	－ 생태모니터링비 100,000원 × 3명 × 2회 ＝ 600,000
	공공요금 및 제세	3,000	－ 공공요금(전기료) 250,000원 × 12월 ＝ 3,000,00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050	－ 안전관리비 법정기준(사업비 × 1.21%) ＝ 2,050,000
기 타	4,546	－ 보안용역 100,000원 × 1식 × 12월 ＝ 1,200,000	
		－ 자원활동가 관리비 528,000원 × 1식 ＝ 528,000	
		－ 기타비용 2,818,000원 × 1식 ＝ 2,818,000	
소 계		24,117	

항목	내역	금액(천원)	산출내역(원)
	계	139,021	
	일반관리비	2,780	
	부가가치세	14,180	
합	계 (백원 이하 절사)		155,981,000원

○ 고덕수변 생태공원 : 163,054,000원

항목	내역	금액(천원)	산출내역(원)
인건비	기본급	96,164	－ 2,671,224원 × 3인 × 12월 ＝ 96,164,164
	퇴직충당금	8,014	－ (2,671,224원/12개월) × 3인 ＝ 8,013,672
	보험료	10,726	－ 국민연금 (96,164,164원) × 4.50% × 12개월 × 3인 ＝ 4,327,387
			－ 건강보험 (96,164,164원) × 3.55% × 12개월 × 3인 ＝ 3,409,008
			－ 고용보험 (96,164,164원) × 1.05% × 12개월 × 3인 ＝ 1,682,868
			－ 산재보험 (96,164,164원) × 0.30% × 12개월 × 3인 ＝ 865,464
－ 장기요양 (3,409,008원) × 5.76% × 12개월 × 3인 ＝ 441,480			
소 계		114,904	
운영비	임 차 료	1,056	－ 복합기 88,000원 × 1대 × 12월 ＝ 1,056,000
	우 편 료	－	－
	교통통신비	770	－ 전화·통신(인터넷) 64,204원 × 12월 ＝ 770,450
	소 모 품 비	4,944	－ 프로그램 재료 410,000원 × 1식 × 12월 ＝ 4,920,000
			－ 사무용품 1,976원 × 1식 × 12월 ＝ 23,714
	수 선 유 지 비	10,901	－ 생태서식처 관리 90,410원 × 16일 × 7명 ＝ 10,125,920
			－ 화장실 수선비 : 15,000원 × 51.5일 ＝ 774,947
	유 인 물 비	1,571	－ 리플렛 1,570,566원 × 1식 ＝ 1,570,566
	강 사 비	1,200	－ 일반강사 240,000원 × 5회 ＝ 1,200,000
	생태모니터링	2,640	－ 생태모니터링(전문강사) 360,000원 × 7회 ＝ 2,520,000
			－ 생태모니터링 보조(일반) 120,000 × 1회 ＝ 120,000
공공요금 및 제세	2,946	－ 전기 154,618 × 12월 ＝ 1,855,416	
		－ 수도 181,800원 × 6월 ＝ 1,090,800	
산업안전보건	1,630	－ 총사업비의 1.12% (163,054,000원 × 1.12%) 1,629,571	

항목	내역	금액(천원)	산출내역(원)
	기 타	2,763	- 보안용역 166,100원 × 12월 1,993,200 - 영상물 제작 및 편집 770,000원 × 1식 770,000
	소 계	30,420	
	계	145,324	
	일반관리비	2,907	
	부가가치세	14,823	
	합 계 (백원 이하 절사)		163,054,000원

서울예술영재 음악교육(서부권)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4년 8월 12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예술영재 음악교육(서부권) 사무는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5조의2에 의거, 예술에 재능이 있으나 경제적 여건으로 양질의 교육을 받기 어려운 학생들을 발굴·체계적인 교육을 지원하여 청소년의 예술적 잠재력 발현과 자아실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 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을 위하여 경험 및 전문성과 인적·물적 인프라 등이 풍부한 민간에 교육을 위탁·운영 중임
- 다. 공모를 통한 재위탁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울예술영재 음악교육(서부권)
- 사업내용 : 음악에 재능이 있으며 생활이 어려운 학생을 발굴, 대학 등의 인적·물적 인프라와 전문성을 활용한 체계적인 교육 지원
- 교육대상 : 생활이 어려운 초·중등생 총 70명
- 교육기간 : 약 9개월간

나. 주요 위탁 내용

- 위탁기간 : 3년(2025. 1. ~ 2027. 12.)
- 위탁유형 : 사무형 위탁
- 소요예산(안) : 410백만원
- 수탁기관 선정방법 : 재위탁(공개모집)
- 위탁사무 범위
 - 교육생 모집 및 선발, 교육 과정 운영
 - 교육커리큘럼 기획 및 교수진 구성
 - 교육장소 및 협력시설, 교육 기자재 및 물품 확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문화·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제14조(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의 위탁)

제14조(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의 위탁)① 시장은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교육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25년도 예산편성 필요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적정

※ 작성자 :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심성영 (☎ 2133-2565)

장애청소년 미술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4년 8월 12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 가. 장애청소년 미술교육 지원 사무는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5조의 2에 의거, 재능 있는 발달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전문예술인을 발굴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 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을 위하여 경험 및 전문성과 인적·물적 인프라 등이 풍부한 민간에 교육을 위탁·운영 예정임
- 다. 공모를 통한 신규위탁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장애청소년 미술교육
- 사업내용 : 개인별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수업 실시(미술이론 및 실기), 체험활동 참가, 작품전시회 개최 등
- 교육대상 : 9세 이상 24세 이하 발달장애(지적·자폐) 청소년 총 90명
- 교육기간 : 약 9개월간

나. 주요 위탁 내용

- 위탁기간 : 3년(2025. 1. ~ 2027. 12.)
- 위탁유형 : 사무형 위탁
- 소요예산(안) : 306백만원
- 수탁기관 선정방법 : 신규위탁(공개모집)
- 위탁업무 범위
 - 교육생 모집 및 선발, 교육 과정 운영
 - 교육커리큘럼 기획 및 교수진 구성
 - 교육장소 및 협력시설, 교육 기자재 및 물품 확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문화·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제14조(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의 위탁)

제14조(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의 위탁)① 시장은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교육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25년도 예산편성 필요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적정

※ 작성자 :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심성영 (☎ 2133-2565)

서울 남산국악당 및 돈화문국악당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24년 8월 12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 남산국악당 및 돈화문국악당은 서울을 대표하는 국악 거점공간으로,
 나. 기존 전시·체험중심의 남산골한옥마을과 공연중심의 남산국악당을 분리위탁하고, 국악전문 공연장인 남산국악당과 돈화문국악당 통합 위탁을 통한 시너지 극대화가 필요함
 다. 공모를 통한 전문기관에의 신규위탁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서울 남산국악당 및 돈화문국악당 관리·운영

나. 위탁시설 개요

구분	남산국악당	돈화문국악당
위치	중구 퇴계로 34길 28	종로구 율곡로 102
규모	대지 2,359㎡, 연면적 2,935㎡ (지상1/지하2층)	대지 834㎡, 연면적 1,773㎡ (지상1/지하3층)
시설	공연장(300석), 연습실, 국악 마당, 국악체험실, 전시실, 카페테리아(62.1㎡) 등	공연장(140석), 연습실, 국악마당, 카페테리아(91.15㎡) 등
개관	' 07. 11. 21	' 16. 9. 1.

다. 주요 위탁내용

- 위탁기간 : 2025. 1. ~ 2027. 12.(3년)
- 위탁유형 : 시설형 위탁
- 소요예산(안) : 6,314백만원
 - 민간위탁금 4,864백만원, 민간위탁사업비 1,443백만원, 공공운영비 7백만원
- 수탁기관 선정방법 : 신규위탁(공개모집)
- 위탁사무 범위
 - 서울남산국악당 및 돈화문국악당 시설물 통합 운영(유지·관리)
 - 서울지역 국악을 대표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국악 관련 공연 및 기획사업 등 프로그램 개발·운영
 - 서울의 대표적인 전통문화 관광상품화를 위한 홍보·마케팅 및 관광 프로그램 개발·운영

- 문화공연·체험행사 등 서울시 국악활성화 정책에 부합하고 서울시가 요구하는 사항 등에 대한 문화사업 운영
- 연간 운영성과 분석 및 개선·활성화 방안 마련, 시행

라. 제3자 재위탁

- 제3자 재위탁 시설 : 서울 남산국악당 및 돈화문국악당 내 카페테리아
- 대상면적 : 62.1㎡(남산국악당 카페), 91.15㎡(돈화문국악당 카페)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온비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국악 진흥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사무의위탁)

제12조(사무의위탁)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악 및 문화산업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3. 문화·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나. 예산조치 : '25년 예산편성 필요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적정

※ 작성자 :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이창선 (☎2133-2577)

운현궁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4년 8월 12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 가. 운현궁(사적 제257호)은 『서울특별시 국가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시 소유 문화유산으로서,
- 나.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을 위한 전통문화 프로그램 활성화와 다양한 콘텐츠 개발, 열린 문화공간으로서 서울을 대표하는 이색 관광명소로서 특화 및 거점화시키고자,
- 다. 문화유산 보존, 전승 또는 문화예술 창달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문화 행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해 서울특별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운현궁 관리 및 운영

나. 위탁시설 개요

- 시 설 명 : 운현궁 (사적 제 257호)
- 위 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 464(운니동)
- 규 모 : 대지 7,100㎡, 건물 6동 1,299.36㎡
- 공간구성 : 노안당 · 노락당 · 이로당, 수직사, 유물전시관, 기획전시실 등

다. 위탁개요

- 위탁기간 : 3년 (' 25.1월 ~ ' 27.12월)
- 위탁유형 : 시설형 민간위탁
- 소요예산(안) : 902백만원
 - 산출근거 : 인건비 436, 운영비 156, 행사비 178, 기타 132
- 수탁기관 선정방식 : 재위탁(공개모집)
- 위탁사무 범위
 - 운현궁 운영 및 유지·관리
 -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관광진흥을 위한 전통문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문화·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5조

제35조(시 소유 국가유산의 운영위탁) ① 시장은 시 소유 국가유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 소유 국가유산의 관리 및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1. 국가유산 보전, 전승 또는 문화예술 창달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단체 또는 자치구
2. 시 소유 국가유산을 관광 자원화하거나 명소(名所)화할 수 있는 법인, 단체 또는 자치구.

나. 예산조치 : '25년 예산편성 필요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적정

※ 작성자 : 문화본부 문화유산활용과 권현아 (☎2133-2665)

서울특별시 남산골한옥마을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4년 8월 12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남산골한옥마을은 서울시 민속문화유산(도편수 이승업 가옥 등 4개소)을 품은 서울의 대표 관광명소로서,
- 나. 민속문화유산과 한옥을 효과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차별화된 전통체험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남산골한옥마을을 시민 문화향유의 공간이자 이색관광지로 거점화시키고자 함
- 다. 남산골한옥마을의 운영·관리를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해 서울특별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남산골한옥마을 관리 및 운영

나. 위탁시설 개요

- 시 설 명 : 남산골한옥마을
- 위 치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34길 28
- 규 모 : 대지 7,934㎡, 연면적 1,297㎡
- 공간구성 : 전통가옥 5동(민속문화유산 4동), 공예전시관, 기념품점 등

삼각동 도편수 이승업 가옥	삼청동 오위장 김춘영 가옥	관훈동 민씨 가옥	제기동 해동부원군 윤택영 재실	옥인동 윤씨 가옥
시 민속문화유산 제20호	시 민속문화유산 제8호	시 민속문화유산 제18호	시 민속문화유산 제24호	-

다. 위탁개요

- 위탁기간 : 3년 (' 25.1월 ~ ' 27.12월)
- 위탁유형 : 시설형 민간위탁
- 소요예산(안) : 1,598백만원
 - 산출근거 : 인건비 512백만원, 운영비 490백만원, 사업비 355백만원, 일반관리비 등 241백만원
- 수탁기관 선정방식 : 신규위탁(공개모집)
- 위탁사무 범위
 - 전통문화의 계승·보존 및 관광 진흥을 위한 행사·공연 개발

- 서울시 문화정책과 연계한 문화행사·공연·전시 프로그램 등 운영
- 남산골한옥마을 전통가옥의 운영 및 유지·관리

라. 제3자 재위탁

- 제3자 재위탁 시설 : 남산골한옥마을 전통공예관 내 기념품점
- 대상면적 : 20.25m²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온비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문화·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5조

제35조(시 소유 국가유산의 운영위탁) ① 시장은 시 소유 국가유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 소유 국가유산의 관리 및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1. 국가유산 보존, 전승 또는 문화예술 창달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단체 또는 자치구
2. 시 소유 국가유산을 관광 자원화하거나 명소(名所)화할 수 있는 법인, 단체 또는 자치구.

나. 예산조치 : ' 25년 예산편성 필요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적정

※ 작성자 : 문화본부 문화유산활용과 권현아 (☎2133-2665)

서울특별시 서울책보고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4년 8월 12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해당 사업은 신천 유수지 내 유희건물을 책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서울시민의 독서환경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책 기반 복합문화공간 운영사업임
- 나. 해당 사업 운영사무는 독서문화진흥 관련 핵심 전문성이 요구되며, 고품질 시민독서문화 향유 프로그램 개발 및 독서출판문화계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시설 관리가 필요한 사무임
- 다. 공모를 통한 전문기관에의 재위탁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서울책보고 운영

나. 위탁시설 개요

- 위 치 : 송파구 오금로 1(신천동 14, 신천유수지 내)
- 규 모 : 지상1층 연면적 1,464,74㎡
- 소 유 자 : 서울시(주차계획과)
- 개 관 일 : ' 19. 3. 27.
- 사업내용
 - 독서생태계(출판사, 서점 등)을 아우르는 프로그램 운영
 - 시민을 위한 책문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북카페 운영 등 기타 운영관련 업무
 - 언론홍보, 홈페이지 관리 등 홍보업무 등

다. 주요 위탁내용

- 위탁기간 : 2년(2025. 1. ~ 2026. 12.)
- 위탁유형 : 시설형 위탁
- 소요예산(안) : 1,118백만원
 - 민간위탁금 1,066백만원, 시설비 47백만원, 공공운영비 5백만원
- 수탁기관 선정방법 : 재위탁(공개모집)
- 위탁사무 범위
 - 서울책보고 시설관리 및 사업운영 전반
 - 문화예술정책 사업 및 기타 시설물 관리 운영에 관한 서울도서관이 요구하는 사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문화·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31조(지역의 독서문화진흥)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31조(지역의 독서문화진흥) ① 시장은 시민의 활발한 독서활동을 위하여 독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하며, 독서문화진흥 사업을 추진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추진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5년 예산편성 필요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적정

※ 작성자 : 문화본부 서울도서관 탁성은 (☎2133-0212)

서울특별시 서울아트책보고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4년 8월 12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 가. 해당 사업은 고척스카이돔 지하 유희공간을 책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서남권 문화예술 시설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서울시민의 독서율과 책문화 향유기회를 제고하여 일상을 문화적으로 풍요롭게 영위토록 돕는 복합문화공간 운영 사업임
- 나. 해당 사업 운영사무는 독서문화진흥 관련 핵심 전문성이 요구되며, 고품질 시민독서문화 향유 프로그램 개발 및 독서출판문화계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시설 관리가 필요한 사무임
- 다. 공모를 통한 전문기관에의 재위탁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서울아트책보고 운영

나. 위탁시설 개요

○ 위 치 : 구로구 고척스카이돔 지하1층 (구로구 경인로 430)

○ 규 모 : 약 2,650㎡

○ 소 유 자 : 서울시(체육정책과)

○ 개 관 일 : ' 22.12.14.

○ 사업내용

- 독서생태계(출판사, 서점 등)을 아우르는 프로그램 운영
- 시민을 위한 책문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북카페 운영 등 기타 운영관련 업무
- 언론홍보, 홈페이지 관리 등 홍보업무 등

다. 주요 위탁내용

○ 위탁기간 : 2년(2025. 1. ~ 2026. 12.)

○ 위탁유형 : 시설형 위탁

○ 소요예산(안) : 1,812백만원

- 민간위탁금 1,671백만원, 사무관리비 50백만원, 공공운영비 91백만원

○ 수탁기관 선정방법 : 재위탁(공개모집)

○ 위탁사무 범위

- 서울아트책보고 시설관리 및 사업운영 전반
- 문화예술정책 사업 및 기타 시설물 관리 운영에 관한 서울도서관이 요구하는 사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문화·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31조(지역의 독서문화진흥)

제31조(지역의 독서문화진흥) ① 시장은 시민의 활발한 독서활동을 위하여 독서환경 조성 노력하여야 하며, 독서문화진흥 사업을 추진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추진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5년 예산편성 필요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적정

※ 작성자 : 문화본부 서울도서관 탁성은 (☎2133-0212)

서울수어전문교육원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4년 8월 12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민 대상 수어인구 확대를 위한 수어교육 지원 사업으로 2024년 12월 31일자로 협약 만료됨.(' 22.1.1. ~ ' 24.12.31.)
- 나. 서울시민 대상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수어교육 운영으로 수어에 대한 이해 확대와 공인수어 통역사 및 전문수어통역사 양성으로 농아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의사소통을 지원하고자 수어교육에 대한 공신력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선정, 농아인들의 자립 및 사회적 소외감 해소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수행 필요.
- 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
- 전문수어교육으로 공인수어통역사 양성
 - 전문영역 강의를 통한 수어통역사 역량강화
 - 청각장애인 강사와의 만남을 통한 장애인식개선
 - 수어를 배우고자 하는 일반 시민 교육 등
- 나. 위탁범위 : 사무운영, 부동산, 비품 및 장비 관리 일체
- 다. 위탁기간 : ' 25. 1. 1. ~ ' 27. 12. 31.(3년)
- 라. 운영개요

기관명	소재지	현 운영법인	총 위탁기간 (위탁횟수)	위탁기간 (위탁횟수)	위탁금 (백만원)
서울수어전문교육원	서대문구 경계대로 15엘림넷 5층	한국농아인 협회 서울시협회	' 09.4.13.~ ' 24.12.31. (7회)	' 22.1.1.~ ' 24.12.31. (7회)	613(' 24년)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71조(장애인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
「한국수화언어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복지실 장애인자립지원과 이성준(☎2133-7641)

서울특별시 대사중후군관리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4년 8월 12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대사중후군관리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만성질환 관리)에 근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 23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에 근거하여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위탁운영 중인 사업으로서,
- 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사중후군관리사업의 효율적 기술지원을 전문성과 노하우를 겸비한 기관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의3(의회동의 및 보고) 제1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재위탁)

2. 주요내용

가. 사업 목적 및 목표

장기목표	- 만성질환으로 인한 조기사망, 중증합병증 발생지연 - 건강수명 증가 및 만성질환으로 인한 질병부담 감소						
중기목표	- 만성질환 관리를 향상 - 서울시민 건강수준 향상						
단기목표 ('22-' 24년)	- 대사중후군 인지를 향상을 통한 예방 중심 건강관리사업 홍보 - 사업 대상자 대사중후군 유병률 감소 - 사업 대상자 건강수준 향상						
주요 성과 목표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목표	결과	목표	결과	목표	결과
	연간등록 실인원	4만명	62,290명	8만명	107,473명	12만명	-
	연간등록 실인원 중 검진사후관리 등록비율	40%	37.4%	40%	36.3%	35%	-
	취약계층 등록비율	8.7%	9.7%	7.0%	9.6%	9%	-
	6개월 추구관리율	43%	43.1%	44%	61.6%	53%	-
	위험요인 2개이하 감소비율	45%	41.8%	50%	41.8%	41%	-
	전문교육과정 참여비율	87%	97.5%	93%	97.5%	93.5%	-

나. 주요위탁내용

- 대사중후군 관리사업 대상 집중관리 전략 제시 및 실행지원
- 국가건강검진 연계 사후관리 활성화
- 자치구 보건소 대사중후군관리사업 질 관리 강화

- 대사증후군 관리 대시민 인지도 확산 및 홍보
- 대사증후군 관리 콘텐츠 제작, 담당자 공통·지역별 교육 수행
- 대사증후군관리사업 효과 평가 및 지역자원 연계, 참여 활성화 등

다. 민간위탁 추진현황

- 위탁기간: 3년 (2025. 1. 1. ~ 2027. 12. 31.)
- 위탁방법: 공개모집 (재위탁)
- 소요예산: 508,677,000 (2025년 예상금액)
- 민간위탁 추진경위

차수	기간	수탁자	수탁방법
1차	2009.6.15.~2009.12.31	서울의료원 의학연구소	신규위탁
2차	2010.3.1.~2010.12.31.	서울의료원 의학연구소	재계약
3차	2011.3.23.~2013.2.10.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재위탁(공모)
4차	2013.2.11.~2016.2.10.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재위탁(공모)
5차	2016.2.11.~2019.2.10.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재위탁(공모)
6차	2019.2.11.~2021.12.31.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재위탁(공모)
7차	2022.1.1.~2024.12.31.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재위탁(공모)

라. 민간위탁(재위탁) 필요성

-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관에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현장 밀착형 상시 기술자문으로 사업의 발전적 운영을 도모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함
- 서울시민에의 대사증후군 예방관리를 위한 건강 계획을 제공하는 사업 제공인력들의 지역별 체계화 된 전문교육을 통한 사업의 질 향상을 위해 재위탁이 필요함
- 데이터베이스 통계 분석 등을 시행하여 대시민 건강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사업 근거자료 마련을 위해 전문기관의 개입이 필요
- 최종적으로, 지역사회 내 주민들의 만성질환 역량 강화와 더불어 지속적인 예방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한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므로, 지원단의 축적된 전문성 및 다양한 경험 활용을 위해 재위탁이 필요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보건의료기본법]**제41조(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고혈압 등 주요 만성질환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고 말기질환자를 포함한 만성질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의 제공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국민건강증진법]**제19조(건강증진사업 등)**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요원 및 시설을 확보하고, 그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2. 영양관리
 3. 신체활동장려
 5.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
 6. 지역사회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7. 기타 건강교실의 운영등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 ③ 보건소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업무를 행한 때에는 이용자의 개인별 건강상태를 기록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지역보건법]**제30조(권한의 위임 등)**

-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에 위탁하거나,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의료인에게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드는 실비(實費)를 보조할 수 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제23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 ①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건 의료 관련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4. 법 제11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 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 실험 또는 검사 업무
 5. 법 제11조제1항제5호사목에 따른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 의료사업에 관한 업무
- ②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법 제11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해야 한다.
- ④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비용보조, 실비보조, 그 밖의 업무의 위탁 또는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8. 그 밖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사.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민간위탁 사전이행 절차 수행

- 2024. 4. : 민간위탁추진 계획 수립(재위탁)

- 2024. 4.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완료(적정, 2024년 제3차)
- 2024. 7.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완료 (79.51점, 2024년 3차)
- 향후계획
 - 2024. 8. 부터 : 시의회 동의 및 재위탁 추진

※ 작성자 :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강선미 (☎ 2133 - 7594)

서울특별시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4년 8월 12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자살예방센터는 서울시민의 자살예방을 위한 시민 참여기반 통합적 생명돌봄체계 구축으로 모두가 더불어 생명을 돌보기 위해 전문기관에서 위탁운영 중으로 '24년 12월까지 재계약 만료 예정으로,
- 나. 이태원 참사 등과 같은 자살 고위험군요인 변화 등으로 자살예방정책 변화와 같은 외부 환경변화에 유기적 대처를 위해 전문성과 노하우를 겸비한 기관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제1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재위탁)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서울특별시자살예방센터 운영

나.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11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①항 3호

다. 민간위탁 필요성

- 코로나 이후 '23년부터 자살률 증가추세(국가자살동향시스템)로 자살 관련 전문가에 의한 대학, 유관기관 등과 범사회적인 자살 네트워크 자살예방 사업 추진 필요
- 이태원 참사 등과 같은 자살고위험군요인 변화 등으로 자살예방 정책 변화와 같은 외부 환경변화에 유기적 대처가 가능
- 근거기반 자살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자살통계 구축과 자치구 특성 자살분석지원, 자살업무 담당 실무자 역량 강화 등 자치구 특성에 맞는 자살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 가능

라. 위탁유형 : 시설위탁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2길 30 15층
- 시설규모 : 면적 1,625.34㎡(15층), 보증금 422,836,200원

마. 위탁기간 : 3년(2025.1.1.~2027.12.31.)

바. 위탁사무

- 자치구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 사업 기술 지원
- 24시간 상담전화 운영
- 자살예방 매뉴얼 개발 및 보급
- 자살예방 전문인력 및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 교육
- 생애주기별 등을 반영한 자살예방 계획 수립 및 근거기반 자살예방사업
- 자살유족에 대한 상담 등 지원서비스

- 자살예방에 대한 연구 지원 및 자살수단에 대한 통제
 -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연계, 사후관리
 -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인식개선 사업
 - 그 밖에 이 사업과 관련하여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사. 그간 위탁내용

선정방법	위탁기간	수탁기관
- 최초위탁 등	3년(' 16.3.1 ~ ' 19.2.28)	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
- 재위탁(공모)	3년(' 19.3.1 ~ ' 21.12.31)	의료법인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
- 재계약	3년(' 22.1.1 ~ ' 24.12.31)	의료법인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 제4조, 제13조(자살예방센터 설치) ①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약칭: 자살예방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위험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자살 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시현장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자의 유족 지원 및 관리
5.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6. 자살예방 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7.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자살자의 유족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자살예방법 시행령 제8조(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의 위탁)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약칭: 자살예방법 시행령)]**

제8조(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의 위탁) ① 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 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4. 그 밖에 자살예방에 관한 전문 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

○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항**[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13조(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 등)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은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자살예방을 위한 24시간 상담
2. 자살위기 상시현장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6.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7.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체육·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공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시립병원,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7.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8.영어마을 운영에 관한 사무

9.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 24년 서울시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별도 제출

※ 작성자 :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김정순 (☎2133-7547)

서울특별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4년 8월 12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따라 서울시민의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05년 4월에 설치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로,
- 나. 광역단위 사업기획 및 운영업무, 25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센터 지원, 지역사회 정신건강 위기대응사업, 재난정신건강서비스 지원, 지역자원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 다. 정신관련 분야의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 민간위탁 기간이 ' 24.12.31.字 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 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제1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서울특별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나. 추진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정신건강복지 센터의 설치 및 운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①항 3호

다. 민간위탁 필요성

- 코로나19 장기화 및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적 환경변화로 경증 정신건강문제와 함께 중증 정신질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서울시민의 마음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다 학제적 접근이 필요함.
- 정신건강증진 사업추진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성 강화로 서울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 공하기 위해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관·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적절함.

라. 주요 위탁사무

-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 25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센터 지원, 종사자 역량강화
 - 지역사회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재난정신건강서비스 지원
 - 찾아가는 심리지원사업, 청(소)년 정신건강사업, 중독관리사업 등
 - 정신건강증진시설 지원 및 당사자·가족 지원사업 등
-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운영(업무개발 및 기술지원, 평가 등)

○ 그 밖에 이 사업과 관련하여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마. 위탁유형 : 시설위탁

○ 시설명 :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 소재지, 시설규모

－ (본관)서울중로구 동승 3길 40(일석기념관), 695.84㎡(211평)

－ (별관, 청년마음건강센터)서울 중로구 대학로 12길, 238.64㎡(72.1평)

－ (별관,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155, 299.09㎡(90.4평)

바. 위탁기간 : 3년('25. 1. 1.~'27.12.31.)

사. 그간 위탁내용

선정방법	위탁기간	수탁기관
- 신규위탁 등	'05. 1.20.~ '16. 3. 5.	용인병원유지재단
- 재위탁(공모)	'16. 3. 6.~ '19. 5.29.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시자살예방센터 분리('16년)
- 재위탁(공모)	'19. 5.30.~ '21.12.21.	서울의료원
- 재계약	'22. 1. 1.~ '24.12.31.	서울의료원

아.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 －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비영리 법인 및 단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②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에서의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제9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정신건강증진시설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 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민간위탁 사전이행 절차

- 2024. 5. 16. : 민간위탁추진 계획 수립
- 2024. 5. 29.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완료(적정, 2024년 제4차)

※ 작성자 :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김향숙 (☎ 2133-7546)

시립 강북늘푸른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4년 8월 12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 가. 시립 강북늘푸른교육센터는 가출 및 성매매 피해 경험이 있는 위기 십대여성을 대상으로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취득, 직업체험 등 일자리프로그램, 심리·정서 지원 등을 통해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여 위기 십대여성들이 안정적으로 자립을 준비하고 사회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임
- 나. 위기 십대여성의 교육과 자립준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과 인적 자원 등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기관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이며,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현황

- 시설명 : 시립 강북늘푸른교육센터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98길 33, 3층
- 시설규모 : 253.6㎡
- 주요시설 : 교실2, 작업장2, 상담실, 다목적실, 사무실 등

나. 주요위탁 내용

- 위탁기간 : 2025. 1. 12. ~ 2028. 1. 11.(3년)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재위탁)
- 소요예산 : 449백만원('24년 기준)
- 위탁사무
 - 학력취득을 위한 개인별 맞춤 학습 및 검정고시 수업 운영
 - 기술습득 및 직업훈련을 위한 진로교육 및 상담, 일자리프로그램 운영, 인턴활동 및 취업 연계
 - 심리·정서 프로그램, 찾아가는 거리학교, 직업체험 축제 등

다. 민간위탁 필요성

- 시립 강북늘푸른교육센터는 가출 및 성매매 피해 등을 겪고 있는 위기 십대여성을 대상으로 학업지원, 진로교육, 일자리프로그램 등 개인별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으로 사업 운영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됨
- 성매매 재유입 방지 및 자립준비를 위해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고 연계할 수 있는 해당 분

야의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 제5조, 제7조

제5조(위기 십대여성지원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위기 십대여성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시설은 제4조에 규정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③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지원시설의 명칭·위치 및 주요기능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별표 1의 지원시설에 대한 운영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시설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위탁 운영 지원시설의 관리·운영, 인사, 예산·회계, 재산·물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및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등"이라 한다)과 시장이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기준 등에 따른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탁 운영 지원시설의 종사자 채용 및 자격기준, 보수, 경력인정 범위 등에 대한 사항을 관계 법령 및 운영지침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 제6조 제1호 및 제9호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나. 예산조치 : 2025년 민간위탁 예산 편성 예정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여성가족실 양성평등담당관 최주윤 (☎2133-5048)

시립 관악늘푸른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4년 8월 12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 가. 시립 관악늘푸른교육센터는 가출 및 성매매 피해 경험 있는 위기 십대여성을 대상으로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취득, 직업체험 등 일자리프로그램, 심리·정서 지원 등을 통해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여 위기 십대여성들이 안정적으로 자립을 준비하고 사회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임
- 나. 위기 십대여성의 교육과 자립준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과 인적 자원 등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기관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이며,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현황

- 시설명 : 시립 관악늘푸른교육센터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천로 113(신림동)
- 시설규모 : 550.2㎡(지상 1~5층, 지하 1층)
- 주요시설 : 교실2, 작업장2, 공연장, 일시보호실, 사무실 등

나. 주요위탁 내용

- 위탁기간 : 2025. 1. 12. ~ 2028. 1. 11.(3년)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재위탁)
- 소요예산 : 647백만원('24년 기준)
- 위탁사무
 - 학력취득을 위한 개인별 맞춤 학습 및 검정고시 수업 운영
 - 기술습득 및 직업훈련을 위한 진로교육 및 상담, 일자리프로그램 운영, 인턴활동 및 취업 연계
 - 심리·정서 프로그램, 찾아가는 거리학교, 직업체험 축제 등

다. 민간위탁 필요성

- 시립 관악늘푸른교육센터는 가출 및 성매매 피해 등을 겪고 있는 위기 십대여성을 대상으로 학업지원, 진로교육, 일자리프로그램 등 개인별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으로 사업 운영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됨
- 성매매 재유입 방지 및 자립준비를 위해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고 연계할 수 있는 해당 분

야의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 제5조, 제7조

제5조(위기 십대여성지원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위기 십대여성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시설은 제4조에 규정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③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지원시설의 명칭·위치 및 주요기능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별표 1의 지원시설에 대한 운영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시설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위탁 운영 지원시설의 관리·운영, 인사, 예산·회계, 재산·물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및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 「여성·아동 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등"이라 한다)과 시장이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기준 등에 따른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탁 운영 지원시설의 종사자 채용 및 자격기준, 보수, 경력인정 범위 등에 대한 사항을 관계 법령 및 운영지침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 제6조 제1호 및 제9호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나. 예산조치 : 2025년 민간위탁 예산 편성 예정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여성가족실 양성평등담당관 최주윤 (☎2133-5048)

시립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4년 8월 12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 가. 시립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는 가출, 성매매 등 위기 십대여성 전용 일시쉼터로 상담카페 운영, 온·오프라인 현장상담 등을 통해 성착취 피해에 노출된 위기 십대여성들의 조기발견, 일시보호, 긴급생활지원 등을 통해 초기개입하여 성매매 유입을 방지하도록 운영 중인 시설임
- 나. 민간기관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위기 십대여성을 위한 초기개입 및 일시쉼터로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이며,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현황

- 시 설 명 : 시립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 소 재 지 :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152-1 2,3층
※야간보호 공간 비공개
- 시설규모 : 상담카페 및 주간보호 공간 120㎡, 야간보호 공간 95.21㎡
- 주요시설
 - 상담카페 및 주간보호 공간 : 카페, 침실, 주방, 욕실, 화장실 등
 - 야간보호 공간 : 침실2, 거실 및 주방, 사무실, 세탁·욕실 등

나. 주요위탁 내용

- 위탁기간 : 2025. 1. 1. ~ 2027. 12. 31.(3년)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재위탁)
- 소요예산 : 379백만원('24년 기준)
- 위탁사무
 - 위기 십대여성 전용 일시쉼터 및 상담카페 운영
 - 일시보호, 숙식제공, 세탁·샤워 등 일상생활지원 및 상담
 - 청소년 밀집지역 현장상담 및 온라인 상담, 지원기관 정보제공, 귀가지원 및 보호시설 연계
 -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협조체계 구축

다. 민간위탁 필요성

- 시립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는 가출 및 성매매 피해 등의 복합적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십

대여성이 낙인감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담카페 및 위기 십대여성 전용 일시쉼터를 운영하여 위기 상황에 따른 적절한 상담 및 서비스를 제공·연계하는 시설로 위기 십대 여성에 대한 이해와 전문지식, 노하우가 필요함

- 또한, 변화하는 사회환경과 위기 십대여성의 욕구를 반영하여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는 초기개입 및 성매매 재유입을 방지하고자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다양한 민간자원의 활용 및 연계하고 해당 분야의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 제5조, 제7조

제5조(위기 십대여성지원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위기 십대여성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시설은 제4조에 규정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③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지원시설의 명칭·위치 및 주요기능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별표 1의 지원시설에 대한 운영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시설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위탁 운영 지원시설의 관리·운영, 인사, 예산·회계, 재산·물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및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등"이라 한다)과 시장이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기준 등에 따른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탁 운영 지원시설의 종사자 채용 및 자격기준, 보수, 경력인정 범위 등에 대한 사항을 관계 법령 및 운영지침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 제6조 제1호 및 제9호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나. 예산조치 : 2025년 민간위탁 예산 편성 예정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여성가족실 양성평등담당관 최주윤 (☎2133-5048)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보라매점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4년 8월 12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보라매점」은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와 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전용시설임
- 나. 보라매공원 내에 서울형 키즈카페를 조성하여 아동이 자유롭게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놀이 공간에서 충분히 놀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아동의 놀이권을 보장하고자 함
- 다. 아동의 재미있고 안전한 놀이를 위한 각종 서비스 제공 및 아동 놀이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아동 놀이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단체를 선정하여 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기 관 명 :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보라매점
- 위 치 :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
- 규 모 : 341.60㎡, 지상 1층
- 이용아동 및 종사자 정원 : 회차별 아동 27명(안) / 종사자 5명

나. 위탁내용

- 위탁사무 :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보라매점」 운영 및 관리
 - 조직·인사 관리, 예산집행 및 회계·계약, 물품 및 재산관리, 시설물 유지관리
 -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프로그램 및 안전한 놀이공간 운영
 - 적정한 이용비용 책정을 통해 키즈카페 이용에 대한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돌봄전담인력 등을 활용한 돌봄·놀이 복합시설로 운영
- 위탁기간 : 5년(2025.3. ~ 2030.3.) ※ 예정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 23년 제5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 23.7.26.)
 - ' 25년 소요예산(안) : 450백만원(민간위탁금, 민간위탁사업비)
 - 인건비 : 217백만원 / 운영·사업비 : 125백만원 / 기자재비 : 108백만원

다.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53조(아동전용시설의 설치)

-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7조의2(실내 어린이놀이기구의 설치 및 운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민간위탁의 필요성
 - 계절과 미세먼지에서 자유롭고, 경제적 부담이 없는 놀이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 전역에 서울형 키즈카페를 확충하고 있으며,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보라매점의 조성 및 운영을 통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아동의 주도적인 놀이활동을 가능하도록 하여 아동 놀이권 보장을 지원하고자 함
 -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보라매점은 보라매공원 내에 위치하여 공원 생태 환경과 어우러진 놀이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으로, 공간 특성에 맞는 자연친화적인 놀이 및 돌봄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을 수행할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 서울형 키즈카페 전반의 관리·운영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아동 특성에 대한 이해도, 놀이 및 돌봄에 대한 기술·지식과 경험을 갖춘 우수한 법인·단체를 선정하여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제53조(아동전용시설의 설치)]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7조의2(실내 어린이놀이기구의 설치 및 운영)]

- ① 시장은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하여 실내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 ①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2025년 본예산 편성 요구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여성가족실 아이돌봄담당관 강 한 (☎2133-4808)

서울특별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4년 8월 12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또는 우리 시를 방문하는 외빈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격려하고 국제우호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나.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제4조)에 의거, 명예시민 수여대상자에 대해 서울특별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추진경과

- 2024. 5. 31 ~ 6. 28 명예시민 추천공고 및 접수(총 27명)
- 2024. 7. 19 명예시민증 수여 심사위원회 개최
(추천자 27명 중 16명 선정)

나. 선정결과 : 총 16명(남 8명, 여 8명) ※ 세부명단 별첨

○ 국가 및 지역 : 14개국(※ 국명 가나다순)

네덜란드	1	대만	2	독일	1	미국	1
볼리비아	1	베트남	1	스위스	1	아르헨티나	1
오스트리아	1	일본	2	중국	1	카자흐스탄	1
콩고민주공화국	1	프랑스	1				

다. 향후일정(안)

- 2024.11월 말~12월 「2024 명예시민증 수여식」 개최

라. 관련근거

- 1) 수여대상 :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2조
- 서울특별시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총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외국인 중 서울특별시정에 공로가 현저하고 서울특별시민과 거주 외국인에게 귀감이 되는 자
 - 서울특별시를 방문하는 외빈 또는 현지외국인
-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주요건 등을 완화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음
- 2) 수여대상자 결정 :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4조 제1항

-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은 공공단체의 장, 사회단체의 장 또는 30인 이상의 연서로 추천된 자 중에서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

3) 서울시의회 동의 :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4조 제2항

- 시장은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해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려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다만, 긴급한 사유 발생 시 시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글로벌도시정책관 도시외교담당관 이병진 (☎ 2133-5288)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 세종대학교 -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4년 8월 12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안 건 명 :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2. 안건내용
- 가.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 고 (기본계획결정일)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학교	대 학 (세종대)	합 계		117,804.2	-	117,804.2	서고시 제94호 (1976.04.30)	서고시 제2020-533호 (2020.12.10)
			제1 캠퍼스	광진구 군자동 98일대	108,268.2	-	108,268.2		
			제2 캠퍼스	광진구 군자동 111-1일대	9,086.0	-	9,086.0		
			제3 캠퍼스	광진구 군자동 275-2일대	450.0	-	450.0		

- 나.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조서
- 1) 구역계획

구 역		구 분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관 리	일반관리구역	①	21,094.0	-	21,094.0	선형변경
		②	3,177.0	-	3,177.0	선형변경
		③	13,839.0	-	13,839.0	변경없음
		④	7,086.2	증) 10,728.0	17,814.2	선형,면적변경
		⑤	27,255.0	감) 196.0	27,059.0	선형,면적변경
		⑥	2,681.0	-	2,681.0	변경없음
유 지	상징경관구역	⑦	22,769.0	감) 17,431.0	5,338.0	선형,면적변경
	외부활동구역	⑧	4,949.0	증) 6,899.0	11,848.0	선형,면적,위치변경
		⑨	5,418.0	-	5,418.0	변경없음
	소계 (제1캠퍼스)		108,268.2	-	108,268.2	

구역		구분	면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관 리	일반관리구역	⑩	9,086.0	-	9,086.0	변경없음
	소계 (제2캠퍼스)		9,086.0	-	9,086.0	
	일반관리구역	⑪	450.0	-	450.0	변경없음
	소계 (제3캠퍼스)		450.0	-	450.0	
합 계			117,804.2	-	117,804.2	

2) 밀도계획 (건폐율)

구분		용도지역면적(㎡)		조례건폐율(%)		사용건폐율(%)		관리건폐율(%)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제1 캠퍼스	제1종일반주거	108,268.2	2,279.2	60.00	60.00	29.95	37.53	40.00	40.00	
	제2종일반주거		105,989.0		60.00		30.65		40.00	
	소계	108,268.2	108,268.2	60.00	60.00	29.95	30.80	40.00	40.00	
제2 캠퍼스	제2종일반주거	9,086.0	8,984.0	60.00	60.00	26.99	26.99	40.00	40.00	
	제3종일반주거		102.0		50.00		26.99		40.00	
	소계	9,086.0	9,086.0	60.00	59.89	26.99	26.99	40.00	40.00	
제3 캠퍼스	제2종일반주거	450.0	450.0	60.00	60.00	-	-	40.00	40.00	
	소계	450.0	450.0	60.00	60.00	-	-	40.00	40.00	
합 계		117,804.2	117,804.2	60.00	59.99	29.61	30.39	40.00	40.00	

※ 밀도산정시 제외면적 : 해당없음

※ 제2캠퍼스 제3종일반주거지역(102㎡)는 330㎡이하로 국토계획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를 적용하여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함.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기준 적용)

3) 밀도계획 (용적률)

()는 혁신성장시설에 따른 완화용적률 포함임

구분		밀도산정 기준면적(㎡)	조례용적률(%)		사용용적률(%)		관리용적률(%)		완화용적률(%)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제1 캠퍼스	제1종일반	2,279.2	198.95	150.00	175.43	113.17	189.45	120.00	-	-	

구 분		밀도산정 기준면적(㎡)	조례용적률(%)		사용용적률(%)		관리용적률(%)		완화용적률(%)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제2종일반	105,989.0		200.00		186.22 (205.83)		198.60 (218.43)		19.83	혁신성장 시설완화
	소계	108,268.2	198.95	198.95	175.43	184.68 (203.88)	189.45	196.94 (216.36)	-	19.42	
제2 캠퍼스	제2종일반	8,984.0	200.00	200.00	194.45	194.45	200.00	200.00	-	-	
	제3종일반	102.0		250.00							
	소계	9,086.0	200.00	200.56	194.45	194.45	200.00	200.00	-	-	
제3 캠퍼스	제2종일반	450.0	200.00	200.00	-	-	120.00	120.00	-	-	
	소계	450.0	200.00	200.00	-	-	120.00	120.00	-	-	
합 계		117,804.2	199.03	199.08	176.23	184.73 (202.38)	190.00	196.88 (214.73)	-	-	

※ 밀도산정시 제외면적 : 해당없음

※ 제2캠퍼스 제3종일반주거지역(102㎡)는 330㎡이하로 국토계획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를 적용하여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함.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기준 적용)

※ 제1캠퍼스 내 완화용적률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⑤항 규정에 의거 혁신성장시설 설치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 120% 이하의 범위에서 밀도산정 기준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산정하였음

- 완화용적률(제2종) : $21,020.76\text{㎡}(\text{혁신성장시설 관리면적}) / 105,989.0\text{㎡}(\text{제2종면적}) = 19.83\%$

- 완화용적률(제1캠) : $21,020.76\text{㎡}(\text{혁신성장시설 관리면적}) / 108,268.2\text{㎡}(\text{제1캠면적}) = 19.42\%$

4) 구역별 밀도계획 (용적률)

()는 혁신성장시설에 따른 완화용적률 포함임

구분		구역면적(㎡)		조례용적률(%)		사용용적률(%)		이전용적률(%)		관리용적률(%)		완화 용적률 (%)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1 캠 퍼 스	①	21,094.0	21,094.0	200.00	200.00	149.21	149.21	-	-	190.00	190.00	-	
	②	3,177.0	3,177.0	200.00	200.00	257.34	257.34	+70.00	+60.00	270.00	260.00	-	• ⑨구역에서 1,906.20㎡ 용적 이전 받음

구분		구역면적(㎡)		조례용적률(%)		사용용적률(%)		이전용적률(%)		관리용적률(%)		완화 용적률 (%)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③	13,839.0	13,839.0	200.00	200.00	338.82	338.55	+145.00	+145.00	345.00	345.00	-	• ⑦구역에서 9,279.31㎡ ⑧구역에서 2,019.98㎡ ⑨구역에서 8,767.26㎡ 용적 이전 받음
	④	7,086.2	17,814.2	200.00	200.00	308.46	213.85 (330.57)	+115.00	+15.00	315.00	215.00 (333.00)	118.00	• ⑧구역에서 2,672.13㎡ 용적 이전 받음 • 혁신성장시설 완화면적 21,020.76㎡
	⑤	27,255.0	27,059.0	197.00	196.08	253.41	255.24	+68.00	+68.92	265.00	265.00	-	• ⑧구역에서 18,648.45㎡ 용적 이전 받음
	⑥	2,681.0	2,681.0	198.00	197.03	188.72	188.72	-	-	198.00	197.03	-	
	⑦	22,769.0	5,338.0	200.00	200.00	11.37	22.91	-170.00	-173.83	15.00	25.00	-	• ③구역으로 9,279.31㎡ 용적이전 • 잔여:62.19㎡(1.17%)
	⑧	4,949.0	11,848.0	200.00	200.00	97.50	-	-	-197.00	105.00	3.00	-	• ③구역으로 2,019.98㎡ ④구역으로 2,672.13㎡ ⑤구역으로 18,648.45㎡ 용적 이전
	⑨	5,418.0	5,418.0	200.00	200.00	-	-	-195.00	-197.00	5.00	3.00	-	• ②구역으로 1,906.20㎡ ③구역으로 8,767.26㎡ 용적 이전
	소계	108,268.2	108,268.2	198.95	198.95	175.43	184.68 (203.88)	-	-	189.45	196.94 (216.36)	19.42	
2 캠퍼스	⑩	9,086.0	9,086.0	200.00	200.56	194.45	194.45	-	-	200.00	200.00	-	
	소계	9,086.0	9,086.0	200.00	200.56	194.45	194.45	-	-	200.00	200.00	-	
3 캠퍼스	⑪	450.0	450.0	200.00	200.00	-	-	-	-	120.00	120.00	-	
	소계	450.0	450.0	200.00	200.00	-	-	-	-	120.00	120.00	-	
합계		117,804.2	117,804.2	199.03	199.08	176.23	184.73 (202.38)	-	-	190.00	196.88 (214.73)	-	

※ ④일반관리구역 내 혁신성장시설의 완화용적률 산정

－ 완화용적률 : 21,020.76㎡(혁신성장시설 관리면적) / 17,814.2㎡(④구역부지면적) = 118.00%

5) 높이계획

구역	높이 (m)		비고
	기정	변경	
①일반	• 지표로부터 최대 +48m(12층)이하	• 지표로부터 최대 +48m(12층)이하	
②일반	• 지표로부터 최대 +28m(7층)이하	• 지표로부터 최대 +28m(7층)이하	
③일반	• 지표로부터 최대 +28m(7층)~70m(15층)이하	• 지표로부터 최대 +28m(7층)~70m(15층)이하	
④일반	• 지표로부터 최대 +28m(7층)~56m(12층)이하	• 지표로부터 최대 +12m(3층)~80m(13층)이하	혁신성장 시설도입
⑤일반	• 지표로부터 최대 +28m(7층)~48m(12층)이하	• 지표로부터 최대 +28m(7층)~48m(12층)이하	
⑥일반	• 지표로부터 최대 +28m(7층)이하	• 지표로부터 최대 +28m(7층)이하	
⑦상징	• 지표로부터 최대 +12m(3층)~36m(9층)이하 - 단, 종탑(67.3m): 70m이하 [기존건축물]	• 지표로부터 최대 +12m(3층)~28m(7층)이하 - 단, 종탑(67.3m): 70m이하 [기존건축물]	
⑧외부	• 지표로부터 최대 +12m(3층)~28m(7층)이하	• 지표로부터 최대 +12m(3층)이하	
⑨외부	• 지표로부터 최대 +12m(3층)이하	• 지표로부터 최대 +12m(3층)이하	
⑩일반	• 지표로부터 최대 +48m(13층)이하	• 지표로부터 최대 +48m(13층)이하	
⑩일반	• 지표로부터 최대 +28m(7층)이하	• 지표로부터 최대 +28m(7층)이하	

6) 변경 건축물 조서

구분	구역	건물명	건축면적(㎡)		연면적(㎡)		지상층연면적(㎡)		층수 (지하/지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제1 캠퍼스	②일반	학생회관	1,597.65	1,679.79	11,751.87	12,743.17	8,175.58	8,175.58	2/6	2/6	•변경계획취소
	③일반	광개토관	2,352.07	2,315.29	51,641.12	52,019.33	33,226.92	33,190.14	4/15	4/15	•변경계획취소
	⑦상징	애지현→ 애지현교회	602.57	601.98	602.57	1,161.35	602.57	1,161.35	0/1	0/3	•변경계획취소 •명칭변경 •1층수평증축
		대양복합관	1,699.06	-	74,777.16	-	1,925.38	-	4/4	-	•신축계획취소
	④일반	애지현	-	2,566.95	-	52,744.83	-	32,204.91	-	6/13	•금회신축 (혁신성장시설)
합 계			6,251.35	7,164.01	138,772.72	118,668.68	43,930.45	74,731.98			

7) 혁신성장계획

① 혁신성장 용도 및 건축물 조서

건물명	구역	건축면적	연면적	높이/층수	비고			
애지현 (금회신축)	④	2,566.95㎡	•연면적:52,744.83㎡ •용적률산정용연면적:32,204.91㎡ •완화용적률:118.00% •완화연면적:21,020.76㎡ -완화가능면적 :43,079.36㎡	•기준:46.19m이하 •완화:80m이하	〈혁신성장시설〉 ■용도구분 ① 혁신성장용도(18,374.69㎡) -산학혁신:산학연구실, 실험실 -미래인재육성:시청각실, 실험실, 연구실 ② 지역기여용도(2,417.30㎡): 전시장 〈교육연구시설〉 -교육연구시설(11,412.92㎡): 강의실, 행정실, 실험실,연구실 〈면적기준〉			
					구분	기준	적용	혁신성장기능
구분	기준	적용						
혁신성장기능	50%이상	64.56%						
산학혁신·미래인재육성	30%이상	57.05%						

※ 완화가능면적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⑤항 규정에 의거 혁신성장시설 설치에 따라 제1캠퍼스 내 용도지역별 용적률 120%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한 면적

※ 완 화 높 이 : 시설의 용도 및 입지특성을 고려하여 1.5D사선적용을 완화한 높이

② 1캠퍼스 완화 용적률 산정

구 분		밀도산정 기준면적(㎡)	조례 용적률(%)	완화가능 조례용적률(%)	완화용적률(%)		비 고
					기정	변경	
1 캠퍼스	제1종일반주거지역	2,279.2	150.00	30.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105,989.0	200.00	40.00	–	19.83	
합 계		108,268.2	198.95	39.79	–	19.42	

③ 1캠퍼스 완화 용적면적 산정

구 분		밀도산정 기준면적(㎡)	조례용적률 (%)	용적률산정 기준면적(㎡)	혁신성장시설 완화가능용적률(%)	완화가능면적 (㎡)	혁신성장시설 관리면적(㎡)	잔여면적 (㎡)
1 캠퍼스	제1종	2,279.2	150.00	3,418.8	30.00	683.76	–	683.76
	제2종	105,989.0	200.00	211,978.0	40.00	42,395.60	21,020.76	21,374.84
합 계		108,268.2	198.95	215,396.8	39.79	43,079.36	21,020.76	22,058.60

- ※ 국토계획법 제84조 규정에 의거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의 경우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함
- ※ 제1캠퍼스 내 완화용적률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⑤항 규정에 의거 혁신성장시설 설치에 따라 용도지역별 용적률 120%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가가능함

3. 입안사유

- 2020년 기결정된 대양복합관 외 3개동 건축계획을 원자재 및 인건비 상승 등의 사유로 취소하고자 함[기결정: 서고시 제2020-533호('20.12.10.)]
- 아울러, 첨단(신기술)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금회 신축예정인 애지헌 건물을 혁신성장시설로 지정하고, 학교경계부 1.5D 사선 적용 완화 및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20% 이하 범위 내 용적률 완화를 통해 세부시설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함

4. 도시관리계획 사항

- 용 도 지 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 도시계획시설 : 학교

5. 주민 의견청취 사항

- 의견청취기간 : 2024. 6.27. ~ 7.11.
- 계 재 신 문 : 이데일리, 머니투데이
- 열 랑 장 소 :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광진구 도시계획과
- 의견청취결과 : 주민의견 없음

6. 관련부서 검토의견

협의를부서	검토의견	조치계획	반영 여부
서울시 수변감성 도시과	○ 기후변화 대응 및 물순환 건전성 회복을 위해 개발로 인한 물순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영향개발기법(LID)과 유류물자원 활용체계를 계획에 반영 - 사업지 내 발생하는 유출지하수 등의 물자원은 사업대상지 내 • 외 관리용수, 천수용수로 재이용하거나, 인접한 하천의 유지용수로 활용하여 하수도로 배출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	▶ 금회 애지헌 신축계획에 따라 천 생태적 우수관리를 위하여 지하6층에 우수조를 계획하여 저영향개발기법(LID)을 도입하고, 사업지 내 발생하는 유출지하수 등의 물 자원은 재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 하수도로 배출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음	반영

협의부서	검토의견	조치계획	반영 여부
광진구 문화예술과	○ 세종대학교 신축건축물 내 전시장 운영 시 광진구민, 광진구에 소재한 기관/단체들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대관, 지역문화 예술인 대상 사용자 감면 등의 방안으로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여 지역 문화 활성화 기여 필요	▶ 지역기여시설(전시장) 운영 시 지역주민에게 문화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전시관람을 무료로 운영할 계획이 있으며, 지역문화 예술인 및 광진구 소재 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작품전시, 행사진행 등에 대하여 대관 및 사용자 감면 등의 방안을 검토하겠음	반영

7. 기 타

○ 재원조달계획

(단위: 백만원)

공종별	총사업비	비고
계	122,131 (100.0%)	
건축기금	121,831 (99.7%)	학교자체예산
교비	300 (0.3%)	학교자체예산

○ 연차별 예산계획

(단위: 백만원)

공종별	총사업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비고
계	122,131	1,197	24,350	35,298	35,298	25,988	
건축기금	121,831	897	24,350	35,298	35,298	25,988	애지현 (신축)
교비	300	300	-	-	-	-	애지현교회 (일부증축)

- 환경성 검토 결과 녹지훼손, 지형변화, 경관 및 일조 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시행 시 환경저해요소(소음, 진동 등)의 저감방안 계획을 수립하여 주변지역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음
- 교통성 검토 결과 당해 계획으로 인해 주변가로 및 교차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시행 전 교통영향평가(변경) 실시 예정임
- 재해취약성분석 결과 대상지는 폭우·폭설·가뭄·강풍 부문이 3등급으로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판단되나 폭염의 경우 2등급 해당하여 바람길 확보, 녹지축 조성, 운동장 녹화 등을 통해 재해 영향을 최소화 하겠음

○ 추진경위

- '76.04.30.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 '01.12.05. :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
- '20.12.10. :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결정
- '24.06.13. :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신청
- '24.06.27. : 열람공고 및 관계부서 협의
⇒ 기 간 : '24.06.27.~07.11. (이데일리, 머니투데이)
- '24.07.22. : 관련부서 협의의견에 따른 조치계획 제출

[붙임]

1. 위치도 및 전경사진
2.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도(안)
3. 혁신성장시설 세부관리기준 주요내용. 끝.

※ 작성자 : 도시공간본부 시설계획과 이유희 (☎ 2133-8411)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